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14:00~17:30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빌딩 2층 다산홀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시민청소년학회
/ 글로벌청소년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00-14:20	<p>사회 오 승 근 (명지전문대학교 교수)</p> <p>개회사 이 재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p> <p>인사말 천 정 응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p> <p>이 용 교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p> <p>황 옥 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p>
14:20-15:20	<p>사회 김 영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p> <p>제 1 부 < 아동·청소년 권리의 현재 ></p> <p>발표 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김영지·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p> <p>발표 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p> <p>발표 3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p>
15:20-15:50	<p>지정토론</p> <p>토론 1.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p> <p>토론 2.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토론 3.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15:50-16:00	휴 식

사 회 | 최 윤 진 (중앙대학교 교수)

제 2 부 <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 과제 >

16:00-17:00

발표 4 |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 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과제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표 5 |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

이 용 교 (광주대학교 교수)

발표 6 |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

김 철 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17:00-17:30

지정토론

토론 4. 김 형 옥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토론 5.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토론 6.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7:30-17:50

사 회 |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종 합 토 론

17:50

폐 회

차 / 례 /

제 1 부 : 아동 · 청소년 권리의 현재

- 발표 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1
김영지 ·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43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 발표 3.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79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토론 1.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15
 - 토론 2.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9
 - 토론 3.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1

제 2 부 : 아동 · 청소년 권리 신장 과제

- 발표 4. 아동 · 청소년 권리모니터링 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과제 127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발표 5. 어린이 ·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 161
이 용 교 (광주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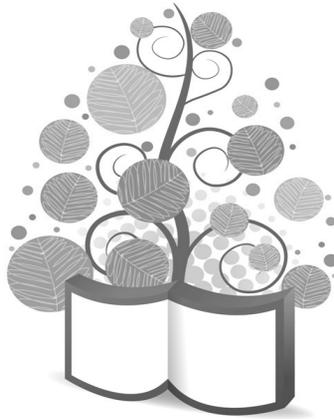
차 / 례 /

■ 발표 6.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	197
김 철 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 지정토론	
토론 4.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235
토론 5.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239
토론 6.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42
▣ 부 록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자료	245

Ⅰ 제 1 부 Ⅰ 아동 · 청소년 권리의 현재

발 표 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김 영 지 ·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 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 축적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의 종합적·체계적 모니터링 및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
- 2009~2012년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홀수년도(2009년, 2011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 짝수년도(2010년, 2012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격년 조사
→ 2013년도부터는 전체 영역을 한 해에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체계 변경
-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 등 6개 영역 130개 지표항목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9,521명
- 설문조사 기간 : 5월 27일~7월 18일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자기기입식 설문방식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N)	비율(%)
전체		9,521	100.0
성별	남자	4,988	52.4
	여자	4,533	47.6
학교유형	초등학교	2,829	29.7
	중학교	3,281	34.5
	일반/특목/자율고*	2,801	29.4
	특성화고	610	6.4
지역규모	대도시	3,945	41.4
	중소도시	4,397	46.2
	읍면지역	1,179	12.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508	89.6
	한부모가정	758	8.0
	조손가정	80	0.8
	기타	154	1.6
학업성적	상	2,851	30.0
	중	4,001	42.1
	하	2,651	27.9
경제적 수준	상	4,316	45.4
	중	3,536	37.2
	하	1,656	17.4

* 분석기술 시 '일반계고등학교'로 통칭함.

2. 조사결과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의식

① 인권감수성과 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80% 전후, 옹호활동 의사 56.3%
 전체적으로 여학생 > 남학생, 교급 중 중학생이 가장 낮음.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6.9% (그런 편이다 57.1%, 매우 그렇다 19.8%), 10명 중 2명(23.2%)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6.8%(그런 편이다 49.6%, 매우 그렇다 37.2%), 10명 중 1명(13.3%)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인권 옹호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절반이 조금 넘는 56.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4.6%, 매우 그렇다 11.7%)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51.1%(그렇지 않은 편이다 33.3%, 전혀 그렇지 않다 17.8%)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나머지 절반 정도는 폭력 피해자에게 폭력 유발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개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중학생은 모든 교급 중 가장 낮았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정도와 인권 옹호태도 등 3개 문항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폭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문제에 대한 인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동의하지 않음. 10명 중 8명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1.7%(초등 44.1%, 일반계고 27.1%, 중학생 26.5%, 특성화고 23.8%)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0.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7.6%, 매우 그렇다 22.5%)’고 응답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인식이 가장 낮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65.5%가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고, 여학생의 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 관련 인권의식은 90%내외로 높게 나타남.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의식이 높았고, 조손가정과 특성화고등학생의 의식이 낮았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0.8%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42.5%)'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의견표명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생의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매우 그렇다' 50.6%).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92.6%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8.1%, 매우 그렇다 54.5%)'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3.0%, 중 92.2%, 하 92.5%) 경제적 여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1.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5.4%, 매우 그렇다 56.3%)'고 응답하였는데,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93.4%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5.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5.5%, 매우 그렇다 40.2%)'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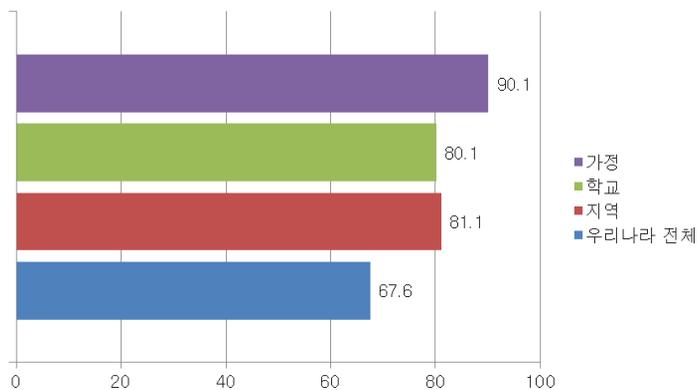
③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생활영역별 인권존중도는 80~90%,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67.6%. 여학생 > 남학생. 조손가정과 특성화고등학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

가정, 학교,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값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가정(90.1%), 지역사회(81.1%), 학교(80.1%), 우리나라 전체(67.6%) 순으로 나타났다('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자신과 밀접한 생활영역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존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도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70.6%로 가장 높았고 일반계고등학생 67.4%, 초등학생 66.3%, 특성화고등학생 58.2%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그림 1]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

④ 인권 관련 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을 아는 경우는 10명 중 1.3명에 불과

유엔(UN)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53.2%, 60.5%, 71.8%, 어떤 것(곳)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13.1%, 16.5%, 17.6%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의 응답이 21.3%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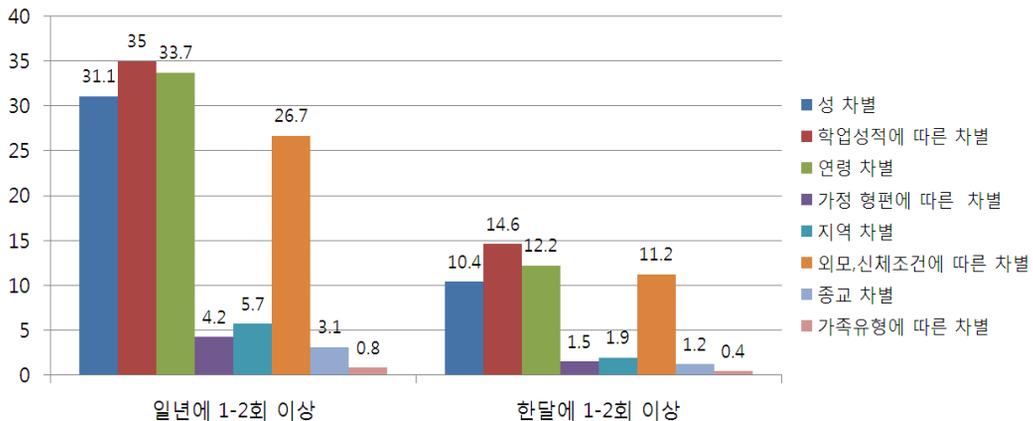
(2) 차별금지

① 차별경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 연령차별 > 성차별 >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011년 → 2013년 차별경험 줄어드는 경향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는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등 8가지 차별경험을 알아보았다.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율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 33.7%, 성차별 31.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6.7%, 지역차별 5.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4.2%, 종교차별 3.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0.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율 또한 경험정도의 순서는 일년에 1~2회 이상의 경우와 같았으며, 10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4.6%), 연령차별(12.2%),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1.2%), 성차별(10.4%)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 2013년 변화추이를 보면, 8가지 차별 모두 '차별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차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차별경험

② 차별의식 및 태도

다문화 가정 친구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각각 87.9%, 50.7%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각각 1.9%, 7.9%
여학생의 수용도 높고, 따돌린 경험은 남학생이 많음.
한부모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따돌림 경험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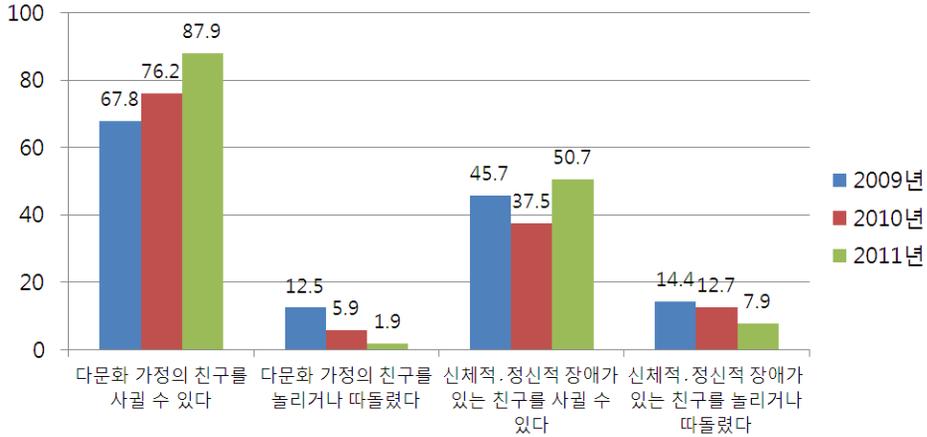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차별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견정도와 따돌림 경험을 알아보았다. 먼저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그런 편이다 54.8%, 매우 그렇다 33.1%)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92.5%), 특성화고등학생(89.4%), 중학생(86.5%), 초등학생(84.7%)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8.2%, 중소도시 88.1%, 읍면지역 86.3%),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또래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1.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2.4%),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각 1.8%), 일반계고등학생(1.7%)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그런 편이다 40.6%, 매우 그렇다 10.1%)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57.8%), 특성화고등학생(51.1%), 일반계고등학생(50.7%), 중학생(44.4%) 순의 응답률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7.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9.5%), 특성화고등학생(8.5%), 일반계고등학생(7.4%), 초등학생(6.3%) 순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따돌림 경험률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차별의식과 태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값과 교급별 추이 모두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 증가),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 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가정에서의 참여]

대체로 80% 이상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음. 여학생, 양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존중받는다는 응답률 높음.

①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가정에서의 의견존중 현황을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을 존중받는(‘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값) 응답률이 진로·직업(87.8%) 결정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결정(84.7%), 집안의 중요한 문제결정(8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부시간이나 방법(79.6%)을 결정할 때 존중받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상황에서 80% 이상이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보여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존중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의견존중도가 높았고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의견존중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문항에서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인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에서의 참여]

2명 중 1명은 강제 자율/보충학습, 교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54.6%

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즉, 두 명 중 한 명은 선택권이 없이 부모나 교사의 권유 또는 지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52.0%)이 여학생(51.5%)보다, 일반계고등학생(53.6%), 중학생(50.7%), 특성화고등학생(49.7%) 순으로, 읍면지역(57.8%), 대도시(52.1%), 중소도시 아동·청소년(49.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의사보다는 강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② 교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54.6%(그런 편이다 42.7%, 매우 그렇다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56.1%)이 남학생(53.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81.8%), 중학생(45.8%), 일반계고등학생(42.1%), 특성화고등학생(32.6%) 순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③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적 운영 가능 14.5%,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28.5%, 학생회 예산과 장소 및 시간 보장 20.8%로 자율권 보장정도 낮음. ‘모른다’는 응답이 40~60%를 상회하여 자치활동 무관심 우려, 특목고의 학생회활동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학생회 운영 자율권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회의 독립성, 임원후보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등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28.8%, ‘그렇다’ 14.5%, ‘잘 모르겠다’ 56.7%로 나타나

학생회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장받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운영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게 나타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다' 28.5%, '그렇다' 30.0%, '잘 모르겠다' 41.5%의 응답률을 보여,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는 20.8%,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5%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학생회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인만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3.7%로 높게 나타났다.

④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8.1%.

특목고 참여율 높음.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8.8%,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경우' 7.1%,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 18.1%로 나타났다 (특목고 21.5%, 일반고 20.9%, 자율고 20.4%, 중학교 16.2%, 특성화고 15.2%). 잘 모른다는 응답이 66.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11.1% → 13.4% → 16.2%)과 고등학생(13.0% → 16.6% → 19.9%) 모두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참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62.4%

선거연령 낮추어야 한다 26.5%,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3.0%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해 보수적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
아동·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초등학생은 ‘시간부족’,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4%,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8.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7.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해본 경험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2% → 2.0% → 1.8%),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1.9% → 2.3% → 2.4%) 볼 수 있다.

② 청소년의 선거연령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낮추어야 한다’ 26.5%,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3.0%,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6.7%, ‘잘 모르겠다’ 13.8%의 응답율을 보여 만19세 유지 의견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일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급별 차이로는 중학생이 선거연령 하향화에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목고학생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목고학생의 경우 ‘만19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체평균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③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51.6%, ‘그렇지 않다’ 48.4%로 보장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75.6%, 중학생 47.7%, 일반계고등학생 33.4%, 특성화고등학생 44.3%가 보장한다고 응답하여, 일반계고등학

생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상 57.1%, 중 50.3%, 하 39.8%).

④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35.7%, ‘시간 부족’ 31.5%,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14.3%, ‘참여활동 정보 부족’ 13.3%, ‘부모님(보호자) 반대’ 3.6%, ‘학교 반대’ 1.6% 순의 응답율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시간부족(42.6%)’이 가장 큰 이유였고, 중학생(40.4%)과 고등학생(42.4%)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다.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7%(그런 편이다 27.3%, 매우 그렇다 13.4%), ‘그렇지 않다’는 59.3%(그렇지 않은 편이다 19.6%, 전혀 그렇지 않다 39.7%)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여전히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① 결사·집회 경험률

중·고등학생 10명 중 2~3명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활동이나 모임 가입활동.
3개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 추세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의 활동 빈도를 물어보았다.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가끔있다’와 ‘자주있다’), ‘친구들과 사회문제 토론’ 27.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20.1%,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8.1%로 나타나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과 행사 참여 등의 활동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참여경험이 더 많게 나타났다. 3가지 활동 모두 2010년 → 2012년 → 2013년에 걸쳐 활동경험이 줄어들고 있다.

(5) 사생활의 보호(제16조)

①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용모검사 56.2%, 복장검사 52.5%, 소지품검사 17.0%. 줄어드는 추세

‘최근 1년 동안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사 경험을 알아보았다. 한 번이라도 검사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을 보면, 용모검사의 경우 56.2%(중 48.8%, 일반계고 63.6%, 특성화고 62.0%), 복장검사 52.5%(중 50.0%, 일반계고 56.8%, 특성화고 45.6%), 소지품검사 17.0%(중 15.6%, 일반계고 16.7%, 특성화고 25.9%)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복장검사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② 학생 정보 보호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18.1%,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31.5%, 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29.1%

모든 경우 특성화고에서 학생 정보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18.1%(그런 편이다 13.4%, 매우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57.9%(그렇지 않은 편이다 24.0%, 전혀 그렇지 않다 57.9%)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31.5%(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8.6%), ‘그렇지 않다’ 68.5%(그렇지 않은 편이다 36.5%, 전혀 그렇지 않다 32.0%)의 응답율을 보여 징계받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해 29.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8.3%)’, 71.0%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30.3%, 전혀 그렇지 않다 40.7%)’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의 학생은 개인성적이 친구들 앞에서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보접근권 : 알권리

학교의 학교규칙 공지의무 이행 89.7%

아동·청소년정책 및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학생은 10명 중 1~3명 정도

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규칙 공지 정도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규칙 공지 정도에 대해서 89.7%가 긍정적으로(‘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하여 90%에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나 대도시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교규칙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 제공 정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정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 자료, 권리 침해시 상담 구제받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23.6%만이 제공받고 있었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는 13.3%만 제공받고 있었으며, 권리 침해시 상담·구제 관련 정보는 34.7%만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0명 중 1~3명 정도만이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었다. 교급별 특이사항으로는 초등학생 68.7%가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10명 중 3명은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3년간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과 모욕적인 말·욕설이 감소하고 있음.

① 체벌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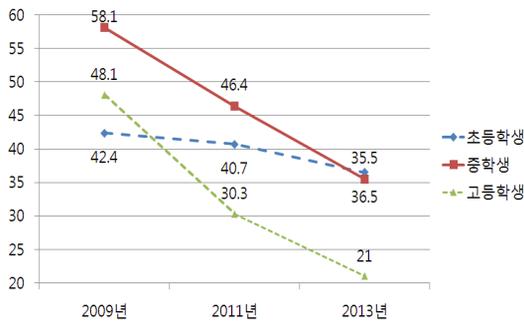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30.6%,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9.8%,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13.4%로, 10명 중 3명은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해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체벌경험은 초등학생이 36.5%, 중학생이 35.5%, 일반 고등학생이 21.0%, 특성화 고등학생이 21.1%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에서 체벌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체벌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8.7%, 중학생의 경우에는 7.4%,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6%,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5%로, 고등학생에 비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한 체벌을 3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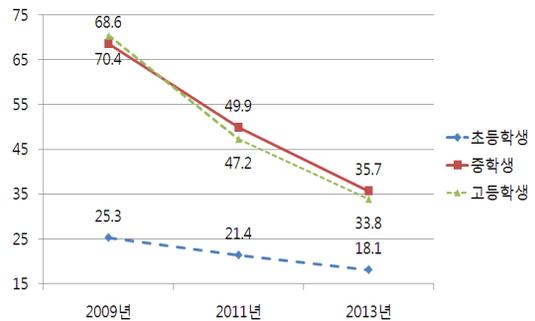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37.7%, 여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21.1%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18.1%, 중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5.7%, 일반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3.6%, 특성화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4.4%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회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10%를 넘고 있어, 아직도 학교에서 잦은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16.6%, 여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10.0%로, 학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5.1%, 여학생은 2.8%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2011년, 2013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로 체벌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42.4	40.7	36.5
중학생	58.1	46.4	35.5
고등학생	48.1	30.3	21.0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25.3	21.4	18.1
중학생	68.6	49.9	35.7
고등학생	70.4	47.2	33.8

[그림 5]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림 6]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② 정서적 학대 :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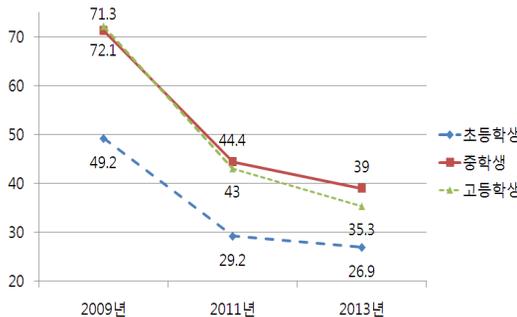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33.1%,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7.3%, 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12.4%로, 10명 중 3명의 아동·청소년은 부모(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4.6%)이 여학생(33.6%)보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9.0%), 일반 고등학생(35.8%), 특성화 고등학생(33.2%), 초등학생(26.9%)의 순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욕적인 말·욕설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10.2%, 일반 고등학생이 10.7%로, 초등학생(6.9%)이나 특성화 고등학생(7.9%)에 비해 중학생이나 일반 고등학생이 자주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하(39.6%)인 경우에 상(31.9%)이나 중(31.9%)인 경우보다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은 성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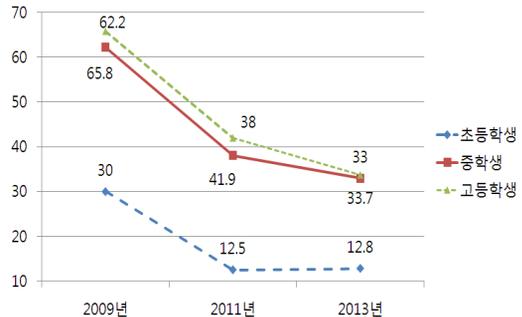
학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0.6%)이 여학생(33.6%)보다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 고등학생(33.8%), 일반 고등학생(33.7%), 중학생(33.0%), 초등학생(12.8%)의 순으로,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훨씬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인 하(34.7%)인 경우에 상(24.8%)이나 중(24.0%)인 경우에 비해서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3.7%)이 여학생(11.0%)보다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17.9%)이 모욕적인 말·욕설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11.2%), 일반 고등학생(8.2%), 특성화 고등학생(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또한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의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 경험률만 소폭 증가 2011년 12.5% → 2013년 12.8%)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49.2	29.2	26.9
중학생	71.3	44.4	39.0
고등학생	72.1	43.0	35.3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30.0	12.5	12.8
중학생	62.2	38.0	33.0
고등학생	65.8	41.9	33.7

[그림 7]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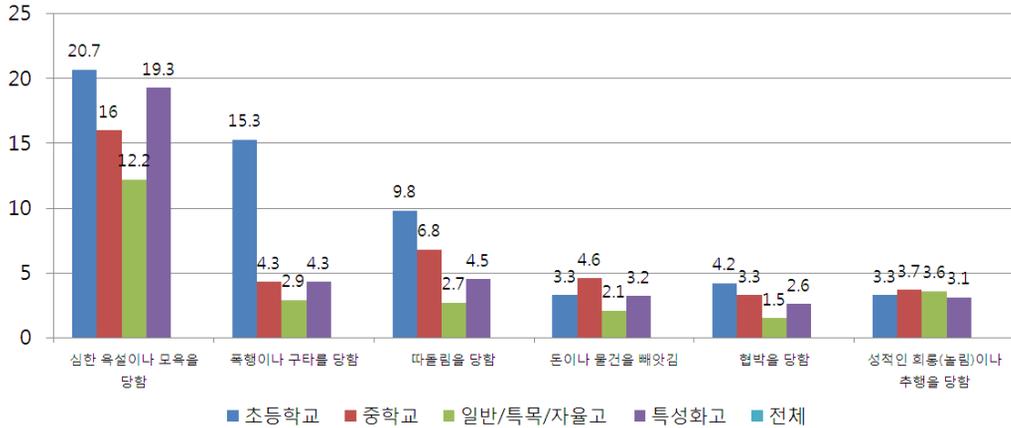
[그림 8]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③ 폭력피해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률은 학교 내 폭력 유형 중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행이나 구타(7.2%), 따돌림(6.4%),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3.5%), 돈이나 물건 갈취(3.4%), 협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은 다른 폭력 유형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청소년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초등학생의 학교 내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이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폭력 피해 유형 중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했으며,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9]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채팅, 게시판 댓글 등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 성희롱, 사생활 유포 등의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2013년도에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험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22.1%), 협박(3.4%), 성희롱(4.5%), 사생활 유포(4.4%), 따돌림(2.4%)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인터넷에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피해경험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초·중·고등학생들의 피해 경험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경험 5.1%. 남학생 > 여학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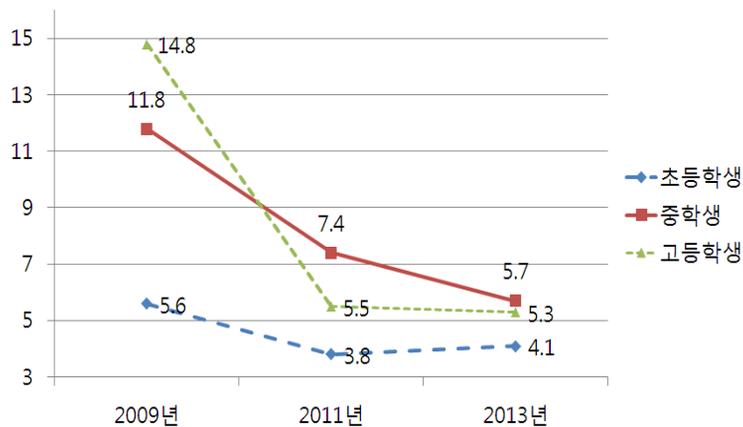
3년간 가출경험 감소 추세

주된 가출이유는 부모님 등 보호자와의 문제(65.7%)와 학업부담(14.5%)

① 가출경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5.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6.3%, 여학생은 3.7%가 가출경험이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생 중 7.1%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5.7%), 일반계고등학생(4.9%), 초등학생(4.1%)의 순이었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이 12.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9년에 비해 가출경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 14.8%, 2011년에 5.5%, 2013년 5.3%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최근 1년간 가출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② 가출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가출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 등 보호자와의 문제였으며(65.7%), 이어서 학업부담(14.5%),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9.1%)의 순이었다. 가출이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유형에서 학업부담으로 인한 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 11.1%, 2011년 13.2%, 2013년 16.2%로 증가폭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로는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3.7%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상담기관 1.3%, 청소년 쉼터 1.2%, 청소년수련관 1.0%, 청소년 전화 1388 0.8%의 순이었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① 방임 경험률

한번이라도 방임을 경험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은 58.8%,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은 8.2%, 아파도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내버려 둔 경험 7.7%, 자신이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보호자)이 몰랐던 적이 있는 경우 13.7%,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이 모르는 경우 20%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방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돌봐주는 사람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보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44.8%였고, 특히 주3회 이상 혼자 집을 보는 아동·청소년이 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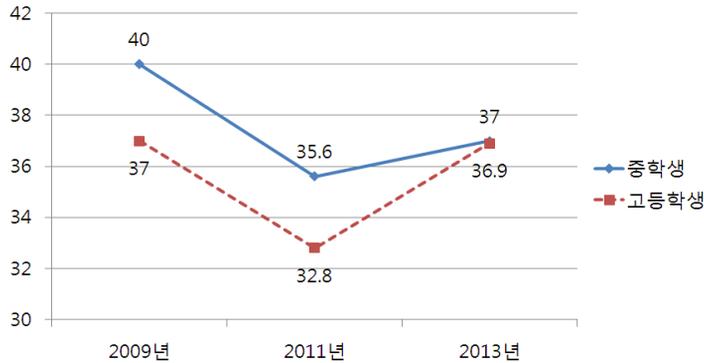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생존 및 발달

① 자살률

10명 중 3.7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자살 생각의 주요 원인은 학업성적. 중학생 자살생각 이유 중 가족갈등 증가 추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9%(가끔 생각 32.3%, 자주 생각 4.6%)로 나타났고, 여학생(45.8%)이 남학생(28.9%)보다 자살생각 빈도가 더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 37.3%, 중학생 36.9%, 특성화고등학생 34.9%의 순으로 일반계고등학생의 자살생각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규모로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이, 학업성적 면에서는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자살생각 빈도가 높았다.



* 주 : 1) '가끔 있다+자주 있다'='있다'로 계산
 2) 문구: 2009년, 2011년 '자살'에서 2013년 '죽고 싶다' 으로 변경.
 3) 문구: 2009년 '전혀 없다,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서 2011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그림 11]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 여부(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011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013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자살생각 원인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으로는 학업성적(전체 40.4%, 중학생 34.0%, 일반계고등학생 50.5%, 특성화고등학생 27.1%)과 가족 간의 갈등(전체 27.6%, 중학생 33.7%, 일반계고등학생 20.3%, 특성화고등학생 28.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상·중위층인 경우는 학업성적으로 인해, 하위층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47.8%, 2011년 34.2%, 2013년 34.0%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16.0%, 2011년 22.6%, 2013년 33.7%로 증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40.6%, 2011년 36.2%, 2013년 46.6%로 2013년도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도 2009년 13.6%, 2011년 21.6%, 2013년 21.7%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고민거리 대화상대

고민거리 대화상대 : 친구(41.6%) > 어머니(34.4%) > 대화상대 없음(9.3%) >
아버지(5.3%) > 담임선생님(1.0%) > 학교 상담선생님(0.8%)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9.3%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친구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34.4%, 형제/자매 5.4%, 아버지 5.3%의 순이었고, 담임선생님(1.0%), 학교 상담선생님(0.8%), 이웃이나 친척(0.6%), 청소년 상담관련 센터(0.4%)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어머니와 고민을 나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와 고민을 나눈다(중 46.1%, 고 51.5%)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초·중학생의 경우 고민 대화상대로 '친구'라는 응답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안전한 환경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안전도를 알아본 결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52.9%,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56.8%에 불과해, 나머지 절반 정도의 아동·청소년은 거주지역 환경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초등학생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2) 보건서비스

① 학교급식 만족도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5.3%로 나타났고, 24.7%는 만족하지 않았다. 초등학생, 읍면지역,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83.6%는 건강하다고 인식. 22.7%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거의 매일 식사하는 비율은 60.0%.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와 운동실천율이 낮으며 아침식사 결식율은 높음.

①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건강하다는 응답은 83.6%,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은 16.4%로 나타났다. 교급이 낮을수록,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② 운동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7%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월 1-2회는 21.2%, 주 1-2회는 27.9%, 주 3회 이상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84.7%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69.2%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운동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주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이 36.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8%로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7.3%인 반면에 중위층은 25.5%, 하위층은 30.8%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 교급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아침식사 결식율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거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였으며, 보통 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7.7%, 보통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3%, 거의 매일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0.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은 61.5%로 여학생

(58.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이 낮았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이 65.6%인데 비해 중위층은 58.0%, 하위층은 49.5%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결식률이 낮았다. 한편,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3개년 조사결과, 모든 연령에 걸쳐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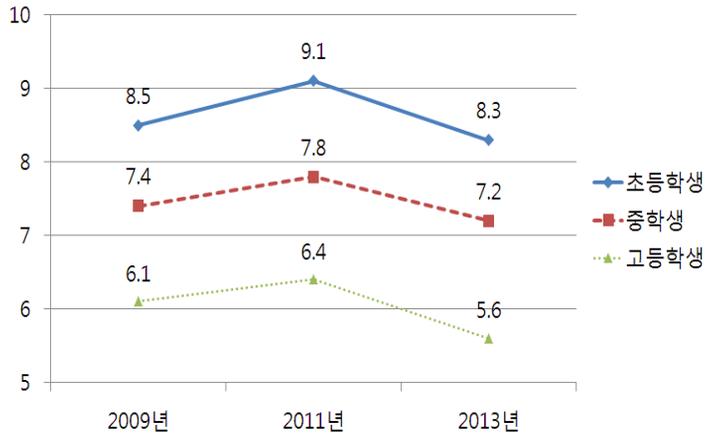
다음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입맛이 없어서(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1%),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21.9%) 등으로 나타났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과 학교에 일찍 가야한다는 응답을 '학교등교' 요인으로 묶어보면 45.0%로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④ 수면시간

평균수면시간 : 초등학생 8시간 19분, 중학생 7시간 12분, 특성화고등학생 6시간 11분, 일반계고등학생 5시 27분.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수면부족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1시 32분(초등학생 10시 34분, 중학생 11시 27분, 일반계고등학생 12시 29분, 특성화고등학생 12시 10분), 평균 기상시간은 6시 34분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 7시 10분, 중학생 7시 2분, 일반계고등학생 6시 20분, 특성화고등학생 6시 21분).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6분이었는데, 초등학생 8시간 19분, 중학생은 7시간 12분, 특성화고등학생 6시간 11분, 일반계고등학생은 5시간 27분 순으로, 학업부담이 있는 교급일수록 수면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2.8%였는데, 특히 고등학생(일반계고 69.5%, 특성화고 69.1%)의 경우 10명 중 7명은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2009년 8.5시간이었으며, 2013년에는 8.3시간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며, 중학생 또한 2009년 7.4시간에서 2013년 7.2시간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2009년 6.1시간에서 2013년 5.5시간으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수면시간의 줄어든 폭이 다소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평균수면시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⑤ 스트레스 인지율

초·중·일반계고 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문제,
특성화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중·고등학생이 41.4%로 나타난 가운데(제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정도를 원인별로 알아보았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한 비율은 69.3%였으며,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 51.6%, 외모 및 신체조건 29.2%, 또래와의 관계 21.9%, 가정불화 18.8%,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2.6%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문제(46.2%)와 또래와의 관계가(20.7%)가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는 학업문제 74.2%, 미래에 대한 불안 53.0%, 외모 및 신체조건 31.0% 순으로, 일반계고등학생은 학업문제 87.2%, 미래에 대한 불안 81.5%, 외모 및 신체조건 36.1% 순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77.4%, 학업문제 68.5% 외모 및 신체조건 42.6%, 경제적인 어려움 31.9% 순으로 나타났다.

⑥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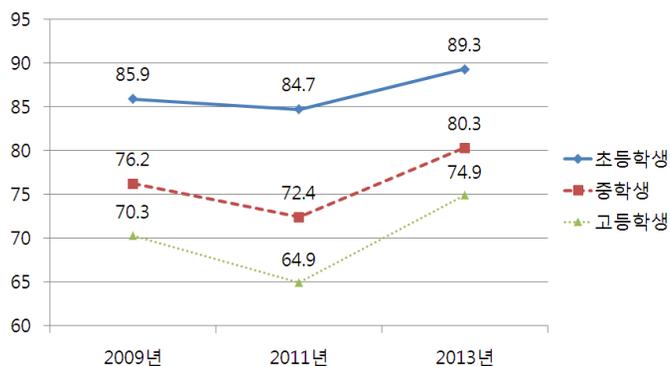
z행복하다 : 초 89.3 > 중 80.3 > 일반계고 75.1% > 특성화고 73.8%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현재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1.1%였으며, 초등학생은 89.3%, 중학생은 80.3%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일반계고등학생은 75.1%, 특성화고등학생은 73.8%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37.3%)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6%)의 순이었다. 학교유형별 이유를 보면, 초등학생은 학업부담(37.0%),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7.8%),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6.9%)의 순으로,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은 학업부담(37.4%, 42.8%), 미래에 대한 불안(15.5%, 33.9%),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3.5%, 4.4%)의 순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36.9%), 학업부담(13.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보면, 전 연령에 걸쳐 2011년에는 행복한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행복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의 기회

최근 1년간 10명 중 5명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학교수업이 싫어서’

최근 1년간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학업중단 생각
성적을 높이거나 진학을 위한 사교육 경험 74.2%(초등학생과 특목고 학생은 각
83.8%).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 경험률 낮음

① 학교부적응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경우는 응답자의 반수에 가까운 48.2%였다. 초등학생(35.2%)과 중학생(49.9%)보다는 고등학생(57.4%)이, 성적이 높은 학생(39.4%)보다는 낮은 학생(62.5%)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41.8%)보다는 낮은 학생(62.1%)이 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4%의 다수가 ‘학교의 수업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답하였다(중복응답). 다음으로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57.5%)’,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40%)’,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37.3%)’, ‘성적이 좋지 않아서(24.4%)’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다른 취미활동 관심’에 중·고등학생은 ‘엄격한 학교규율’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② 학업중단을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23.2%로 5명 중 1명이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16.9%, 고등학생 29.2%(일반계고등학생 29.0%, 특성화고등학생 30.3%)로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꼴로 학업중단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 포기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교육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을 높이거나 진학을 위해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74.2%가 사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경험율은 더 높아서 83.8%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0.4%, 60.4%로 보이고 있다. 특목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율은 초등학생과 같이 83.8%로 가장 높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은 가장 낮은 28%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읍면에 거주하거나 경제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초등학생 과반수 이상이 방과후에도 2시간 이상 공부,
10명 중 2.9명은 3시간 이상 공부

평일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공부시간을 1시간 미만부터 6시간 이상까지 1시간 간격으로 구간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하루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52.2%, 중학생 58.4%, 일반고등학생 58.8%, 자율고등학생 68.3%, 특목고등학생 70.6%,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28.9%, 중학생 33.3%, 일반고등학생 38.3%, 자율고등학생 51.3%, 특목고등학생 54.5%였으며,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15.1%, 중학생 15.7%, 일반고등학생 22.4%, 특목고등학생 30.5%, 자율고등학생 34.6%, 5시간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6.9%, 중학생 6.5%, 일반고등학생 9.8%, 특목고등학생 12.9%, 자율고등학생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6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응답도 초등학생 2.7%, 중학생 2.4%, 일반고등학생 9.8%, 자율고등학생 6.1%, 특목고등학생 9.4%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학습시간이 중학생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2) 교육의 목표

① 학교의 의미와 기능

학교가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네 개의 질문을 제시한 결과,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66.5%,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66.7%,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72.7%,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86.9% 등의 응답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교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권교육 및 다문화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 54.4%, 인권교육 유용성 70.1%, 학교 정규교과시간을 통한 교육 59.6%,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한 교육 37.5%
다문화이해교육 경험 45.6%, 다문화이해교육의 유용성 73.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알아본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5.6%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났다. 1회의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8.6%이고, 5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7.4%로 나타났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많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경험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4.4%에 달했다. 1회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의 19.9%이었고, 5회 이상 받은 학생은 4.3%이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 이해교육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6)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①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10명 중 6~7명은 최근 1년간 청소년시설 이용경험이 없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율·자치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조사결과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청소년이 62.3%에 달했고, 1년에 1~2번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28.3%에 이르러 한 달에 1~2번 이상 이용하는 실질적인 이용자는 9.4% 정도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초등학생 56.6%, 중학생 59.9%, 일반계고등학생 69.3%, 특성화고등학생 69.7%),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이용해본 경우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85.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② 지역 내 문화·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

중학생 10명 중 5.4명, 일반계고등학생 10명중 7명 정도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공간 부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충분하다고 답을 한 학생은 48.8%였고,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1.2%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2%에 달하나 중학생은 45.2%, 일반계고등학생은 31.5%, 특성화고등학생은 39.0%에 그쳤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문화 시설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③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초등학생 10명 중 2.3명, 일반계고등학생 4.8명은 평일 하루 여가시간 1시간 미만

평일 하루 중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9.7%로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70.2%의 아동·청소년이 최소 1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으나 2시간 이상 여가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39.4%로 급격히 줄어든다. 여가시간이 1시간도 안되는 경우는 초등학생 22.5%, 중학생 21.8%, 일반계고등학생 48.4%, 특성화고등학생 20.2%로

나타났다. 하루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초등학생 31.0%, 중학생 24.2%, 일반계고등학생 7.5%, 특성화고등학생 33.5%에 불과했다.

④ 휴일 여가활동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순위 : 초등학생은 '친구와 놀기',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은 '게임', 일반계고등학생은 '공부'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친구와 놀기가 4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V 시청 46.6%,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43.4%, 집에서 휴식 38.8%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공부가 이들 다음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예술행사 관람(9.1%), 독서(8.6%), 여행(5.1%) 등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3가지 활동 중복응답). 성별차이로는 남학생은 게임과 운동을, 여학생은 휴대전화로 통화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은 친구와 노는 것을, 고등학생은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 TV를 보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한 1순위 응답만을 보면, 게임(20.5%), 친구와 놀기(18.9%), TV 시청(16.6%), 공부(10.5%), 집에서 휴식(9.9%) 순으로 나타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친구와 놀기(23.4%) → TV 시청(18.3%) 순으로, 중학생은 게임(25.4%) → 친구와 놀기(18.9%) 순으로, 일반고 학생은 게임(17.7%) → 공부(16.7%) 순으로, 특목고 학생은 공부(28.1%) → TV 시청(15.2%) 순으로, 자율고 학생은 공부(25.3%) → 게임(16.8%) 순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은 게임(26.0%) → 친구와 놀기(20.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특목로, 자율고를 포함한 일반계고등학생의 1순위 활동은 공부(17.9%), 게임(17.1%), TV 시청(15.2%), 집에서 휴식(13.9%), 친구와 놀기(13.8%) 등의 순으로, 휴일에도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공부'로 나타났다.

⑤ 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청소년단체 활동학생은 초등학생 10명 중 2명, 중학생 0.6명, 고등학생 0.5명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1%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응답학생은 9.5%에 불과하였다. 93%의 응답자는 가입은 하였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여학생(10.2%)이 남학생(8.9%)보다 많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았으며(초등학생 19.8%, 중학생 5.7%, 고등학생 4.7%),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단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12.7%, 중 9.6%, 하 6.0%).

⑥ 동아리활동 참가율

최근 1년간 취미나 문화관련 동아리활동은 10명 중 6~7명이 경험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1%로 나타났다. 여학생(72.2%)이 남학생(69.7%)보다 동아리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단체 참여율과는 달리 초등학생(67.5%)보다는 중학생(73.1%)과 일반계고등학생(73.1%)들의 동아리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⑦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도

청소년활동(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지지도 : 가정 60.1%, 학교 69.5%

응답자 가정의 60.1%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다섯 가정 중 두 가정에 해당하는 39.9%는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81.4%)의 청소년활동 참여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반면 중학생(49.6%)은 일반계 고등학생(54.8%) 보다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체로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이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9.5%로 나타났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초등학생 83.5%, 중학생 64.7%, 일반계고등학생 63.7%), 특성화고등학생은 57.5%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정도가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7) 특별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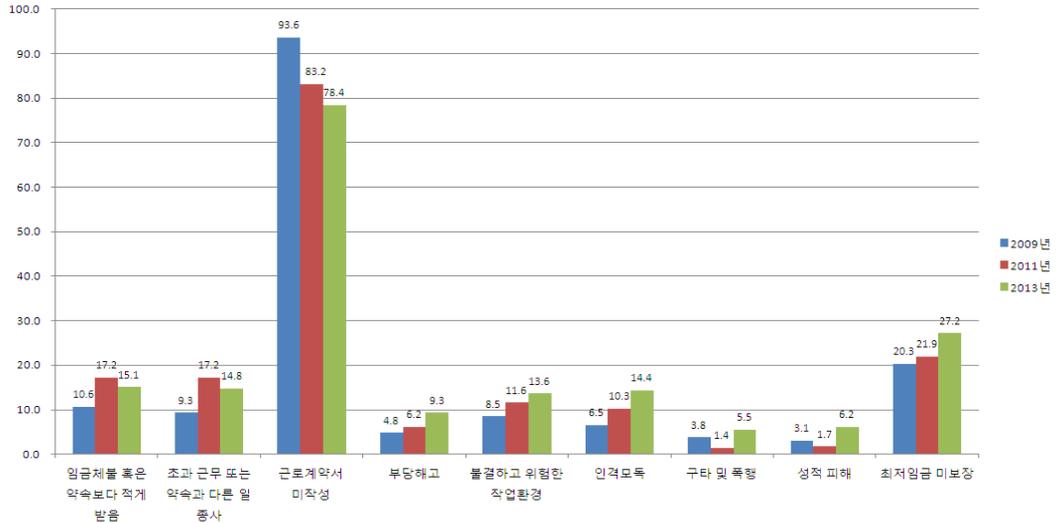
(1) 경제적 착취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 경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78.4%) > 최저임금 미보장(27.2%) >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2013년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3.3%(중 6.5%, 일반계고 15.2%, 특성화고 41.1%)로, 201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13.7%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초과 근무 또는 약속과 다른 일 종사(14.8%), 인격모독(14.4%),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험(13.6%), 부당해고(9.3%), 성적 피해(6.2%), 구타 및 폭행(5.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부당 처우 경험을 비교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및 폭행, 성적 피해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경험은 2009년에 6.5%에서 2013년 14.4%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구타 및 폭행 경험도 2009년 3.8%에서 2013년 5.5%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성적 피해 경험도 2009년 3.1%에서 2013년 6.2%로 2배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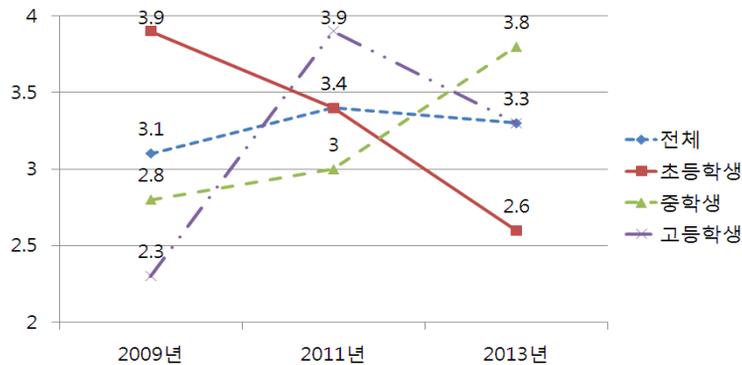
(2) 성적착취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은 3.3%로 2011년(3.4%)에 비해 감소 중학생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 성적피해 유형은 성희롱(59.6%), 성추행(32.6%), 강제적 성관계(5.1%) 순이었음.
성적피해를 당한 조손가정 청소년 10명 중 7~8명은 피해를 당하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①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이 지표는 청소년의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피해 경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을 2009년, 2011년, 2013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3.3%로 2009년의 경험률(3.1%)에 비해 증가하였

으나 2011년의 경험률(3.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성적 피해 경험률과 증가율이 가장 높아, 중학생들의 성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피해 경험률이 2009년 3.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2.6%까지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3.8%까지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이 3.3%로 2011년의 경험률(3.9%)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의 경험률(2.3%)에 비해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3개년 추이 :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편,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3.7%)이 남학생(2.9%)보다 성적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8%), 일반계 고등학생(3.5%), 특성화 고등학생(2.8%), 초등학생(2.6%)의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학생(3.4%), 읍면지역 학생(3.3%), 중소도시 학생(3.1%)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 학생(7.2%), 한부모가정 학생(4.3%), 양부모가정 학생(3.1%)의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하(4.5%)인 학생들이 상(2.8%)이나 중(2.8%)인 학생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5.4%)인 학생이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59.6%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32.6%, 그리고 강제적 성관계가 5.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다른 교급 유형에 비해 성희롱 비율(57.9%)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제적 성관계 비율(7.7%)은 높았으며,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강제적 성관계 비율이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은 친구가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11.8%), 선생님(6.5%), 인터넷(3.0%), 선배(2.4%)나 형제자매(2.4%) 등의 순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경우보다는 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76.2%이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선배에게만 도움을 받았으며, 보호자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후속과제

- 심층분석
 - 3개년 데이터 추이와 사회적 배경
 - 인권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영향요인, 효과 등 → 데이터분석보고서 활성화
 - 데이터 생산 및 분석 주기 다양화 : 2013년 데이터에 대해 2014년 분석
- 지표체계 타당화 지속검토
 - 지표항목별 개념과 측정내용
 - 지표의 정밀성 강화, 개별지표의 표준화 및 체계화
 - 행정통계 활용 지표 : 가용통계 발굴
-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정비
 -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NYPI 데이터아카이브)
 - 3개년 설문지체계와 문항구성 변화
 - 2009~2013 데이터 비교 시 유의사항
 -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 등록양식 : 장기적인 반복 횡단조사 데이터 생산 고려
- 인권지수 생산
 - 지수화 작업을 통해 인권실태 비교 기능 고려
 - 유엔 인권지표체계 반영 시 고려점 분석 : 구조·과정·성과지표

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¹⁾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협약 홍보(제42조) ○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2. 아동의 정의		○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3. 일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아동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이름과 국적(제7조) ○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 사생활의 보호(제16조) ○ 정보접근권(제17조) ○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부모의 자녀지도 책임과 권리 및 의무(제5조, 제18조 1항), 부모의 양육 지원 및 아동보호 시설 및 서비스 개발(제18조 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 입양(제21조)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아동학대, 유기(제19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장애아동(제23조) ○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와 건강한 생활양식 촉진 ○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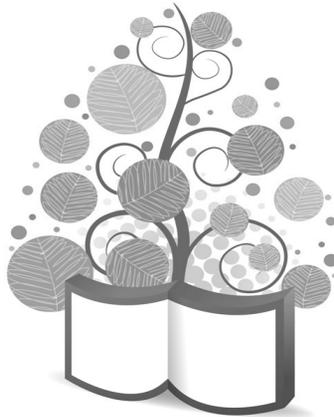
1) 표 안의 '영역'과 '하위내용'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인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2(2010. 11. 23))' 에 따른 영역과 조항 분류를 표로 정리한 것임.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남용(제33조) ○ 부모가 투옥된 아동, 모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아동 보호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제18조 3항) ○ 영양, 의복, 주거 등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 2, 3항)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의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8. 특별 보호 조치	6. 특별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아동(제22조) ○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착취상황 하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착취(제32조) - 약물남용(제33조) - 성적착취 및 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및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 법에 저촉된 아동,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 제 1 부 ■ 아동 · 청소년 권리의 현재

발 표 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1. 서 론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내의 곳곳에 놓여 있는 약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고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기 위해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교육기본법의 제12조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징계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비해 놓고 있다(법제처, 교육기본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특히 학생의 지위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화 기제로 간주된다. 학습자의 인권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학생의 위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규율이 효과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규율의 적용을 받는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 소지품 검사 등과 같은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임희진·김현신, 2012).

2005년 촛불집회 당시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것과 더불어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한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의 심각한 체벌이 사회문제화 하면서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개되었고, 2006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박재숙, 2010). 특히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 진보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당선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 인권은 교육 현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계에서의 청소년 인권 혹은 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부분 개념적 접근에 초점을 두거나 실태를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기존의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 또는 청소년 인권의 개념을 규명하거나(배경내, 2006; 이봉철, 1991; 이재연·황옥경·김효진, 2009; 최윤진, 2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 현황을 진단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모상현·김희진, 2009; 임희진·김현신, 2011; 임희진·김현신, 2012 등).

청소년 인권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국제적인 기준과의 비교 또는 나름대로의 인권지표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류의 인권신장의 역사 속에 나타나듯이 인권의 확보는 기득권자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공해 주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고 이를 얻어 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으로서 또는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스스로 얻어내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청소년 인권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개념적이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이론에 근거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인권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 조약으로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3개국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임희진·김현신,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비준 후 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는 1994년과 1999년에 국가보고서를, 1995년과 2003년에 NGO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아동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 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1; p. 4).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여러 하위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권 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에 걸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6년에 실시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인권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어 지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청소년인권 인프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p. 15).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여러 인권 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타당성(validity), 측정 가능성(measurability), 국제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실용성(practicality), 해석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의 5개 기준에 근거하여 20개 영역에 걸쳐 15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최창욱 외, 2006).

2007년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한 지표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거쳐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실용성의 기준을 사용하여 59개의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6,9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의된 인권 개념에 기초하여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 표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2008년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인권 현황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2007년에 개발된 조사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생존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주의도, 건강진단,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아침식사, 수면시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참여권 수준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2008).

2009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4차 및 5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4개 하위 영역을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과 참여권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모상현 외, 2010; 모상현·김희진, 2009). 특히 4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시켜 모집단을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모상현·김희진, 2009).

청소년 인권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는 청소년 인권 연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일련의 연구들은 청소년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단편적으로 몇 가지 영역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의 인권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조사 모집단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표본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확률표집 방법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11년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필두로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청소년의 인권실태

에 관한 연구를 기획·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청소년 인권을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각 영역 간 및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의 중첩성, 상호 배타성의 미확보, 정책적 활용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청소년 인권의 측정을 위한 지표 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지침에 따른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수정하고 관련 지표를 산출하였으며(임희진·김현신, 2011), 2012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의 지표들을 재범주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지표값을 산출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2). 이 과정을 거쳐 현재 진행 중인 2013년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체계를 수정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을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을 다시 구분하여 지표 항목을 재설정하였다.

새로운 지표 체계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료 등으로부터 산출되는 정량지표와 조사가 필요한 정성지표들은 이 지표체계에 따라 재분류되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밝혀주게 되는데,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들은 앞선 연구의 문제점이나 한계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수정되어오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다 개선된 지표 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할 한 것과 달리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도 대부분 철학적이거나 개념적인 수준에서 인권을 정의하고, 청소년 인권의 하위 범주를 구별하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김자영, 2011; 배경내, 2006; 이봉철, 1991; 이재연 외, 2009; 최윤진, 2000 등). 이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나 인권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권의식 형성과 관련하여 김자영(2011)은 기존의 인권과 관련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 인권에 대한 감정 및 행동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의식은 “교육을 통해 위의 요소들을 내재화하고, 참여와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p. 64). 즉 인권의식이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김자영, 2011; p. 64). 김자영(2011)에 따르면, 기존의 인권의식의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에서는 인권의식 개념의 특성 상 도덕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인권의식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맞추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미(1999)는 Kohlberg의 도덕발달 관점을 채택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인권의식의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각각 6명씩과 성인 3명 등 총39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의 참여자 대부분의 인권의식이 Kohlberg의 도덕발달 2단계인 도구적 쾌락주의와 획일적 평등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과는 달리 인권에 관한 태도에 초점을 두어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영신(2010)은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인권태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요소를 지니는 지속적인 경향으로 보고, 인권태도를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험 자체만으로는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친인권적 교실 문화 경험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관련 없이 친인권적 교실문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2010). 이와 더불어 학업 성적,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지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인권에 대한 정서적 태도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성적, 종교, 주관적 계층의식,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인권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태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과 관련하여 류지현과 허창영(200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이 인권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류지현 · 허창영, 2008).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

보호의 인지, 참여활동 경험 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인권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교(2002)는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학생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식한 정도”(p. 95)로 정의하고, 이러한 인식정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재숙(2010)은 학교생활에서의 자유보장과 참여보장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참여보장은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보장의 부적 영향과 관련하여 박재숙(2010)은 비록 제도적으로 학교운영 및 학교 규정 결정에 참여가 보장된다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실제 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규율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만 설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태도(attitudes)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는 그 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단순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스키마(schema)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차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Michener & DeLamater, 1999; Schuman, 1995).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경향(predisposition)”로 정의된다(Michener & DeLamater, 1999; p. 131). 이러한 태도는 특정 대상의 명칭(label)과 관련된 일련의 인지 구조, 대상에 대한 정의적(affective) 혹은 평가적(evaluative)요소,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behavioral tendency)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을 인권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인권 태도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인지적 요소, 인권이라는 용어와 관련지어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보상을 경험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은 도구적 조건형성(instrumental conditioning)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특정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태도 형성의 중요한 기재이다(Michener & DeLamat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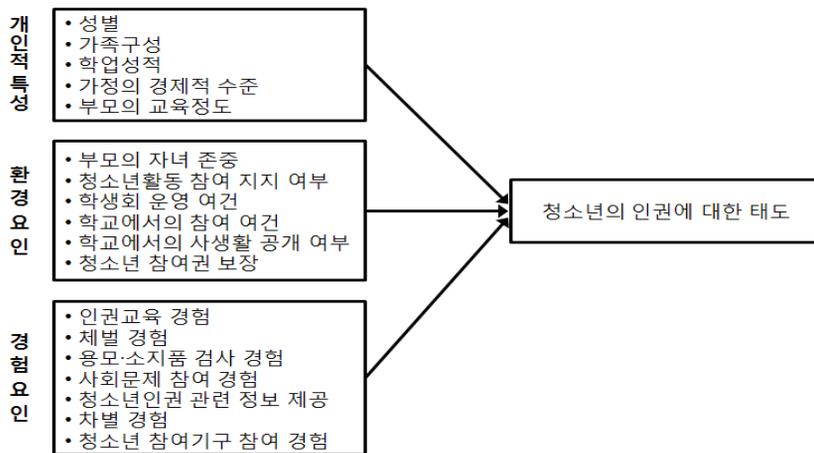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가운데 오직 일부분만이 해당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갖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의 상당 부분은 제3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제3자는 부모나 친구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도 포함된다. 제3자가 태도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Newcomb(1943)의 Bennington College 여대생에 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Bennington College의 여대생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반면, 그 대학의 교수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가족과의 접촉이 잦고 학교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다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점차 진보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태도 형성에 있어서 가족과 교수, 친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기재는 관찰 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다. 즉 관찰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태도를 모방하게 되고 또한 관찰 대상이 보이는 특정 행동에 대해 주어지는 강화(reinforcement)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영신, 2010).

태도와 관련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비춰어 볼 때,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들이 청소년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접근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 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Bronfenbrenner(1976)에 따르면, 인간 발달은 성장하고 있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개인들 간에 관찰되는 차이는 바로 그 환경의 차이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Bronfenbrenner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환경을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는 4개의 하위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미시환경(microsystem)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친구 등이 대표적인 미시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 집단 속에서 그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각각의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집단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특성의 차이 또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망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식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성별, 가족 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 정도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속해 있는 주요 환경으로서의 학교와 가정이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여, 부모의 자녀 존중 여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 학교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관련 요인으로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 등에서의 체벌을 받은 경험,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과 경험 요인,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분석결과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가운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률표집 방법에 따라 추출된 9,52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5.8%인 3,411명이다.

인권의식의 형성에 있어 연령에 따른 발달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이승미, 1999),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상황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나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고등학생 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선택하여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표본의 특성

변 수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별	남	1,803	52.8
	여	1,608	47.2
학 년	1학년	1,143	33.5
	2학년	1,145	33.6
	3학년	1,123	32.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41	89.3
	한부모가정	308	9.0
	조손가정	21	0.6
	기 타	36	1.1
거주지역	대도시	1,416	41.5
	중소도시	1,527	44.7
	읍면지역	469	13.7
학업성적	상	803	23.6
	중	1,333	39.2
	하	1,268	37.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165	34.2
	중	1,279	37.6
	하	961	28.2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7가지의 인권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7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이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요인부하량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6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합산한 값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개 문항의 신뢰도는 .82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602	.821
2.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67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767	
4.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828	
5.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778	
6.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657	

두 번째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서 응답자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 ‘1=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에서 ‘4=매우 존중받는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도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이 4개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4개 문항에 대한 알파계수는 .746으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가정	.452	.746
2. 학교	.609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853	
4. 우리나라 전체	.723	

(2)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성별,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이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을 1로, 여학생을 0으로 코딩하였으며, 가족구성은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학업성적은 “학생의 학업성적(201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1=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5=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대해 ‘1=매우 못 산다’에서 ‘7=매우 잘 산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모두 응답한 경우에는 두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분에 대해서만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3) 환경 요인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 요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부,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 여부를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문항 관련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4개 문항의 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을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의 알파계수도 .84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학생회 운영 여건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요건이 있는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및 시간 등을 보장하는지의 3개 문항에 대하여 ‘1=그렇다’, ‘0=아니다’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회 운영 여건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경우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그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공개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도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3개 문항의 값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 여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가정과 학교 각각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1로, 부정적인 응답을 0으로 코딩하여 두 문항의 값을 합산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경험 요인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경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체벌 경험, 용모 및 소지품 검사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청소년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차별 경험, 그리고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을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인권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두 문항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두 값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체벌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께서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각각의 값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값이 높을수록 체벌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용모 및 소지품 검사 경험은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 그리고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값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용모 혹은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회문제 참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지,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지의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경우는 1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별 경험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차별을 경험한 적이 많음을 의미한다.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 성적, 나이, 가정형편, 고향이나 사는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부모님 부재 등의 8개 항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구 참여 여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

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의 문항에 대하여 ‘1=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에서 ‘4=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 태도와 개인적 특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이나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을 비교하거나, 개인적 특성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권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 경험 요인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로 개인적 특성, 2단계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요인, 3단계에는 2단계에 투입된 변수들과 더불어 경험 요인 변수들을 차례로 투입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for Windows(Version 18)를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분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년이나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 척도에서 여학생들의 평균값은 19.7인 반면 남학생들은 18.5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성 별	남	1,792	18.5	3.65	-11.477***
	여	1,606	19.7	2.56	
학 년	1학년	1,143	19.1	3.20	1.703
	2학년	1,141	18.9	3.24	
	3학년	1,121	19.1	3.2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1	19.1	3.16	.988
	기타	364	18.9	3.80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는 학교 성적,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은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상관계수	.111***	.011	.050**
	N	3,394	3,396	3,115

* $p < .05$, ** $p < .01$, *** $p < .001$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양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고등학생들보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러한 차이는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고등학생의 경우 양부모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관심을 적게 받거나 가사에의 참여 부담이 더 커짐으로 인해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2	11.5	3.65	-.255
	여	1,606	11.6	2.56	
학 년	1학년	1,143	11.7	1.92	2.631
	2학년	1,141	11.5	2.08	
	3학년	1,121	11.6	2.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7	11.6	1.99	4.206 ***
	기타	364	11.1	2.21	

* $p < .05$, ** $p < .01$, *** $p < .001$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이는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220 ***	.194 **	.127 **
N	3,400	3,400	3,120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성적이 자신이 존중받는지의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대하는데 있어 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도 자녀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인권태도 결정 요인

앞 절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인들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태도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했던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태도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로 성별, 학년,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의 6개 변수로 구성된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로 1단계에 투입된 변수에 추가하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의 6개 변수로 구성된 환경 요인을 투입하고, 3단계로 2단계까지 투입된 변수와 더불어 인권교육 경험, 차별 경험,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 사회문제 참여 경험, 인권정보 제공받은 경험, 차별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의 7개 변수로 이루어진 경험 요인들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통하여 각 변수들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1단계에서 개인적 특성변수만을 투입하였을 경우,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인 특성 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beta = -.199, p < .000$),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beta = .101$,

$p < .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반면($\beta = -.113, p < .05$),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4, p < .05$).

개인적 특성 변수와 더불어 환경 요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함께 투입한 2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정도의 3개 변수가 환경 요인들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beta = .134, p < .000$),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이 많이 보장될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8, p < .05$).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인권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3, p < .000$). 반면에 학생회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적 특성변수, 환경 요인 변수와 더불어 경험 요인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특성 변수 중에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요인 변수 중에는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부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에 나타난 관계성의 방향도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경험 요인 가운데에는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와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43, p < .05$),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6, p < .01$).

표 8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b(SE)	β	b(SE)	β	b(SE)	β
성별	-1.212(.114)	-.199 ^{***}	-1.118(.111)	-.184 ^{***}	-1.067(.114)	-.176 ^{***}
가족구성	-.151(.205)	-.014	-.252(.200)	-.024	-.273(.200)	-.025
학업성적	.308(.058)	.101 ^{***}	.168(.058)	.055 ^{**}	.160(.058)	.053 ^{**}
경제적 수준	-.113(.056)	-.042 [*]	-.169(.055)	-.062 ^{**}	-.171(.055)	-.063 ^{**}
부모교육	.124(.057)	.043 [*]	.082(.055)	.029	.063(.056)	.022
학년	.008(.069)	.002	.088(.069)	.024	.106(.070)	.029
부모존중			.176(.025)	.134 ^{***}	.174(.026)	.132 ^{***}
학생회			.044(.065)	.013	.038(.065)	.011
학교참여			.077(.030)	.048 [*]	.080(.031)	.050 ^{**}
사생활			-.041(.026)	-.029	-.046(.027)	-.033
참여지지			.300(.038)	.153 ^{***}	.272(.039)	.139 ^{***}
참여보장			.063(.063)	.018	.062(.063)	.018
인권교육					-.014(.067)	-.004
체벌					-.009(.044)	-.004
용모검사					.127(.057)	.043 [*]
참여경험					.090(.032)	.056 ^{**}
인권정보					.009(.069)	.002
차별경험					-.024(.036)	-.013
참여기구					.044(.078)	.011
Constant	18.978		15.542		15.179	
R ²	.051		.108		.113	
N	2,736		2,736		2,736	
F	24.419 ^{***}		27.585 ^{***}		18.270 ^{***}	

* α .05, ** α .01, *** α .001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학업성적은 부적인 영향을,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과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 요인들이 투입된 1단계 분석에서는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이나 학년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인권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beta = .042, p < .05$),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 수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7, p < .000$).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15, p < .000$),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055, p < .01$),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1단계에 투입된 개인적 특성 변수들과 함께 환경 요인 변수들을 함께 설명변수로 사용한 2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에는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족구성은 2단계에서 환경 요인 변수들의 투입과 함께 그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학년 변수가 새롭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 요인이 함께 투입된 3단계에서 학년 변수는 다시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의 결과는 투입된 변수들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요인 변수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 그리고 청소년 참여권 보장 변수들이었으며, 학생회 운영 여건 변수는 6개 환경 요인 변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beta = .259, p < .000$),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이 좋을수록 자신들의 인권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beta = .156, p < .000$).

또한 학교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학생들은 인권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8, p < .000$),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 지지를 받을수록($\beta = .113, p < .000$), 그리고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들의 인권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beta = .114, p < .000$).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특성변수 및 환경 요인 변수와 함께 경험 요인 변수들을 투입한 3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의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1단계 및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환경 요인 변수들도 3단계에서도 유사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및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경험 요인의 경우, 모두 7개의 변수 가운데 체벌 경험과 차별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체벌 경험 경험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beta = -.080, p < .000$), 차별 경험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 = -.152, p < .000$). 즉 가정이나 학교 또는 학원에서 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을수록,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인권이 상대적으로 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경험과 차별 경험은 인권 관련 경험으로서 부정적인 경험으로서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받은 정도, 사회문제 참여 경험,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 요인 변수보다는

환경 요인 변수들이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b(SE)	β	b(SE)	β	b(SE)	β
성별	-.050(.073)	-.013	.062(.066)	.016	.045(.066)	.012
가족구성	.289(.132)	.042*	.199(.118)	.092	.114(.116)	.016
학업성적	.287(.037)	.147***	.178(.034)	.091***	.140(.034)	.072***
경제적 수준	.200(.036)	.115***	.145(.032)	.083***	.141(.032)	.081***
부모교육	.100(.036)	.055**	.043(.033)	.023	.044(.032)	.024
학년	.050(.045)	.021	.097(.041)	.041*	.061(.040)	.026
부모존중			.220(.015)	.259***	.192(.015)	.227***
학생회			.044(.038)	.019	.035(.038)	.015
학교참여			.161(.018)	.156***	.138(.018)	.134***
사생활			-.125(.015)	-.137***	-.089(.016)	-.098***
참여지지			.153(.022)	.121***	.142(.023)	.113***
참여보장			.267(.037)	.121***	.251(.037)	.114***
인권교육					.021(.039)	.009
체벌					-.110(.025)	-.080***
용모검사					.017(.033)	.009
참여경험					.027(.019)	.026
인권정보					.049(.040)	.021
차별경험					-.175(.021)	-.152***
참여기구					.019(.045)	.007
Constant	9.145		5.368		6.249	
R ²	.056		.249		.281	
N	2,739		2,739		2,739	
F	27.118***		75.438***		55.878***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인 특성,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경험들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각의 변수들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 요인, 그리고 경험 요인들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류지현·허창영(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데, 류지현·허창영(2008)은 이를 여학생들이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단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 즉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지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혹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모두 학업성적과 부모의 교육 정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학업성적이나 부모의 교육정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 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족 구성에 따른 가족 관계의 성격이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과 청소년활동 지지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학생회 운영 여건이 더 좋고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나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단순히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가운데 성별과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3단계 모형 모두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다수의 독립변수가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인 부수물(artifact)인지 실질적인(substantial) 의미를 지니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의 사회문제 참여나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직의 결성,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성평등,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금지, 국내 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교육기회 부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부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면서 앞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이 보다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지는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긍정적인 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일이나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가의 여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러한 의견에 대해 성인으로부터 의미있는 의견으로 존중받는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얻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성인들로부터 일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요인과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인정의 기회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7개의 경험 요인 가운데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 경험과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환경 요인 변수의 영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환경 요인 변수들이 경험 요인 변수들보다는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친인권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신(2010)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경험 요인보다는 환경 요인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 요인 가운데에는 단지 2개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지만, 환경 요인의 경우에는 회귀식에 투입된 6개의 변수 가운데 5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요인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β)도 경험요인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준화 회귀계수 값만으로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험 요인 변수들보다는 환경 요인 변수들의 영향이 더 의미가 있음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은 그리 중요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반면, 환경적 여건의 경우에는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권을 확보하고 향유하는 경험이 없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보다는 오히려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인권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결과는 친인권적 학교 환경은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는 물론 자신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며, 또 변경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고지하는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제 그러한 의견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은 그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의견대립이 덜 심각한 사안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친인권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서로 합의하여 학교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작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는 학교관리자나 교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적 인 지원을 하거나 학교 관리자 또는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입시 또는 취업 준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 교육은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권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 교육의 내용을 시험이나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고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교사는 매우 의미 있는 존재이지만, 학생 청소년의 인권 신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청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직교사들의 대부분은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현재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인권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지도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자료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조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과제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다년과제로 설정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전국단위의 신뢰할만한 조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정기적으로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조사의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적 시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확률표집의 방법을 통해 추출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학계는 물론 정부에도 보급하여,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활발한 학술적인 논의는 물론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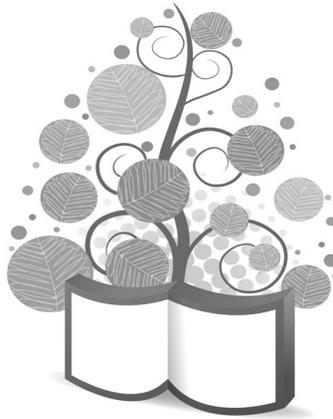
-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 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지 · 김희진 · 김진숙 · 김진호 · 안재희 · 이경자 (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류지현 · 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175-210
- 모상현 · 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 김영지 · 김영인 · 이민희 · 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1), 35-59.
- 배경내 (2006).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회 자료집**. 3-22.
- 법제처. 교육기본법.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liBgcolor0>에서 2013년 10월 4일 인출.
- 법제처. 교육기본법.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liBgcolor0>에서 2013년 10월 4일 인출.
- 이봉철 (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2(4), 5-29.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이재연 · 황옥경 · 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13.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 07-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현신 (20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현신 (20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연구보고 12-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준교 (2002).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6(1), 89-108.
- 최윤진 (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 7(2), 277-300.
- 최창욱 · 박영균 · 김진호 · 임성택 · 전성민 (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Bronfenbrenner, U. (197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comb, T. M. (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New York: Dryden.
- Michener, H. A., & DeLamater, J. D. (1999). *Social psychology*. Orlando, FL.: Harcourt Brace & Company.
- Schuman, H. (1995).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 In K. S. Cook., G. A. Fine., & J. S. House.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68-89). Boston: Allyn and Bacon.

Ⅰ 제 1 부 Ⅰ 아동 · 청소년 권리의 현재

발 표 3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1. 서 론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계량적 연구이다. 연구의 주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내는 것이며 따라서 연구의 성격은 탐색적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2 한국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이다. 2006년 이후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2008; 모상현·김희진, 2009; 모상현·천정용·신승배·이중섭, 2009;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임희진·김현신, 2011; 임희진·김현신, 2012). 기간 연구들은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국제비교연구와 청소년 참여권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연구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수차례의 전국적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조사 자료가 실태파악 이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전국규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권의 인식 수준 및 집단별 차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2006년 이후 지속되어온 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는 이제 8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많은 조사 자료들이 축적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에 대한 소개에서 한 단계 발전한 계량적 연구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참여권 개괄

1989년 UN 총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네 가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1년 비준을 통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¹⁾. 비준과 동시에 협약 비준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네 가지 권리 가운데 참여권을 주제로 하고 있다. '국제협약'이 밝히고 있는 참여권(participation right)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여권이 다른 영역의 권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그것의 적극적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참여(participation)라고 함은 공적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연령의 제약으로 인해 가장 핵심적인 참여의 형태인 투표행위에는 법률적 제약이 따르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의 참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분명 적극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핵심적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 및 이슈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집단은 아동·청소년들의 이러한 의사표현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갖는 의미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의 수동적인 가치를 뛰어 넘는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덕목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변동의 주체, 더 나아가 사회발전의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발달적 차원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사회구조나 제도

1) 민법상의 부모 접근권 등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은 제외되었으며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준법적 명문으로는 청소년 헌장이 있다.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 등에 대한 정체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정치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참여권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론적이고 원칙론적 진술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수성과 이를 둘러싼 개별 사회의 관습적 또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는다. 당장 연령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 및 청소년 시기는 주장, 가치관, 세계관등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 및 주장을 어느 정도 까지 수용 또는 존중해야 하는가에 예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²⁾. 또한 한국의 경우 입시환경의 비인간성, 보수적인 유교전통에 따른 권위적 연령질서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이후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아래의 표는 오랜 연구를 통해 완성된 청소년 참여권 측정 지표체계이다.

표 1 한국 아동·청소년 참여권 측정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 보호	종교결정권	청소년의 종교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종교재단별 설립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의 대소사 결정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부모의 이혼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부모의 이혼시 면접권 확보비율
	교육 및 진로 결정권	상급학교 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진로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2) 원론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호’와 ‘자율’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간략하게 대비하자면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력과 스스로의 관점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박병금·유은선, 2011, p.93)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표현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인터넷 이용 표현 활동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정도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정도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도서·에 대한 접근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인터넷에 대한 접근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알권리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정도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사회참여 및 참정권	사회참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청(소)년 실업률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학교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교칙 제·개정 학생참여허용 학교 비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정도
참정권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의향	
참여관련의식	참여의의와 필요성	
	참여의 장애	
	참여효과	
	참여활성화방안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수준	

한국 아동청소년 참여권 측정 지표는 크게 1) 자기생활권과 사생활 보호, 2) 표현의 자유,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그리고 6) 참여 관련 인식 및 태도 등 6개의 관심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조사연구는 크게 해당시기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실태를 파악하고 집단별 차이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와(문성호·성정숙, 2000; 우원미, 2010; 이재연·강성희, 1997) 청소년 참여권과 심리적 상태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로(문용우, 2001; 이승미, 2000)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 연구들은 한국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 참여권과 더불어 논의되는 대표적인 심리상태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참여권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자아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데 있다. 즉 개인이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으며 따라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나 이슈에 대한 참여와 같은 적극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수연·문용우, 2002.: 67). 결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성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능력의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이것을 결국 자신과 관계된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적 환경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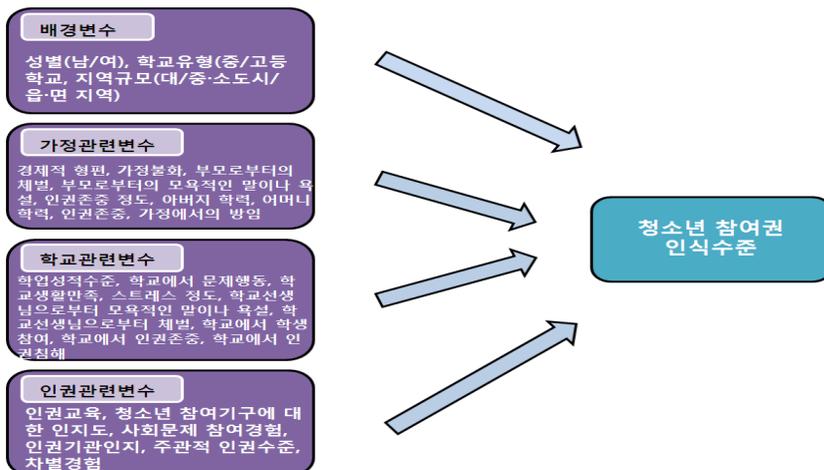
이 연구는 청소년³⁾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정책 또는 제도 연구에

3)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등학생 청소년 집단이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으로 용어를 제한하고자 한다.

집중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전국 단위 조사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문제의 설정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집단별로 종속변수, 즉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둘째, 독립변수의 구분에 따라 어느 범주의 변수들이(예컨대, 배경변수, 가정관련 변수, 학교관련 변수, 그리고 인권관련 변수 등)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 시키는가? 셋째,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들은 달라지는가? 혹은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넷째,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는 연구자가 사전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어떤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사후적으로 (post-hoc)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탐색적 연구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연구는 아닐 수 있으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사전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대한 개괄적 이해, 그리고 그것과 유의한 관계를 맺는 변수들의 파악은 이후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한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다. 원 자료는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인권의 개념이나 실태, 그리고 차별 경험 등 중요한 설문내용에 대하여 애초에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집단을 크게 세 집단으로(중학생 vs 고등학생 vs 중고등학생 또는 전체)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이 연구에 활용될 독립변수에 대하여 개괄하자면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범주는 배경변수 집단이며 응답자의 ‘거주지역’(대도시 vs. 중소도시 vs. 읍면지역), ‘성별’, 그리고 ‘가족구성’(양부모 가정 vs 한부모 가정 vs.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범주는 응답자의 가정 관련 변수집단이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체벌자로부터의 체벌이나 욕설⁴⁾,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정도’, ‘부모학력’,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본인 의견 존중 정도⁵⁾,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응답자의 학교 관련 변수집단이며 ‘학업성적’, ‘학교에서 문제행동⁷⁾, ‘학교생활 만족⁸⁾, ‘학업스트레스’, ‘교사로부터 체벌이

4) 최근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5)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등 네 문항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72)

6)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모른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모른다’ 등 다섯 문항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15)

7) 최근 1년 동안 ‘지각’,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일부러 수업에 빠짐’,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 그리고 ‘숙제를 하지 않음’ 등을 합산하여 재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72)

8) ‘나는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87)

나 욕설⁹⁾, ‘학교에서 인권침해 경험’¹⁰⁾,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 정도¹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범주는 인권관련 변수 집단이며 ‘인권교육 참여 정도’, ‘청소년 참여 기구¹²⁾에 대한 인지도’, ‘사회문제 참여 경험’¹³⁾, ‘인권기관 또는 제도¹⁴⁾ 인지정도’, ‘주관적 인권수준(가정, 학교, 사회 등)’, 그리고 ‘차별경험’¹⁵⁾ 등이다.

(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은 조사문항 가운데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한 것이다. 세 개의 문항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등이며 이 문항들은 액면타당도 측면에서 청소년의 참여인식을 다루고 있는 문항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신뢰도 계수 또한 .693으로 문항의 수를¹⁶⁾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9) 최근 1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 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71).
- 1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를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
- 1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말한다.
- 13)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12)
- 14) ‘유엔(UN)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말한다.
- 15)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 차별경험의 경우 앞선 일곱 개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개인의 각 유형의 차별경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합산하였으며 따라서 신뢰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6) 일반적으로 Cronbach-alpha 값은 문항간(inter-items) 상관과 일정 무관하게 문항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문항간 상관이 높을지라도 문항의 수가 적을 경우 Cronbach-alpha 값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 활용될 분석기법은 중다회귀분석이며 집단별로 다섯 개의 모형이 추정된다. 다섯 개의 모형은 배경변수모형, 배경변수 + 가정관련 변수 모형, 배경변수 + 가정관련 변수 + 학교관련 변수 모형, 전체모형 또는 확장모형(배경변수 + 가정관련 변수 + 학교 관련 변수 + 인권 관련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진분석선택 기법을 활용한 최적 모형 등이다. 따라서 최초 네 개의 모형은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추정되지만 마지막 최적모형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descriptive)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체(N)		
배경변수						
성별	남	52.5	52.5	3513		
	여	47.5	47.5	3180		
학교유형	중학교	49.0	49.0	3281		
	고등학교	51.0	51.0	3411		
지역규모	대도시	41.6	41.6	2784		
	중소도시	45.2	45.2	3027		
	읍면지역	13.2	13.2	881		
		최소값	최대값	M	SD	전체(N)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1.00	3.00	1.84	.76	6681
가정불화		1.00	4.00	1.74	.84	6682
부모로부터 체벌		1.00	5.00	1.37	.67	6671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 이나 욕설		1.00	5.00	1.65	1.03	6677
인권존중정도		1.00	4.00	3.20	.69	6687
아버지학력		1.00	7.00	5.05	1.20	5430
어머니학력		1.00	7.00	4.79	1.11	5431
인권존중		4.00	16.00	12.19	2.41	6678
가정에서의 방임		5.00	25.00	6.66	2.09	6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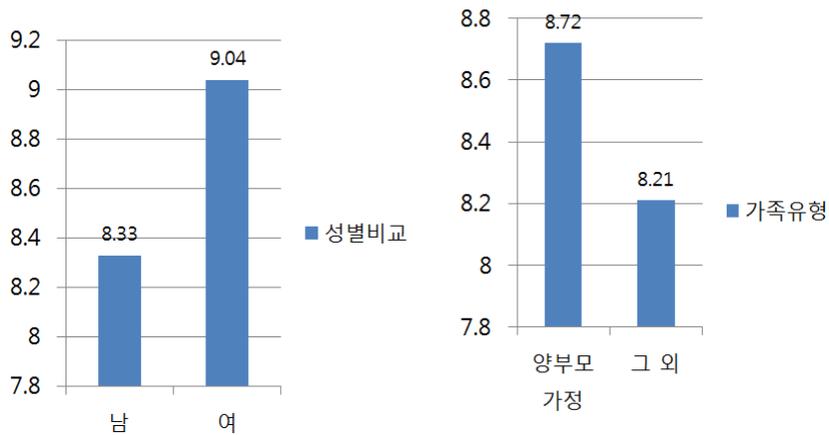
	최소값	최대값	M	SD	전체(N)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1.00	3.00	2.09	.77	6683
학교에서 문제행동	5.00	20.00	14.35	2.70	6656
학교생활만족	5.00	20.00	14.35	2.46	6671
스트레스정도	1.00	4.00	3.02	.83	6678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1.00	5.00	1.63	1.06	666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체벌	1.00	5.00	1.63	1.03	6667
학교에서 학생참여	2.00	8.00	4.56	1.57	6675
학교에서 인권존중	1.00	4.00	2.84	.70	6686
학교에서 인권침해	3.00	15.00	5.41	2.64	6678
인권변수					
인권교육	1.00	9.00	2.62	.98	3167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3.00	12.00	8.82	1.84	6672
사회문제 참여경험	3.00	12.00	4.90	1.93	6675
인권기관인지	3.00	9.00	5.43	1.63	6680
주관적 인권수준	4.00	16.00	11.63	2.20	6682
차별경험	6.00	30.00	8.39	3.00	6657
종속변수					
참여권인식점수	3.00	12.00	8.82	1.84	6672

4. 분석결과

1) 집단별 청소년 참여권 인식 수준 비교

모형 검정 및 유의 변수 탐색 이전 작업 일환으로 배경 변수의 범주별 청소년 참여권 인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중학생 집단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자 청소년: $M = 8.33$, $SD = 2.13$ VS. 여자 청소년: $M = 9.04$, $SD = 1.62$, $F = 141.09$, $p = .000$). 가족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그 외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참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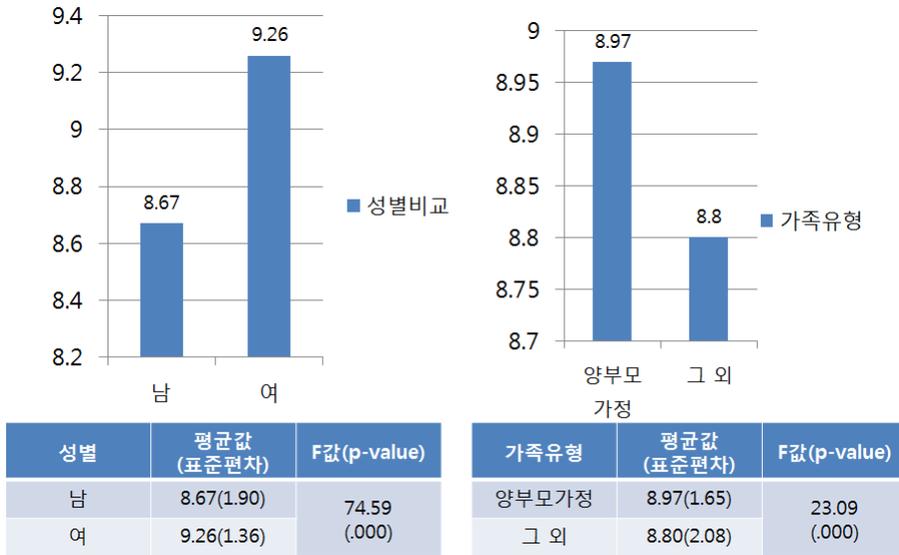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역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양부모 가정 청소년: $M = 8.72$, $SD = 1.93$ VS. 그 외 가정 청소년: $M = 8.21$, $SD = 2.20$, $F = 14.14$, $p = .000$). 반면 거주 지역 별로는 참여권 인식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1.06$, $p = .345$).



성별	평균값 (표준편차)	F값(p-value)	가족유형	평균값 (표준편차)	F값(p-value)
남	8.33(2.13)	141.09(.000)	양부모가정	8.72	14.14(.000)
여	9.04(1.62)		그 외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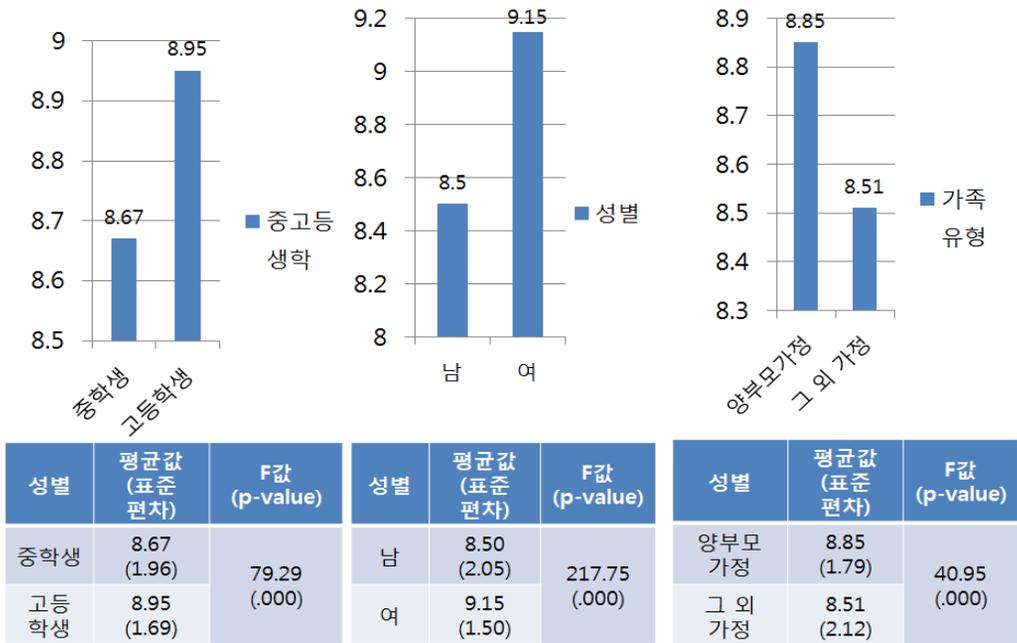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중학생 집단 비교

다음으로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역시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자 청소년: $M = 8.67$, $SD = 1.90$ VS. 여자 청소년: $M = 9.26$, $SD = 1.36$, $F = 74.59$, $p = .000$). 가족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역시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그 외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역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양부모 가정 청소년: $M = 8.97$, $SD = 1.65$ VS. 그 외 가정 청소년: $M = 8.80$, $SD = 2.08$, $F = 23.09$, $p = .000$). 반면 거주 지역별로는 참여권 인식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2.41$, $p = .090$).



[그림 3]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고등학생 집단 비교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전체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M = 8.67$, $SD = 1.96$ VS. 여자 청소년: $M = 8.95$, $SD = 1.69$, $F = 79.29$, $p = .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자 청소년: $M = 8.50$, $SD = 2.05$ VS. 여자 청소년: $M = 9.15$, $SD = 1.50$, $F = 217.75$, $p = .000$). 가족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그 외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역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양부모 가정 청소년: $M = 8.85$, $SD = 1.79$ VS. 그 외 가정 청소년: $M = 8.51$, $SD = 2.12$, $F = 40.95$, $p = .000$). 반면 거주 지역별로는 참여권 인식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1.68$, $p = .185$).



[그림 4]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집단비교

모든 집단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비양부모 청소년 가정 청소년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2)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분석

(1) 전체 집단(중고등학생) 분석 결과

(가) 모형 1

먼저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1)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 = 57.04, p = .000$)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Delta R^2 = .033$). ‘남자더미’와($B = -.638, t = -14.20, p = .000$) ‘양부모더미’($B = .296, t = 4.14, p = .000$) 변수들이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비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모형 2

다음으로 모형1에 가정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2)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35.69, p = .000$) 설명력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Delta R^2 = .082$).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 = -.578, t = -11.81, p = .000$), ‘양부모더미’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것들은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B = .077, t = 2.31, p = .021$),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51, t = 4.98, p = .000$), ‘가정에서의 인권존중’($B = .268, t = 5.99, p = .000$), ‘아버지 학력’($B = .103, t = 3.90, p = .000$),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116, t = 9.42, p = .000$),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B = -.048, t = -3.71, p = .000$) 등이다. 즉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모형 3

다음으로 모형2에 학교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3)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33.46, p = .000$) 설명력 또한 모형2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Delta R^2 = .120$).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 = -.546, t = -10.745, p = .000$),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새롭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B = -.064, t = -2.77, p = .006$).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B = .072, t = 2.18, p = .029$),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51, t = 5.04, p = .000$), ‘가정에서의 인권존중’(B

17) 이 연구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검정력(statistical power) 보다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p값이 .05와 .10사이에 존재하는 추정치들은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간주하였다.

= .237, $t = 5.38$, $p = .000$), ‘아버지 학력’($B = .063$, $t = 2.42$, $p = .015$),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82$, $t = 6.60$, $p = .000$)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는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새롭게 ‘어머니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67$, $t = -2.41$, $p = .016$). 즉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B = .122$, $t = 4.89$, $p = .000$), ‘학교에서의 문제행동’($B = .030$, $t = 2.97$, $p = .003$), ‘학교생활 만족정도’($B = .088$, $t = 7.97$, $p = .000$),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82$, $t = 6.08$, $p = .000$),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 정도’($B = .082$, $t = 5.21$, $p = .000$)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모형 4

다음으로 모형3에 인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전체모형(모형4, Full Model)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9.53$, $p = .000$) 설명력 또한 모형3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Delta R^2 = .174$).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415$, $t = -5.94$, $p = .000$),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B = -.144$, $t = -4.56$, $p = .000$).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B = .094$, $t = 2.08$, $p = .037$),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12$, $t = 2.77$, $p = .006$), ‘아버지 학력’($B = .069$, $t = 1.98$, $p = .048$), ‘어머니 학력’($B = -.074$, $t = -2.00$, $p = .045$),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85$, $t = 4.93$, $p = .000$)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즉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B = .109, t = 3.22, p = .001$), ‘학교생활 만족정도’($B = .073, t = 4.51, p = .000$),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60, t = 3.82, p = .000$),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 정도’($B = .083, t = 3.71, p = .000$)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횃수’($B = .097, t = 2.91, p = .004$), ‘사회문제 참여 경험’($B = .038, t = 2.25, p = .024$),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B = .129, t = 6.06, p = .000$), 그리고 ‘주관적 인권수준’($B = .107, t = 4.48, p = .000$)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인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모형 5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의 전진분석기법¹⁸⁾을 활용하여 최적모형(모형 5)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열 두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추정되었다.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 전체 변량의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2.21, p = .000, \Delta R^2 = .173$).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효과의 크기순으로 ‘주관적 인권수준’(B

18) 회귀방정식에 포함될 독립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주로 독립변수의 수가 많은 회귀분석과정에 주로 사용되며, 가장 단순한 회귀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골라 차례대로 모형에 포함시켜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독립변수가운데 종속변수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예를 들어, 단순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고 회귀선을 추정 한 후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선택되는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절차를 중단한다. 검정결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나머지 독립변수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편상관계수가 가장 큰)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추정하고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다. 이 과정을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수행하게 되며 더 이상 유의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직전까지의 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바로 최적모형이 된다.

= .109, $t = 5.65$, $p = .000$),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B = .137$, $t = 6.61$, $p = .000$), ‘남자더미’($B = -.427$, $t = -6.57$, $p = .000$), ‘학교생활만족’($B = .074$, $t = 4.69$, $p = .000$),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존중’($B = .083$, $t = 5.31$, $p = .000$), ‘가정의 경제적 형편’($B = -.146$, $t = -4.93$, $p = .000$),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80$, $t = 4.38$, $p = .000$), ‘학교에서의 학생참여’($B = .080$, $t = 3.69$, $p = .000$), ‘학업성적’($B = .126$, $t = 3.90$, $p = .000$),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02$, $t = 3.00$, $p = .003$), ‘인권교육 횟수’($B = .098$, $t = 2.95$, $p = .003$), ‘사회문제 참여 경험’($B = .044$, $t = 2.69$, $p = .007$)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주관적인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여자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체집단(중고등학교)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B(\hat{\beta})$	p	$B(\hat{\beta})$	p	$B(\hat{\beta})$	p	$B(\hat{\beta})$	p	$B(\hat{\beta})$	p
배경변수										
대도시 더미			.012 (.159)	.873	-.018 (-.243)	.808	-.023 (-.230)	.818		
남자 더미	-.638 (-14.202)	.000	-.578 (-11.814)	.000	-.546 (-10.745)	.000	-.415 (5.948)	.000	-.427 (-6.577)	.000
양부모 더미	.296 (4.144)	.000	.169 (1.799)	.072	.107 (1.157)	.247	.045 (.352)	.725		
중소도시 더미	.009 (.131)	.896	.052 (.684)	.494	-.004 (-.053)	.957	-.032 (-.321)	.749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032 (-.1356)	.175	-.064 (-2.776)	.006	-.144 (-4.565)	.000	-.146 (-4.938)	.000
가정불화			.077 (2.316)	.021	.072 (2.189)	.029	.094 (2.082)	.037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151 (4.984)	.000	.151 (5.048)	.000	.112 (2.774)	.006	.102 (3.008)	.003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인권존중정도			.268 (5,996)	.000	.237 (5,380)	.000	.050 (.665)	.506	.083 (5,312)	.000
아버지 학력			.103 (3,905)	.000	.063 (2,427)	.015	.069 (1,981)	.048		
어머니 학력			-.053 (-,1879)	.060	-.067 (-,2415)	.016	-.074 (-,2,008)	.045		
인권존중			.116 (9,429)	.000	.082 (6,607)	.000	.085 (4,934)	.000		
가정에서의 방임			-.048 (-,3,710)	.000	-.024 (-,1869)	0.62	-.029 (-,1633)	.103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122 (4,895)	.000	.109 (3,223)	.001	.126 (3,905)	.000
학교에서 문제행동					.030 (2,975)	.003	.019 (1,404)	.160		
학교생활만족					.088 (7,976)	.000	.073 (4,514)	.000	.074 (4,695)	.000
스트레스정도					.182 (6,087)	.000	.160 (3,828)	.000	.180 (4,381)	.000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54 (-,1,889)	.059	-.047 (-,1,195)	.2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체벌					-.006 (-,213)	.831	.047 (1,130)	.258		
학교에서 학생참여					.082 (5,218)	.000	.083 (3,712)	.000	.080 (3,692)	.000
인권변수										
인권교육							0.97 (2,910)	.004	.098 (2,951)	.003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039 (2,257)	.024		
사회문제 참여경험							.038 (2,257)	.024	.044 (2,697)	.007
인권기관인지							.129 (6,067)	.000	.137 (6,617)	.000
주관적 인권수준							.107 (4,486)	.000	.109 (5,652)	.000
차별경험							.021 (1,709)	.088		
<i>F(p)</i>	57,043(.000B)		35,699(.000)		33,436(.000)		19,535(.000)		42,214(.000)	
ΔR^2	.033		.082		.120		.174		.173	

(2) 고등학생 집단 분석 결과

(가) 모형 1

먼저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1)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 = 27.42, p = .000$)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Delta R^2 = .030$). ‘남자더미’($B = -.596, t = -10.05, p = .000$) 변수만이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 고등학생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배경변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 모형 2

다음으로 모형1에 가정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2)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9.18, p = .000$) 설명력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Delta R^2 = .078$).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578, t = -9.24, p = .000$).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19, t = 3.05, p = .002$), ‘가정에서의 인권존중’($B = .259, t = 4.42, p = .000$), ‘아버지 학력’($B = .076, t = 2.32, p = .020$),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97, t = 6.11, p = .000$),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B = -.069, t = -4.29, p = .000$) 등이다. 즉 여자 고등학생 청소년일수록,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모형 3

다음으로 모형2에 학교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3)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9.00, p = .000$) 설명력 또한 모형2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Delta R^2 = .120$).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564, t = -8.58, p = .000$),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B = -.074, t = -2.49, p = .013$),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33,$

$t = 3.43, p = .001$), ‘가정에서의 인권존중’($B = .249, t = 4.35, p = .000$),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60, t = 3.76, p = .000$),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B = -.051, t = -3.20, p = .001$)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B = .073, t = 2.31, p = .021$), ‘학교에서의 문제행동’($B = .033, t = 2.57, p = .010$), ‘학교생활 만족정도’($B = .108, t = 7.45, p = .000$),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207, t = 5.14, p = .000$),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정도’($B = -.084, t = -2.35, p = .019$)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모형 4

다음으로 모형3에 인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전체모형(모형4, full Model)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0.88, p = .000$) 설명력 또한 모형3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Delta R^2 = .176$).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382, t = -4.19, p = .000$),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B = -.126, t = -3.02, p = .003$).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14, t = 2.23, p = .025$),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76, t = 3.35, p = .001$), ‘가정에서의 방임’($B = -.054, t = -2.46, p = .014$)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B = .091, t = 2.15, p = .032$),

‘학교생활 만족정도’($B = .122, t = 5.71, p = .000$),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82, t = 3.23, p = .001$)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횟수’($B = .092, t = 2.06, p = .039$), ‘사회문제 참여 경험’($B = .059, t = 2.62, p = .009$),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B = .108, t = 3.97, p = .000$)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모형 5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의 전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적모형(모형 5)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열 두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최적모형을 추정되었다.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 전체 변량의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3.46, p = .000, \Delta R^2 = .173$).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효과의 크기순으로 ‘학교생활 만족도’($B = .123, t = 5.95, p = .000$),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B = .117, t = 4.44, p = .000$), ‘남자더미’($B = -.415, t = -5.08, p = .000$),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86, t = 4.22, p = .000$), ‘주관적 인권수준’($B = .081, t = 3.19, p = .001$),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B = .186, t = 3.39, p = .001$), ‘가정의 경제적 형편’($B = -.147, t = -3.83, p = .000$), ‘사회문제 참여 경험’($B = .058, t = 2.69, p = .007$), ‘학업성적’($B = .105, t = 2.60, p = .009$),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B = -.055, t = -2.56, p = .011$),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및 욕설’($B = .109, t = 2.44, p = .014$), 그리고 ‘인권교육 횟수’($B = .087, t = 1.99, p = .046$)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수록, 여자일수록, 의사 결정시 부모님이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수록,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사회문제에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욕설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권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고등학생)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배경변수										
대도시 더미	.101 (1.126)	.260	.035 (.367)	.714	.031 (.332)	.740				
남자 더미	-.596 (-10.057)	.000	-.578 (-9.247)	.000	-.564 (-8.585)	.000	-.382 (-4.197)	.000	-.415 (-5.080)	.000
양부모 더미	.135 (1.465)	.143	.008 (.064)	.949	-.024 (-.208)	.835	-.179 (-1.059)	.290		
중소도시 더미	.143 (1.611)	.107	.091 (.969)	.332	.086 (.918)	.359	.035 (.274)	.784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041 (-1.375)	.169	-.074 (-2.495)	.013	-.126 (-3.029)	.003	-.147 (-3.837)	.000
가정불화			.073 (1.728)	.084	.056 (1.339)	.181	.118 (2.067)	.039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66 (-1.034)	.301	-.013 (-.211)	.833	-.031 (-.359)	.719		
인권존중정도			.119 (3.050)	.002	.133 (3.435)	.001	.114 (2.239)	.025	.109 (2.449)	.014
아버지 학력			.259 (4.422)	.000	.249 (4.352)	.000	.181 (1.828)	.068		
어머니 학력			.076 (2.322)	.020	.051 (1.597)	.110	.021 (.483)	.629		
인권존중			-.024 (-.691)	.490	-.039 (-1.146)	.252	-.036 (-.772)	.440		
가정에서의 방임			.097 (6.112)	.000	.060 (3.760)	.000	.076 (3.353)	.001	.086 (4.226)	.000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051 (-3.203)	.001	.091 (2.150)	.032	.105 (2.600)	.009
학교에서 문제행동					.033 (2.574)	.010	.015 (.839)	.401		
학교생활만족					.108 (7.453)	.000	.122 (5.713)	.000	.123 (5.953)	.000
스트레스정도					.207 (5.143)	.000	.182 (3.233)	.001	.186 (3.391)	.001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84 (-2.351)	.019	.001 (.024)	.981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체벌					.020 (.506)	.613	-.021 (-.402)	.688		
학교에서 학생참여					.013 (1.112)	.266	.009 (.513)	.608		
인권변수										
인권교육							.092 (2.066)	.039	.087 (1.994)	.046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021 (.379)	.705		
사회문제 참여경험							.059 (2.625)	.009	.058 (2.691)	.007
인권기관인지							.108 (3.977)	.000	.117 (4.440)	.000
주관적 인권수준							.045 (1.404)	.160	.081 (3.198)	.001
차별경험							-.015 (-.902)	.367		
<i>F(p)</i>	27.429(.000b)		19.187(.000b)		19.009(.000b)		10.886(.000b)		23.469(.000M)	
ΔR^2	.030		.078		.120		.176		.178	

(3) 중학생 집단 분석결과

(가) 모형 1

먼저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1)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 = 32.30, p = .000$)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Delta R^2 = .037$). ‘남자더미’와($B = -.692, t = -10.20, p = .000$) ‘양부모더미’($B = .462, t = 4.23, p = .000$) 변수들이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비양부모 가정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양부모 가정 중학생 청소년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모형 2

다음으로 모형1에 가정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2)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6.99, p = .000$) 설명력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Delta R^2 = .084$).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B = -.572, t = -7.33, p = .000$)와 ‘양부모더미’($B = .330, t = 2.21, p = .027$)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71, t = 3.61, p = .000$), ‘가정에서의 인권존중’($B = .261, t = 3.76, p = .000$), ‘아버지 학력’($B = .135, t = 3.08, p = .002$),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136, t = 7.05, p = .000$) 등이다. 즉 여자 고등학생 청소년일수록, 양부모 가정일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모형 3

다음으로 모형2에 학교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3)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7.17, p = .000$) 설명력 또한 모형2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Delta R^2 = .133$).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516, t = -6.44, p = .000$),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64, t = 3.52, p = .000$), ‘가정에서의 인권존중’($B = .202,$

$t = 2.94, p = .003$),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98, t = 5.05, p = .000$)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B = -.292, t = -5.45, p = .000$), ‘학교생활 만족정도’($B = .070, t = 4.18, p = .000$),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18, t = 2.57, p = .010$),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B = .169, t = 6.69, p = .000$)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모형 4

다음으로 모형3에 인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전체모형(모형4, Full Model)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4.69, p = .000$) 설명력 또한 모형3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Delta R^2 = .148$).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505, t = -6.34, p = .000$),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B = .102, t = 2.20, p = .028$), ‘어머니 학력’($B = -.098, t = -2.17, p = .030$),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86, t = 4.38, p = .000$)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학생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이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B = -.245, t = -4.57, p = .000$), ‘학교생활 만족정도’($B = .046, t = 2.63, p = .009$),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01, t = 2.19, p = .028$),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B = .124, t = 4.79, p = .000$)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B = .140, t = 5.63, p = .000$), ‘주관적 인권수준’($B = .119, t = 4.63, p = .000$), 그리고 ‘차별경험’($B = .046, t = 3.25, p = .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주관적 인권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중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모형 5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의 전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적모형(모형 5)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열 한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추정되었다.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 전체 변량의 약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4.79, p = .000, \Delta R^2 = .149$).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효과의 크기순으로 ‘주관적 인권수준’($B = .100, t = 4.90, p = .000$),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B = .155, t = 6.64, p = .000$), ‘남자더미’($B = -.532, t = -6.98, p = .000$), ‘학교에서 학생참여’($B = .133, t = 5.25, p = .000$), ‘학업성적’($B = -.263, t = -5.22, p = .000$),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B = .078, t = 4.29, p = .000$), ‘차별경험’($B = .042, t = 3.19, p = .001$), ‘학교생활 만족’($B = .051, t = 2.99, p = .003$),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욕설 경험’($B = .094, t = 2.42, p = .015$),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B = .110, t = 2.42, p = .016$), 그리고 ‘어머니 학력’($B = -.075, t = -2.10, p = .035$) 등이다.

표 5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중학생)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형	
	$B(t)$	p	$B(t)$	p	$B(t)$	p	$B(t)$	p	$B(t)$	p
배경변수										
대도시 더미	-.095 (-.874)	.382	-.025 (-.195)	.846	-.047 (-.378)	.706	-.023 (-.186)	.853		
남자 더미	-.692 (-10.209)	.000	-.572 (-7.334)	.000	-.516 (-6.444)	.000	-.505 (-6.340)	.000	-.532 (-6.985)	.000
양부모 더미	.462 (4.238)	.000	.330 (2.215)	.027	.247 (1.694)	.090	.238 (1.627)	.104		
중소도시 더미	-.127 (-1.174)	.240	.006 (.051)	.959	-.045 (-.373)	.710	.020 (.169)	.866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008 (.216)	.829	-.030 (-.824)	.410	-.055 (-1.526)	.127		
가정불화			.068 (1.280)	.201	.083 (1.594)	.111	.033 (.633)	.526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36 (-.587)	.577	-.039 (-.652)	.514	-.055 (-.901)	.368		
인권존중정도			.171 (3.612)	.000	.164 (3.525)	.000	.102 (2.205)	.028		
아버지 학력			.261 (3.763)	.000	.202 (2.945)	.003	-.086 (-1.013)	.311	.078 (4.295)	.000
어머니 학력			.135 (3.087)	.002	.068 (1.582)	.114	.047 (1.096)	.273		
인권존중			-.068 (-.039)	.145	-.085 (-1.868)	.062	-.098 (-2.170)	.030	-.075 (-2.109)	.035
가정에서의 방임			.136 (7.055)	.000	.098 (5.051)	.000	.086 (4.381)	.000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292 (-5.457)	.000	-.245 (-4.578)	.000	-.263 (-5.222)	.000
학교에서 문제행동					.028 (1.698)	.090	.017 (1.012)	.311		
학교생활만족					.070 (4.189)	.000	.046 (2.630)	.009	.051 (2.999)	.003
스트레스정도					.118 (2.570)	.010	.101 (2.194)	.028	.110 (2.422)	.016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15 (-.336)	.737	-.038 (-.817)	.414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체벌					-.027 (-.571)	.568	.014 (.299)	.765	.094 (2.426)	.015
학교에서 학생참여					.009 (.596)	.551	.002 (.111)	.912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인권변수										
인권교육							-.006 (-.218)	.82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015 (.277)	.782		
사회문제 참여경험							.033 (1.599)	.110		
인권기관인지							.140 (5.636)	.000	.155 (6.649)	.000
주관적 인권수준							.119 (4.631)	.000	.100 (4.903)	.000
차별경험							.046 (3.255)	.001	.042 (3.190)	.001
<i>F(p)</i>	32.209(.000b)		16.992(.000b)		17.173(.000b)		14.695(.000b)		34.790(.000)	
ΔR^2	.037		.084		.133		.148		.149 ^c	

즉, 주관적 인권수준이 높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학생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욕설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지금까지의 집단별로 종속변수, 즉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 집단(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에서 각 범주의 변수들은 종속변수의 변량의 설명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정된 최적모형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들의 경우 개별 독립변수들의 갖는

중속변수와의 관계의 강도¹⁹⁾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집단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강한 긍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역시 학령과 무관하게 여자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 학교, 한국사회의 전반적 인권수준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집단별로 차이 역시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인권교육 횟수’, 그리고 ‘사회문제 참여’ 등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최적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차별경험’, ‘학교에서 학생참여’, 그리고 ‘어머니 학력’ 등의 변수는 고등학생 집단의 최적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최적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학교생활 만족’,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남자더미’,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주관적 인권수준’, ‘학업성적’,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이나 체벌’ 등으로 나타났다.

5. 소결 및 함의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후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는 양방향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들의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또는 인지는 청소년들의 참여권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분명한 것은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9) 이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서 최적모형 추정에 활용된 개별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편상관계수와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상관계수의 크기는 최적모형에서 선택한 독립변수의 순서에 나타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최적모형 분석 결과에서 산출된다.

셋째,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강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인권존중태도가 자녀의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인지 수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모로부터의 체벌이나 욕설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 어떠한 기제(mechanism)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겼지만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인권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의 학생참여가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모형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 사회문제 참여 경험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모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참여의 공간이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는 모든 집단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입의 성별로 차별화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남녀의 특성에 알맞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전반적 한국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수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보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권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는 것이다. 당연하고 원론적일 수 있겠으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자면, 먼저 위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의 성격은 탐색적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회과학 연구에서 탐색적 성격의 연구는 단순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 비해서는 보다 발전된 수준의 연구로 인식되나 이론적 연역과 가설에 기반을 둔 인과관계 분석 연구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의 연구로 여겨진다. 이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 참여권의 경우 대부분의 과거 연구들이 해외 문헌 소개 및

국내 적용방안을 둘러싼 정책연구에 집중되어 왔음으로 인해 이론적 기반과 실증적 자료가 부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의 탐색적 성격은 청소년 참여권,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현 단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될 부분은 분석 방법으로서 회귀분석의 적절성이다.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들 중 일부는 종속변수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학교성적이나 부모로부터의 욕설,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등이 그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이론적 또는 해석적 유의성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음을 감안 할 때 몇몇 변수들의 효과가 통계적 인공물(statistical artifact)이 아닌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된 전국 단위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권의 실증적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간 축적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념적 연구에서 진일보한 실증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 김영지 · 김희진 · 김진숙 · 김진호 · 안재희 · 이경자 (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청소년 인권실태와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병금 · 유은선 (2011). 청소년의 권리인식과 자아존중감. *청소년학연구*, 18(8), 89-116.
- 모상현 · 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연구 IV: 생존권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생존권 · 보호권 정량지표 (연구보고 09-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 김영지 · 김영인 · 이민희 · 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V: 발달권 · 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 성정숙 (2000). 학생청소년의 권리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계간 사회복지*, 146, 67-94.
- 문용우 (200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원미 (2010).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수준 실태조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총신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 ·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9(6), 65-89.
- 이재연 · 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65-83.
- 이승미 (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진 · 김현신 (20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현신 (20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연구보고 12-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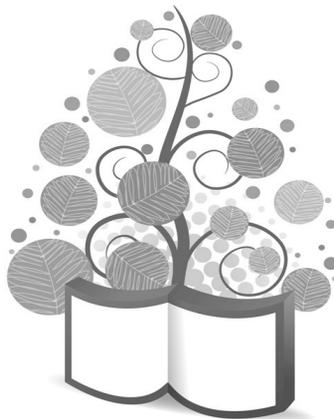
■ 제 1 부 ■ 아동 · 청소년 권리의 현재

지정토론

토론 1.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토론 2.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3.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 론 문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4주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65주년을 즈음하여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참여를 연구해오신 김영지 박사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정책보고서라 감히 말씀을 올려봅니다. 또한 기존에 인권영역을 나누어 격년 조사하던 조사체계를 개선하여 한 해에 종합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틀을 마련하고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제가 토론을 하기보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가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저의 소박한 견해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토론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격년으로 조사되었던 부분을 2013년도부터는 4개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을 통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지표를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

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의 130개 지표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 및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방대한 작업과 도전을 시도한 연구진께 노고에 대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고민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의 합집합을 어떻게 교집합과 부분집합으로 구분해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동 인권과 청소년 인권을 굳이 분류할 필요도 없을 수 있겠으나, 법적 연령범주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혹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이 다른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인권영역은 청소년의 인권 보다 보호(care)에 좀 더 중점적이고 청소년 인권영역은 아동보다는 자기결정권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학자들간의 막연한 분류틀은 가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향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아동복지 체계를 확립한 카두신(Kadushin)은 부모-아동관계의 긴장 해소를 위한 지지적서비스(Supportive Service),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가 3S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지적 서비스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각종 가족서비스,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아동 학대와 방임 등이 있고, 보충적서비스에는 AFDC, Medicaid(의료보호), 보육서비스 등이 있으며 마지막 대리적서비스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 혹은 청소년영향평가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중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반복횡단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trend 분석과 cohort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년도부터는 년차별 비교분석의 틀이 확립되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노력, 의미있는 연구결과와의 차이 분석 등을 밝혀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도 시행했듯이, 관련 변인 혹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세부 연구과제 수행이 병행된다면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다차원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권은 곧 투쟁’ 그리고 누군가의 인권에 대해 얘기하면 마치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 같은 상대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인권을 얘기하면 부모 인권, 교사 인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곤 합니다.

최근 다문화에 관한 방송,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9%로 오히려 장애 청소년에 대한 50.7%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 관점으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홍보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부처간 장벽허무는 일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회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크나큰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의 법적 근거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운영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현실,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열악한 문제, 아동·청소년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분,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문제, 가출청소년의 93.7%는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방임빈도가 높은 것, 끊임없이 제기되는 아동·청소년의 낮은 건강상태, 행복감, 높은 입시 스트레스,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 과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28.3%에 불과하고, 62.3%는 이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문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여가 문화시설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은 48.8%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20% 미만에 불과한 연구결과 내용,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2만여명의 탈북 아동·청소년 문제, 흉악범, 성폭력범 등 강력범이 증가하는 범죄청소년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등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예산도 부족한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정부부처간 협력하여 문화를 바꿔갈 수 있을 것인지, 숨방망이식 정책과제 시행으로는 그다지 희망적이지도 고무적이지도 않습니다. 경쟁체제, 고도 성장위주의 국정과제 방향성에서 탈피하여 복지와 교육을 통한 선순환 체제 확립, 나눔과 공생, 소통과 공동체 문화를 통한 분배의 정책이 점진적으로나마 희망이 되진 않을까 조심히 제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 표현방식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강화시키는 부분과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예산과 함께 분류하여 표현해준다면 그리고 좀 더 정책과제들끼리 유목화, 분류화 된다면 실효성과 정책이해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연구진께 다시금 크나큰 박수와 경이를 표하며, 이렇게 훌륭한 연구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 론 문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까지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해 오다가 2013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통합하고 격년으로 조사하던 것을 매년 조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인권영역과 지표의 체계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 실태 파악에 머물렀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논문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그동안의 단순 실태 분석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자가 조사문항을 직접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석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의 발전적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선행연구를 보면 인권 의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 “인권에 관한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 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로 보아야 하는지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청소년 인권을 바라보는 태도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문항 중 46번 문항은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정서적, 행위적 태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 인권태도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둘째, 인권교육 경험 등의 변인의 청소년인권 태도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의 인권 태도에 대한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인권 태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단순히 경험 유무보다는 인권교육의 질과 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분석에서 인권교육경험 등의 인권 태도에 대한 영향 측정에서 교육경험을 유무만을 가지고 측정하였는데, 0~5회의 연속 변수로 해서 측정하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셋째, 지역변수에 대한 고려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논문 분석에서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지역변수는 의미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태분석 내용에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지역변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혹은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향후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조사도구가 실태조사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분석 시 필요한 조사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토 론 문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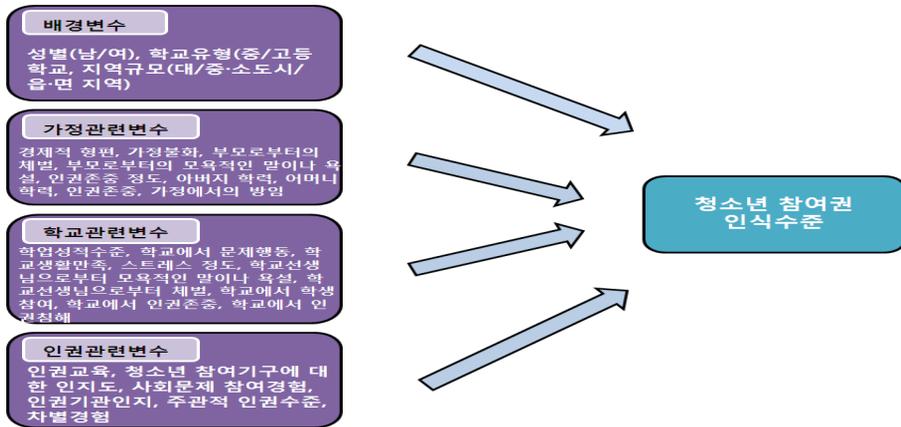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보고서 요약¹⁾

2006년 이후 지속되어온 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는 이제 8년차²⁾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 많은 조사 자료들이 축적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에 대한 소개에서 한 단계 발전한 계량적 연구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계량적 연구**이다. 연구의 주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내는 것이며 따라서 연구의 성격은 탐색적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3’ 한국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집단별로 **종속변수**, 즉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둘째**, 독립변수의 구분에 따라 어느 **범주의 독립변수들**이(예컨대, 배경변수, 가정 관련 변수, 학교관련 변수, 그리고 인권관련 변수 등)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 시키는가? **셋째**, **교급간 비교**에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들에 차이가 있는가? 혹은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넷째**,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이다.

1) 본 보고서는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집필하였으며 토론을 위해 토론자가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임.

2) 2007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 현재까지 청소년인권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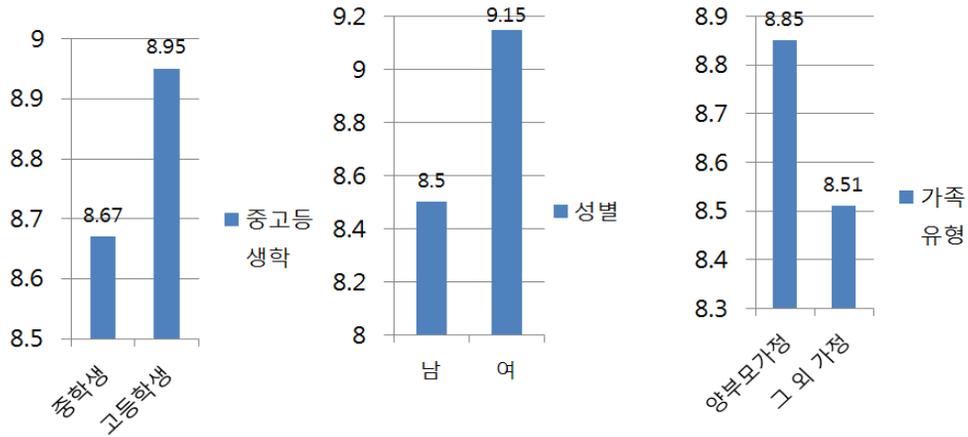
이 연구에 활용될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배경변수 집단이며, 두 번째 범주는 응답자의 가정 관련 변수집단, 세 번째 범주는 응답자의 학교 관련 변수, 그리고 마지막 범주는 인권관련 변수이다. 종속변수인 참여권 인식수준은 세 개의 문항으로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에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분석결과, 추정된 최적모형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들의 경우 개별 독립변수들의 갖는 종속변수와의 관계의 강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실태조사결과 모든 집단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수준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비양부모 청소년 가정 청소년에 비해 참여권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성별	평균값 (표준 편차)	F값 (p-value)	성별	평균값 (표준 편차)	F값 (p-value)	성별	평균값 (표준 편차)	F값 (p-value)
중학생	8.67 (1.96)	79.29 (.000)	남	8.50 (2.05)	217.75 (.000)	양부모 가정	8.85 (1.79)	40.95 (.000)
고등 학생	8.95 (1.69)		여	9.15 (1.50)		그 외 가정	8.51 (2.12)	

[그림 2]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집단비교

2.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변인은 집단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강한 긍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역시 학령과 무관하게 여자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 학교, 한국사회의 전반적 인권수준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개별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집단별로 차이 역시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인권교육 횟수, 그리고 ‘사회문제 참여’ 등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차별경험’, ‘학교에서 학생참여’, 그리고 ‘어머니 학력’ 등의 변수는 고등학생 집단의 최적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최적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학교생활 만족’,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남자더미’,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주관적 인권수준’, ‘학업성적’,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이나 체벌’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 참여권,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을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참여권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횡적자료를 활용한 조사 결과의 분석도 실태파악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의 참여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고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자료의 종단 구축을 통해 다양한 참여 영역에서의 변화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네 개의 범주인, 배경변수, 가정 관련 변수, 학교 관련 변수, 그리고 인권관련 변수에 따라 우리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변수특성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이 분석을 통해, 종단 기적 관점에서 영역에 따라 인권참여정책의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 자료가 일관성 있게 종단자료로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는 동시에 이를 종단 분석 기법을 통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기관 및 제도의 인지도 변수는 모든 집단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참여는 인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참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청소년의 높은 참여권 인식 수준은 청소년을 성장·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높은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권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배려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청소년의 참여권 정책은 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지자체의 참여위원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법과 같은 규범에 의해 정형화된 정책적 참여유형 이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본 기구에 대해 무지한 형편이며 관심도 떠한 낮다. 지자체 및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이슈(agenda)를 제시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후속적 논의에서는 대부분 제외되는 형편이다. 참여에 대한 의제 설정과 아울러 실제적으로 결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발언권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청소년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불충분하다.

셋째, 또한 즉 청소년들 둘러싼 생활환경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는 많지가 않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인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유관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권 보장은 가정, 지역사회, 사회전반에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학교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신장하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어 져야한다.** 학교는 청소년의 참여를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참여를 제안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참여권 증진을 위한 영역은 대부분 청소년단체나 활동시설 등에서의 진행되는 기구 혹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이는 학교가 아직까지 학생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이며 다소 권위적이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통제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학생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상호 협력적으로 참여과정에 학교 혹은 학급운영의 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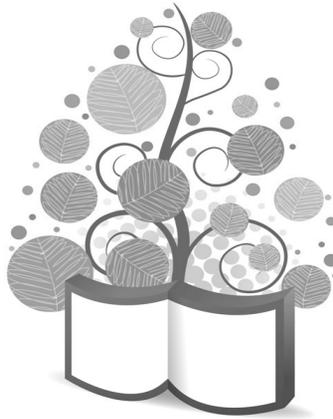
넷째, 다양한 참여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협조관계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그들의 지닌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전반적 한국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수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보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권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는 것이다. 당연하고 원론적일 수 있겠으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Ⅱ 제 2 부 Ⅱ 아동 · 청소년 권리 신장 과제

발 표 4

아동 · 청소년 권리모니터링 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과제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 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과제

1. 들어가며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와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황옥경, 2002). 우리나라에서 미약하나마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시작된 것은 2006년 부터이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 이행상황에 대한 2차 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정부가 낸 보고서(2001년)에 대해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중앙 기구가 없음을 우려”(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4)하였고, 특히 협약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하였다(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5-16). 이후 제출된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해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이후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기관이 굿네이버스로 변경되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NGO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기구 운영방식은 운영기관의 교체에 따른 운영의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의 제한,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아동·청소년권리교육, 관련교재 개발 등의 옹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성인에 비해서 진정을 하는데 여러 제약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배치의 한계로 조사과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권고이후 해당 아동·청소년이나 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후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적부문에서의 아동권리모니터링이 지지부진한 사이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인권조례 등을 제정하고 집행기구로 아동·청소년권리추진 위원회나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설립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 NGO 단체는 아동·청소년권리침해에 대한 대응보다는 아동·청소년권리 옹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권리 캠페인,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권리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의회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활동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NGO 등이 지역이나 기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 기반에 의거한 옴부즈활동과 모니터링기구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기구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권리교육과 홍보를 국가수준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본 발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기구 및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보고와 관련정부 보고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제는 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이하 ENOC)이 2010년과 2008년에 발표한 The Role and Mandate of Children's Ombudspersons in Europe: Safeguarding and Promoting Children's Rights and Ensuring Children's Views are taken seriously과

INFORMATION AND TRAINING PACK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1)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의 의미¹⁾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는 스칸디나비아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원래 의미는 대사, 정부의 권력과 행동과 관련하여 한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나 개인을 의미한다. 세계최초의 옴부즈맨은 스웨덴의 1809년 사법부 옴부즈맨이었다. 스웨덴은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Ombudsman against Ethnic Discrimination; Children’s Ombudsman, Disability Ombudsman and Ombudsman against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을 두고 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스위스 세이브터 칠드런의 Radda Barmen에 의해서 1970년대에 처음으로 창안되었다. 이는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노르웨이가 아동을 위한 옴부즈 기구를 설립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hunam rights of children) 보호, 증진, 그리고 모니터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였다. 아동이나 아동권리 커미셔너나 커미션, 아동권리국(National Council for Childme’s Rights), Defenders of Children, Child Advocates, Child Rights Delegates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진 기구가 설립되었다. 모니터링 기구는 국가수준에서 혹은 지방정부 혹은 지역차원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아동권리 옴부즈 기구의 운영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동권리 옴부즈 기구 그 자체가 노르웨이 아동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주었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Gro Harlem Bruntland, Prime Minister of Norway, 1991)

1) 이 부분은 이재연·안동현·황옥경 편(2008). 아동과 권리 중 제 12장 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 옴부즈기구의 내용의 일부임.

많은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정부부처 산하기관이나 정부부처 중 하나로 기구를 설립운영
- 의회산하의 특별위원회 형태
- 비정부기구 형태(민간 운영)
- 독립적인 인권기구 형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총회가 국가 인권기구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국가의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제안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다. 아동권리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확인, 그리고 활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권리모니터링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사건의 관찰, 특정 장소의 방문, 그리고 정보의 확보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당국과 토론 등을 할 수 있다(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1).

아동권리모니터링은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옹호활동에서부터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보호 모두를 망라한다.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은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교사, 사회사업가, 경찰 등의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협약 내용을 교육하는 권리 이해의 단계가 있다. 이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 권리 이행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의 단계보다 앞선 활동이지만 권리 증진 활동의 특성상 이를 아동권리모니터링과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국가의 옴부즈맨들은 개별사례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권리옹호활동을 한다. 권리 옹호활동은 권리를 성취하는 또 다른 중요한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아동권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슈를 다룬다(Human Rights Watch, 2002).

옹호활동(advocacy)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주로 관련법

의 개혁이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기관간 그리고 각 부처간 협조체계를 끌어내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리 옹호활동으로, 옹호활동은 문제의 원인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다. 이는 중앙이나 각 시, 도 정부가 정책을 발달시키고, 이의 실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주로 NGO등이 권리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다.

권리실행의 과정을 권리이해의 단계와 옹호활동의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등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완전히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Himes, 1998). 사실상 이들의 활동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범주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권리 협약 당사국 정부와 NGO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동권리 실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도 당사국의 아동권리 실행을 위한 모든 조치와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기구 설립 권고

주지하다시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가 부모나 국가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2013년 현재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차 보고서까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았다(표 1 참조, 황옥경,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1차 보고서에 대해서는 32개 항, 2003년 2차 권고문은 63개항, 2011년 3, 4차 권고문은 88개 항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차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을 촉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를 두거나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3, 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 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하였다.

표 1

아동권리모니터링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일반이행조치	1차 권고사항(1996)	2차 권고사항(2003)	3,4차 권고사항(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이행점검 : 점검메커니즘 설립을 추진하고 협약이행을 점검할 것을 권고 ·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를 두거나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 · 어린이 친화적인 방식으로 어린이가 제기하는 청원을 접수, 조사, 대처하는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알림으로써 국가인권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이행점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3.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현황

1) 국내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기구 및 활동 현황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NGO의 모니터링 활동을 법적근거, 조직구성, 활동내용, 연간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가) 중앙정부

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탁운영되다가 2012년 굿네이버스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운영 8년차가 되고 있지만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조직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성인 옴부즈퍼슨 51명과 아동옴부즈퍼슨 36명이 매월 정책 등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조직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현황	
명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근거법	없음
활동구조	위탁운영
아동인구	9,780,000명
조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인력 3명 - 센터장 1명 - 직원 2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 및 내용을 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통계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 사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 •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 감시 기능 • 법, 정책, 서비스 개선 촉구 기능 • 아동권리 및 협약에 대한 홍보 기능 • 옴부즈 퍼슨과 키즈를 구성해 아동권리침해사례에 관해 보고서를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와 관련단체에 보고해 사후조치를 취함
연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억7천만원(2012년) 인건비 56.4% 사업비 38.2% 운영비 5.4% (이 중 경상보조 1억)

<표 2>에 나타난 바대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법적기반 부재, 예산부족 등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충분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법적기반없이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모니터링의 주요요인인 조사활동 등의 제한이 있고, 관련 부처와의 협조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억7천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모니터링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구조는 옴부즈퍼슨의 월 활동 보고서에 의한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② 청소년희망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산하)

○ 근거법률

청소년희망센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권리 전담기구”이다. 권리의 주체자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3>에 청소년희망센터의 활동내용이 나타나 있다.

표 3 청소년 희망센터 활동내용

명 칭	청소년희망센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운영)
설립연도/사업 시작 시기	2011
근거법률	없음
조직인력	실장 1인, 팀장 1인, 연구보조원 1인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권리관련 기획과제 발굴 운영위원회 운영 · 기획과제 실태조사 및 토론회 ·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권리교육 · 청소년권리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청소년권리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청소년 권리 침해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 북 제작
예산	1억8천 5백

청소년 희망센터는 15명 내외의 ‘청소년희망목소리’단을 조직하여 청소년권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모임이다. 월 정례 모임을 통해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직접 계획 및 추진하면서 상호교류의 시간을 갖고, 주체적으로 청소년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권리모니터링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 희망센터의 활동 역시 법적근거 부재, 취약한 예산 등으로 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세미나 등의 개최 등의 제한된 형태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 업무 담당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담당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 희망센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활동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조직인력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167명, 인권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18명 · 본보조직 : - 운영지원과, <li style="padding-left: 20px;">-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인권상담센터 <li style="padding-left: 20px;">-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과, 홍보협력과 <li style="padding-left: 20px;">- 조 사 국: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처벌조사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인권정책 권고²⁾, 의견표명 · 조사구제³⁾ · 교육홍보⁴⁾ · 국내외협력
예산	230억(2012년기준)

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주요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 내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발표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개선 권고
- 군내 불온서적 지정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권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불심검문관련) 의견 표명

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주요인권정책 권고내용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 농민 전용철씨 사망 사건 → 과잉 진압 책임자 고발 등 권고
-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 →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
-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개선 권고
- 장애인 발산역 사망 사건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
- 입사지원서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차별적 항목 개선

<표 4>에 나타난 바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대상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조사와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인권정책 권고와 의견표명 사례와 조사구제 활동을 보면 아동·청소년권리와 관련한 사항은 극소수이다. 다만, 조사구제와 비교할 때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의 교육홍보 즉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인권위원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발달특성 및 사회구조상 일정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아동·청소년권리침해사태에 대해 개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조 하에서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 지방정부지원

몇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기반을 갖춘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사권을 부여하고 독립성확보도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①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권

-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연령 차별 개선 권고
 -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개선
 - 촛불집회 과잉 진압 개선 권고
 - 경찰관 고문 사건-> 관련 경찰관 고발 등
- 4)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주요 교육홍보사례
- 검·경 교도관 등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및 인권교육센터 설치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 초·중·고교용 등 각종 인권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선 1318>등 인권 영화 및 <별별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격월간 <인권> 발행, 뉴스레터(휴먼레터) 서비스
 - 교과서 모니터단 운영

리침해사례에 대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심의 및 구제조치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현재 1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표 5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명칭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립연도	2013	2013
근거법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 4장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45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 5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50조
조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임기 2년, 연임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 임기 1년, 연임가능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시장,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평가와 정책제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장, 시의회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어린이·청소년의 예산 참여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협력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p>2013년 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명 위촉/ 현재 19명 활동(1명 사퇴) ○ 인권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3개 소위원회 운영(기획소위원회, 교육홍보소위원회, 권리구제소위원회)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안) 검토 및 자문 ○ 학교부정소년지원법률안(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견 제안 ○ 전체위원회 회의(7회), 소위원회 회의(6회), 공청회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2명 위촉/ 현재 48명 활동(24명 해촉 및 사퇴) ○ 참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6개 분과위원회 운영(운영분과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회, 노동분과위원회, 소수자분과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자치분과위원회)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안) 검토 및 의견제안 ○ 오리엔테이션(1회), 전체위원회 회의(5회), 분과위원회 회의(8회), 인터넷회의(2회)
<p>연간 예산</p>	<p>1천만원 (시비100%)</p>	

② 경기도 학생 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의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2011년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이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 구제활동, 구제활동 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조례는 학생 인권옹호관의 독립성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표 6 경기도학생인권 옹호관

명 칭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설립연도/ 사업시작 시기	2011.5
근거법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9조
조직인력	권역별 1인의 옹호관, 1인의 교육행정공무원, 1인의 학생인권상담사, 도교육청 1인의 교육행정공무원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공표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예산	4억(권역별 예산 포함)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의 법적 권한이 있다.

(법적권한-학생인권조례 45조)

-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질의권, 현장조사권
- 조치 내용에 대한 공표권
- 조치 내용에 대한 교육감 통보권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시정권고 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권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옹호관의 권한이 있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조례 제35조 제2항)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출
- 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등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3권역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 따라 각 중심청의 인권옹호관과 상담

을 진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중심청	관할 지역
1권역	성남 교육지원청	성남, 수원, 용인, 안성, 평택, 광주하남, 여주, 양평, 이천
2권역	안산 교육지원청	안산, 안양과천, 화성오산, 군포의왕, 부천, 광명, 김포, 시흥
3권역	의정부 교육지원청	의정부,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③ 광주광역시 인권교육센터

광주광역시 인권교육센터의 구성과 활동은 <표 7>과 같다. 광주광역시 인권교육센터는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인권구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표 7 광주광역시 인권교육센터

명칭	광주광역시 인권교육센터	학생의회
설립연도/ 사업시작 시기	2011.5	2011.5
근거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 29조
조직인력	권역별 1인의 옹호관, 1인의 교육행정 공무원, 1인의 학생인권상담사, 도교육청 1인의 교육행정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급 학교 학생회장으로 하며, 당 연직 학생의원 수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생의원으로 선발 ·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함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 민주, 인권, 평화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다양한 대상별 프로그램의 개발 · 광주학생인권조례 현장 안착 및 지원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생과 교사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노동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의견 반영 · 학생의회 적극적 참여, 인권증진노력 · 개인의견뿐 아니라 학교 학생들의 집단적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수렴해야 하는 의무
예산		

④ 공공부문에서 아동·청소년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참여기구는 법적기반이 마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법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제 도	운영기관	관련법	활동내용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11 공포한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초등학생 22명, 중학생 212명, 고등학생 24명, 대안학교 학생 5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 ○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정책제안 제출, 예산참여과정에 여론수렴 및 시에 전달 기능
· 학생의회	광주시	광주학생인권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급 학교 학생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학생의원 수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 ○ 학생들의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회 적극적 참여, 인권증진노력 ○ 의견수렴
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이내 이중 20명 내에서 교육감 추천 ○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다음의 의견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청소년특별회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시범회의를 거쳐 매년 개최 ○ 16개 시·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하여 정책과제 발굴, 실천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며 매년 11월에 건의문 채택 및 정책에 반영 ○ 지자체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관련 시설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 담당

출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표 9 법적 근거없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제 도	운영기관	활동내용
대한민국 아동총회	한국아동단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지역총회를 거쳐 매년 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15명 내외의 총회 의장단 구성 ○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및 정부에 전달, 웹진 발행, 캠페인 활동 ○ 2012년까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였음.
청소년희망 목소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청소년희망센터 개설 ○ 청소년 희망목소리단은 16~18세 청소년들의 신청에 의해 15명 내외 구성 ○ 권리실태에 대한 주제 발굴, 논의 및 개선책 제안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옴부즈키즈 선발, 현재 옴부즈키즈 동아리 7개 조직(60명) ○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관련이슈 선정, 토론, 정책제언 및 캠페인 활동

출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

(2) 민간 NGO 단체

①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활동

월드비전의 아동권리모니터링활동은 각 지역 사업장의 아동권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옹호활동 및 정책개선 제안 등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주제와 사안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구성 및 운영방식도 지역사정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명칭	아동권리위원회 (각 지역사업장)
설립연도/사업 시작 시기	2003
근거법률	월드비전 자체 운영규정
조직인력	본부 : 3명 각 사업장 : 총 15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위원회 전국 12개 지역에 200여명이 적극적으로 활동 · 아동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 스스로의 자존감, 타인 존중감,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방식 등 권리인식 증진 · 지역사회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표명 등을 통하여 아동권리가 반영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도 및 정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총회를 통하여 지역별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아동 권리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정책제안. · 문화/인식변화
예산	연간 5억 5천만원

② 세이브더 칠드런

세이브더 칠드런의 경우 유엔에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이를 각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양육시설, 이용시설 학교 등에 파견하는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표 11

세이브더칠드런

명칭	
설립연도/사업 시작 시기	
근거법률	세이브더칠드런 자체 운영규정
조직인력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방지 캠페인 - 폭력과 학대 방지 옹호활동 · 아동권리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 2010유엔에 제출 - 유엔인권상황 정기검토과정에 아동단체 연대 보고서 참여 · 아동권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브더칠드런의 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양육시설/이용시설 등을 방문교육 ·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과정 참여 · 국제개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 살리기 Hi5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다른 국제개발 NGO와 연대 활동 · 영세이버(Young Saver)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이버'는 대학(원)생들이 1년간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자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예산	

(3) 국내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기구 활동의 한계

① 공공부문 모니터링 활동의 문제점

공공부문 모니터링 활동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적근거가 없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제한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센터의 분리운영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법적 연령구분과 정책대상자로서 상당부분 중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희망센터가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호연계 혹은 협력 방안 등도 없다. 연계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기관의 존속 이유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절우려로 관련부처간 국가 및 지역단체간 관계를 설정 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독립성 위협이다. 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은 아동권리 옹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권리 침해사태에 대한 보호 및 국가아동정책에 대한 조정과 감시 활동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관 위탁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재정을 해당부처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경우 어떠한 법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옹호관에게 법적권한을 상당부분 부여하고 있으나 완전한 독립을 재원의 종속성, 그리고 경기도 지방의회에 대한 직접보고 체계를 갖지 못하는 보고체계와 옹호관이 교육감의 임명을 받는 등 임명체계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아동권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아동권리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부터 사후 개입까지 가능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에 의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민간위탁이 갖는 위협이다. 먼저, 아동관련 민간기관은 아동권리 옹호활동 뿐만 아니라 본래 국가아동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요구 받는 민간단체가 국가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아동모니터링 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해 왔다. 향후에도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국가수준의 통계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아동정책을 제안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은 국가통계와 자료 등을 민간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정보공개 등의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민간단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NGO 보고서를 제

출할 수 있는 기관이다(황옥경, 2012).

여섯째,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일년 예산은 1억7천여만원 청소년 희망센터는 1억8천여만원이다. 이는 위탁기관 출연 재원을 포함한 액수이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운영비는 턱없이 낮다.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인력의 채용과 확보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서울의 경우도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어린이청소년권리추진위원회 예산이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일곱째,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연계의 제한이다.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모니터링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모니터링 활동에 비해 정책연계 효과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 법적근거없이 모니터링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독립성, 조사권 등의 부여, 그리고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이다.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긴급사안에 대한 신속한 개입의 제한이다.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이 법적기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긴급한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사례에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② 민간 NGO 모니터링 활동의 한계

주로 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NGO 활동의 특징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정책보완 및 개발을 제안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현안을 개선해 나가는 경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구 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발달시켜 궁극적으로 자기존중과 역량감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민간 NGO의 아동·청소년 권리 담당 직원이 1~2명 등에 불과하여 사실상 업무과다 및 활동의 우수성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지역 관련 기관과의 낮은 연계수준이다. 지역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장과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는 수준에 지역간 차이가 있다.

셋째, 예산의 부족이다. 한정된 예산은 담당직원이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제한한다.

넷째,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침의 부재이다. NGO의 특성상 각 민간기관의 인적, 물적자원의 특성이 반영된 모니터링 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행과 평가 등과 관련한 매뉴얼이 공급되어 모니터링의 체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담당자가 교체되면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활동 역량의 차이가 빚어지고 지속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의 제시는 중요하다.

다섯째,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교육의 부재이다.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을 위해 담당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교육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관련한 분야 종사자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보수교육이나 직무연수 형태로 꾸준히 제공받고 있다. NGO 종사자는 자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교육시수와 교과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그 내용과 운영방식이 상당히 상이하다.

여섯째 모니터링 활동의 선택과 집중의 부족이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 모니터링 활동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러나 NGO 모니터링은 교육, 홍보, 캠페인, 아동·청소년 권리참여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NGO가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에 투입하는 자원에 비해 활동의 내용이 다양하다. NGO는 모니터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형태의 운영방식이다.

2) 주요국의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주요국가의 아동권리 옴부즈맨 혹은 아동권리커미셔너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적근거하에 독립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표 12>에 나타난 대부분의 국가 중 일본 카와니시시와 아일랜드는 아동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아동권리커미셔너나 노르웨이, 스웨덴의 옴부즈퍼슨은 조사권을 직접

가지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아동권리커미셔너나 옴부즈퍼슨은 법과 정책의 개발을 촉구하는 정책모니터링과 아동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하는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 활동에서 아동에 관한 정보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스웨덴처럼 통보조치 등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다.

표 12 주요국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혹은 아동권리커미셔너 조직 현황

구분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일본 (카와니시市)	스웨덴	노르웨이
명칭	아동 커미셔너	아동 옴부즈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옴부즈맨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근거법	아동법 (Children Act)	아동옴부즈맨법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조례	아동옴부즈맨법	없음
활동구조	독립기구	독립기구	독립기구	독립기구	독립기구
아동인구	11,800,000명 (잉글랜드)	600,000명	26,000명 (카와니시市)	2,040,000명	명
조직인력	○ 총 인력 26명 - 장관급 커미셔너 1명 - 그 외 25명	○ 총 인력 16명 - 옴부즈맨 1인 - 직원 15명	○ 총 인력 7명 - 옴부즈맨 3명 - 조사심사관 4명	○ 총 인력 21명 - 옴부즈맨 1명 - 직원 약 20명	○ 총 인력 11명 - 옴부즈맨 1명 - 직원 10명
활동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도모 - 각 영역별로 협약 홍보 - 영국연방 커미셔너 및 기관 공동 권고사항이행 위한 조치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 -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 아동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법과 정책의 개발유도 ○ 아동권리에 관한 자료수집, 출판(정부 중심으로 아동권리자료 출판 장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도모 및 권리 침해조사 활동 - 정부의 아동관련 법 신설시 어드바이스 - 아동 관련 기관들의 활동 독려 - 아동권리홍보 및 이행 점검	○ 유엔동권리협약 홍보 및 아동권리존중, 보장을 목적 - 아동정책을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검증하는 제3자 기관 - 아동 관련 시책, 아동권리 현황을 점검 - 권리침해조사활동 - 교육, 개발 활동 등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아동, 청소년의 이익을 책임지는 것을 목적 - 개별사례에 직접 개입하진 않으나 필요시 통보조치 할 의무가 있음 -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될 때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개입	○ 아동관련 정책, 입법 및 제도 수립과정에서 옹호활동 ○ 아동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 접근권한 부여 ○ 아동문제와 요구 등 대변의 역할 ○ 정보개종 및 문서를 통해 아동문제 이슈화

구분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일본 (카와니시市)	스웨덴	노르웨이
연간 예산	○ 3백만파운드 (약 54억) - 모니터링 기구 운영비 43% - 직원 인건비 47 % - 프로젝트 운영 비용 10%	○ 2백십만파운드 (약 38억원) - 직원 인건비 44% - 사무실 임대비 16% - 모니터링 기구 운영비 13% - 리서치 외부의뢰 4% -조사권 사용시 제3 자 전문가 비용지 불 14.3% -세미나 및 출간 8%	○ 2,792만엔 (약 3억5천만원) - 인건비 80% - 운영비 10% - 그 외 홍보비 등 10%	○ 170만파운드 (약 30억7천만원)	

출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를 기초로 재 구성함

노르웨이는 아동옴부즈맨 활동으로 장기입원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성인교도소에 수감할수 있는 아동연령의 상한 조정, 모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모든 지방정부에게 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을 모니터링할 책임을 부여,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입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스웨덴은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입법을 단행하였고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이 언제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Aliens Act and Social Services Act를 마련하였다.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환경정비, 아동안전 강화 등을 단행하였고 지방정부들이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아동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정부와 의회내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아동포르노그래피금지 법안을 마련하였다.

잉글랜드 아동권리커미셔너는 아동법 2004(Children Act 2004)에 근거하며 2003년에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였다. 영국이 아동권리커미셔너를 설립하는데는 1997년 걸벤키안재단(the Gulbenkian Foundation, <http://www.gulbenkian.org.uk/mainf.htm>)의 아동커미셔너의 임명제안, 동년 아동권리커미셔너의 설립에 대해 표집대상자의 85%, 그리고 15-24세 표집대상자의 97%가 아동권리커미셔너의 설립을 지지한다는 영국 NSPCC의 조사결과 발표(NSPCC,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http://www.nspcc.org.uk/html/home/newsandcampaigns/ChildrenCommissioner>

England.htm), 1998년 건강위원회(the Health Select Committee, 1998) 역시 보호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아동커미셔너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결론 등의 사회각계의 노력이 있었다. 1999년과 2000년에 잉글랜드 아동커미셔너 설립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2000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커미셔너(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의 임명은 아동커미셔너의 독립적 기구의 탄생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NSPCC,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이와 같은 사회각계의 일련의 활동은 2001년에 웨일즈 아동커미셔너를, 2003년에 아동·청소년 노던아일랜드 커미셔너를, 2004년 2월에는 스코틀랜드 아동커미셔너를, 그리고 2004년에 잉글랜드 아동커미셔너의 임명으로 이어졌다(이재연 외 2004).

아동커미셔너의 중요한 관심영역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건강, 유해와 유기로부터 아동의 보호, 교육과 훈련, 아동의 사회로의 기여, 아동의 사회와 경제적 복지이다. 아동커미셔너는 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정보 및 서류를 획득할 수도 있으나, 커미셔너 자신이 법정에서 해당 아동을 위하여 진술할 수 없고, 보호시설의 아동을 접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노던아일랜드 아동커미셔너는 잉글랜드 아동커미셔너가 가지지 못한 위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아동커미셔너는 매해 회계연도 말에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고, 아동의 상황에 대하여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 제출해야 한다. 잉글랜드 아동커미셔너는 웨일즈, 노던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아동커미셔너들과 협력한다.

4.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역할과 권한

앞서 공적부문과 민간 NGO의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 활동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이하 ENOC)이 2010년과 2008년에 발표한 The Role and Mandate of Children's Ombudspersons in Europe: Safeguarding and Promoting Children's Rights and Ensuring Children's Views are taken seriously과 INFORMATION AND TRAINING PACK에서 제시된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의 기구의 역할과 권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활동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의 목표

ENOC(2009)은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예측 20쪽)

- 유엔CRC의 완전한 이해
-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동권리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아동권리가 가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
-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정책, 그리고 서비스 실행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변화를 촉발
- 정부가 행하는 모든 수준의 업무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표명
- 재정 등의 자원을 아동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
- 아동의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 마련
- 정부와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촉구
- 아동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구축하도록 촉구
- 아동의 인권 향유와 인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출판 하고(하거나)정부와 일반대중이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촉구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 조사와 연구 수행
- 모든 형태의 사법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접근성 및 보호형태 등에 대한 평가
- 아동에 대한 법집행절차에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고

2) NGO의 모니터링 활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NGO가 독립적으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NGO단체가 서로 연대활동하고 있다.

어떤 국가는 NGO가 옴부즈맨으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옴부즈웍(ombuswork)”이라고 한다. 이는 포괄적 의미에서 정부와 함께하는 NGO의 아동권리 옹호활동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핀란드는 NGO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NGO에 의해서 아동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이 NGO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National Council for Child는 옴부즈퍼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NGO의 옴부즈활동은 인권 옹호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NGO는 그 기구의 성격상 의사표명이 자유로우며 행동의 제약이 없이 융통성이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나 정부간 조직이 하지 못하고, 할 의지가 없는 사안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리원칙”은 NGO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관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3) 옴부즈퍼슨의 조사활동에 대한 시각

: ‘최종 리포트’와 ‘신속성’

일반적으로 옴부즈퍼슨은 개인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아주 어린아동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유럽 대다수 국가는 개인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어떤 국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아동이 사법절차에 직면하게 되면 아동들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 교육, 돌봄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옴부즈 기구가 공식적인 “최종 리포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 사무국은 행정권한을 갖고 아동의 모든 삶의 측면에 내재되어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옴부즈 기구가 반드시 조사권을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옴부즈 기구가 조사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없이 옴부즈 기구는 불가피하게 아동으로부터 혹은 관련자로부터 어떤 충고와 요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에 적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독립된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기구 설립에 대한 저항

- 불필요한 관료체계
- 정부 관련 부처가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 아동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직접서비스에 대해 재정을 할당·사용해야 할 것
-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구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NGO가 아동권리 이행을 더 잘 할 것
- 인권기구를 이미 설립하고 있는데 아동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한가?
- 아동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한다면, 노인, 장애, 그리고 여성을 위한 기구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 아동은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의 주체는 아님
-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잘 양육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만일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면 이 기구는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것이어야 함.

5)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기구의 설립과 운영

(1) 아동과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센터의 통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권리 소위원회의 설치

먼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한국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권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권리모니터링은 독립성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관련부처 등의 협조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옴부즈퍼슨 혹은 커미셔너를 임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요건은 옴부즈기구의 독립성 확보와도 연계된다.

- 임명주체
- 임명요건(국적, 직업, 자격 등)
- 임명기간(연임여부 등, 너무 단기간 임명은 안됨)
- 누가 임명권자인가(의회인가? 그에 준하는 기관인가?)
- 옴부즈퍼슨에게 직원을 임명할 권리부여

(2)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배치와 충분한 예산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 형태의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협약가입국이기에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거한 운영규칙/기준 수립하고 사무국에 운영권한을 부여
-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보호, 옴부즈기구는 정부가 아닌 의회에 보고의 책무, NGO 등의 단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운영 재원확보
- 옴부즈 기구 자체 목표 수립 ; 정부나 다른 기관들은 운영과정에 어떠한 간섭을 해서도 안됨
- 어느 정도의 법적 권한
 - 조사권
 - : 예; 수감조치, 보고서를 열람할 권한
 - 초기단계의 법적 행동, 법적 절차에서의 지원
 - 일반시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회에 대한 보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정 등에서 정부에 대한 의견 개진, 권고의견 표명
 - 가능하다면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의 최고위 관계자 면담 권한
 -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와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 학교나 아동관련 기관 등을 통한 아동과 아동집단에 대한 접촉권한.

5. 나가며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기구 설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관심있는 연구자 및 NGO의 촉구로 시작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차원의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민간NGO는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매뉴얼 등의 지원과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모니터링 활동 효과의 극대화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ENOC 등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 기구의 설립에 정부는 소극적이다. 이는 아동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국가 자산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취약한 결과로 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예처럼 각 민간기관과 연구자 등이 연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와 민간NGO는 아동이 정치적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명료화하고, 정부행정과정에서 아동이 언제나 고려되고, 가족, 학교, 기관,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수준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며, 아동을 권리증진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단순히 관심과 정책의 대상자로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뿐만아니라 미디어에서 아동을 소극적이거나 ‘무엇인가 부족한’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묘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아동에 대한 사법과정은 재화와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아동이 숭배자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기구 설립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관련기관이 총력을 기울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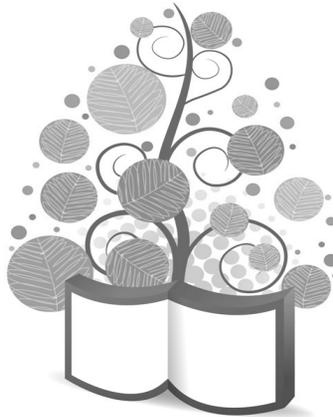
【 참고 문헌 】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내부자료
- 황옥경 (2007). 아동권리 모니터링 이행: 움부즈기구. 이재연·안동현·황옥경 (편.), **아동과 권리** (pp.247-274). 서울: 창지사.
- 황옥경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인권정책 포럼 세미나 자료집**.
- 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2010). The Role and Mandate of Children's Ombudspersons in Europe: Safeguarding and Promoting Children's Rights and Ensuring Children's Views are taken seriously.
- 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2008). INFORMATION AND TRAINING PAC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1).

Ⅱ 제 2 부 Ⅱ 아동 · 청소년 권리 신장 과제

발 표 5

어린이 ·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



이 용 교

광주대학교 교수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

1. 서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기획한 학술행사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운동은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인권 관련 NGO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시교육청 교육감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인권 관련 NGO와 협력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청소년·인권 관련 NGO와 협력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였고 시교육감이 바뀌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듯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졌기에 이 글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서 2000년부터 추진한 “어린이·청소년 친화 마을(CFC: Child and Youth Friendly Communities)”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제안한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Growing Up in Cities)”와 연계되어 있다(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 2013). 이 글에서는 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

성북구는 2010년 7월에 취임한 김영배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성북구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에 인권 개념이 확장되어 도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도록 인권도시를 추구하였다. 즉,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 일자리의 양과 질의 저하 및 차이 발생,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위기와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정책 방향이 변화됨을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구제하는 시민적 권리 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의 권리, 교육, 복지, 육아, 주거 등 사회경제적 권리, 문화, 환경, 보행, 안전 등 생활의 권리 등 인권의 개념이 “기본적 생활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부동산 중심의 도시 개발의 시대에서 사람의 시대로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권력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보통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성북구청, <http://www.seongbuk.go.kr/sb/bokji/inkuan/sogae/sogae03.jsp>).

성북구는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2011년 9월에 감사담당관 내 인권전담 T/F팀을 신설하고, 2012년 1월 감사담당관 내 인권팀을 신설하여,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2011년 11월 14일 외부전문가(교수, 변호사) 및 시민사회운동가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북구 인권조례 초안 마련 등 논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인권도시 성북 추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2012년 4월과 5월에는 제1기 성북구 주민인권학교를 개최하였다. ‘성북구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 19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정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람 중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제도화 등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추진하여야 함(제4조)
- 나. 구청장은 성북구 직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지원하여야 함(제10조)
- 다.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과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제11조)
- 라.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과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설치(제16조)
- 마. 구청장은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과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등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제24조 및 제26조)

이 조례를 통해서 성북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처음 자치구 주요 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2012년 7월 30일에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인 이동접근성, 안전성, 친환경성, 주민참여 보장 등 인권적 요소를 현장 검증하여 개선 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권고하였다. 2012년 9월 3일에는 분야별인권정책수립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각 분야별 인권정책 제안 61건을 접수하여, 관련단체, 주민 80여명이 참여, 10개 모둠으로 나눠 토론 진행, 각 정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하여 이후 인권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에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하였고, 2012년 12월 10일과 11일에 제64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때 성북 주민인권선언 추진단 발족식, 어린이 권리지킴이학교 인증식, 제1회 인권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의

로 구성되는데, 2013년 현재 위원장은 박경신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부위원장은 민숙희 대한성공회성북나눔의 집 원장이다.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현재 위원은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은영(다솔지역 아동센터 센터장), 김정아(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김한민(우이초등학교 교사), 노향기(전 언론인), 목소영(성북구 구의원), 박현숙(서울시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배미영(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대표), 배정학(동네목수 총무),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윤이순(성북구 구의원), 장혜영(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연구위원), 정정훈(법률사무소사람 변호사), 최종환(성북구청 감사담당관), 홍미리(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팀장), 홍선희(2012. 10. 서울 문화의밤 ‘프로그래머’) 등이다.

인권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명);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6명), 성북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인권 시책 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4명), 성북구 주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5명), 당연직 위원(1명, 인권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성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육, 건강, 놀이기반, 복지, 안전, 돌봄, 교육 등 일곱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자기주도학습센터, 대학생 멘토링,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생태문화프로그램으로는 성북생태체험관, 성북 숲 유치원, 자연체험교실, 기후변화교실, 천문우주교실, 역사문화탐방 등이 있다. 어린이 참여광장으로는 성북아리랑동요제, 어린이친구 성북 페스티벌,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이 있다.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의 상징적인 행사인 ‘어린이친구 성북 페스티벌’은 어린이날(5월 5일)에 성북구청 앞 성북천 바람마당에서 열리는데, 성북구 어린이 및 학부모,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 행사는 아리랑 축제 연계 및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스마일 성북, 1000명의 얼굴들’, 어린이 사회자 선발 및 행사진행, 어린이 구정참여단의 어린이권리선언 선포, 구청장배 어린이 창작 경연대회(무용, 댄스, 난타, 오케스트라, 중창, 기악연주 등), 성북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사물놀이 및 방과후 돌봄센터 밴드 연주, 친환경 농산물 시식 및 모종 나눔 행사, 어린이 친화도시 홍보대사 위촉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5월에 구성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의장, 서기, 사무국장, 위원장 및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개 분야(교육·복지·인권·문화)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의회는 관내 초등학교생 34명으로 구성되고,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교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역할은 의회 의사 진행과정 직접 체험(입법과정,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와 법령의 중요성 등 인식 증진), 어린이·청소년 관련 예산 심의·반영(주민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해당안건 심의 후 본예산 편성에 반영), 민주시민으로서 리더십 및 자질함양(어린이·청소년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문화 체험기회 제공) 등이다. 이날 발표된 ‘어린이권리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권리선언문¹⁾

우리들은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동네에서 건강한 지구촌시민으로 자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 1) 충분히 쉬고 마음껏 뛰놀고 싶어요.
 - 친구들과 어울리고 쉴 시간이 더 필요해요.
 - 우리도 게임에만 매달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 2)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라고 싶어요.
 - 부모님의 관심과 대화가 더 필요해요.
 - 학교폭력과 왕따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요.
 - 도움을 받을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우리들도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래요.

1) ‘어린이권리선언문’은 어린이 구정참여단이 아동권리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권리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유니세프에서 검토후 ‘제1회 어린이친구 성북 페스티벌’에서 선포되었다.

- 3)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 놀이터, 학교, 골목길 안전을 지켜주세요.
 -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 우리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어요.
- 4)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어요.
 -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급식을 만들어 주세요.
 - 불량식품을 팔지 마세요. 우리도 사먹지 않을 거예요.
- 5)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고 싶어요.
 - 학교와 구청홈페이지나 소식지에도 어린이의 의견을 담아주세요.
 -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래요.
- 6)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 장애우나 다문화가정 친구들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피부색과 외모, 장애를 이유로 친구들을 놀리지 않을 거예요.
 - 어린이권리,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을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받아야 해요.

3.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

대한민국에서 여성 친화도시나 가족 친화도시 만들기는 많지만,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를 시도하는 시·도와 시·군·구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매우 독특하다.

강북구의회는 2012년 5월 18일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6월 22일에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어린이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4조)
- 나.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어린이를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행 편의, 어린이

안전성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함(제6조 및 제7조)

그러나 강북구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강북구가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지,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다.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에서 ‘강북구+어린이+친화’로 검색하면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는 기사는 있으나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사가 없을 것으로 볼 때,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한편, 강북구 관련 기사 중에는 강북노인회관,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강북드림스타트센터에 이어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개관되어 강북구 복지인프라가 한층 더 견고해졌다는 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복지는 노인복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아시아 경제, 2013.11.7.).

4.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광주광역시 청소년단체·시설·기관과 활동가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13년 7월 9일에 “어린이·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민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라는 취지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협의회’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추진협의회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정희곤 의원, 문상필 의원, 강은미 의원,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및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청소년쉼터, 청소년 문화의집,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교조광주지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등 32개 기관 등 발기인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매일일보, 2013.7.10.).

제 / 안 / 서

우리 모두의 꿈,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협의회”를 제안합니다.

1.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와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그들의 필요와 견해가 도시행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CFC)’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는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역량이 있으며, 살만한 도시로서, CFC의 아홉 가지 원칙과 절차와 방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는 ‘도시화 과정은 청소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시민이 좋은 장소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청소년은 생각하는가?’, ‘청소년이 시민사회에 공헌하는 건설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사회는 돕고 있는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시민들과 도시 관리들에게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도시 이슈들을 교육하는 데 주력합니다.
4. 어린이·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민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과도한 노동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5. ‘시민과 함께 시 전체가 가와사키에 뿌리를 내리자’는 구호를 내걸고 2년 동안 200회 이상의 회의와 어린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한 ‘가와사키 시 아동권리조례’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 조례의 27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휴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고, 자유롭게 놀고 활동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처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는 거처에 대한 사고방식의 보급, 그리고 거처의 확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거리를 떠돌고, 사회적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밤늦도록 학교와 학원에 묶여 있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종교기관과 복지기관, 봉사 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드는 그 설레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 안>

- 내용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 모임
-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9일(화), 17:00,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2층)
- 제안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YMCA,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흥사단,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청소년i-net,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광주,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참여대상 : 어린이친화도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
- 문의 : 이인숙

■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2012.12.24.(금) 세계인권선언 제64주년 기념 인권교육토론회에서 “광주공동체,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발제
- 2013.3.27.(수) 광주교육책임네트워크 사전협의회에서 광주교육희망선언 참여 15개 기관이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사업”과 “창의 인문교육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함.
- 2013.5.17.(금)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세션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광주에서의 모색” 발제
- 2013.5.30.(목) 2013 광주광역시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청소년·교육분과에서 “광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제

■ 앞으로 이런 일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의 구체화를 위한 “꿈의 공원” 조성

2013년 9월 18일에는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창립 총회를 하고, 상임대표로 광주YMCA 안평환 사무총장을 상임대표로 뽑고, 공동대표로 광주대 이용교 교수, 한국어린이재단 김은영 광주지부장, 그리고 광주빛고을고 양정원 학생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는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이며,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사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별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 등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광주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협의회는 조례 제정과 함께 일본 가와사키시의 ‘꿈의공원’과 같은 것을 광주에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꿈의공원’은 18세 이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활동 거점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곳이다. ‘꿈의공원’ 내에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학교폭력이나 가정문제, 진로 등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뉴시스, 2013.9.19.)

광주광역시의회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선포식’을 2013년 9월 30일 오후 5시에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가 주관하였다. 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로 만들기를 위해 민과 관(시의회, 시청, 시교육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개회식 사회는 주관단체인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김성훈 실행위원장이 맡고, 인사말은 청소년대표와 시의회 이춘문 의원이 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조례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강은미

시의원의 사회로 이용교 광주대 교수, 하정호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팀장, 김재황 교사가 각각 발제하고, 정희곤 시의원, 이정남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시교육청 김성영 정책기획관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 민관이 한 목소리로 찬성했고, 조례의 내용 중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생의회와 별로 두는 것이 좋을지, 기존 학생의회에 학교밖 청소년 대표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포함하여 세부 내용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토론회를 마친 후에는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 선포식’을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행사로 개최하였다.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광주선언’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어른과 똑같이 희노애락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넘치는 에너지로 친구들과 벗하여 뛰놀며 세상을 경험하고 창조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싶어 한다. 전 세계가 인정하듯이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자는 옛 이야기와 생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를 행복하게 즐기고, 배움과 성장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미래의 삶도 즐기며 창조할 수 있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 등의 세계적 기구들이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간 특별한 자식 사랑을 자랑해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찰과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역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어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유네스코와 유니세프가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에 함께 하고, 지역 사회 내부의 건강한 성찰과 실천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광주를 전국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도시,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경험하며 인격과 실력이 성장하는 도시, 교통사고와 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도시 곳곳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를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린이 청소년이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친화도시를 계획하고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추진협의회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가려 한다.

하나, 어린이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꿈의 공원을 조성하자!

하나,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를 법과 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조례를 제정하자!

하나, 시민사회와 광주광역시, 시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민관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하자!

2013년 9월 30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참여자 일동

5. 맺음말

앞선 내용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성북구 인권 기본조례’를 만들고, 한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증진도 다루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혹은 가족 친화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를 거의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북구는 독보적이다. 이 조례는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어린이를 고려하여 어린이 보행 편의, 어린이 안전성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강북구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지만 광주광역시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업의 인구 범위에서 성북구는 전체 주민의 인권증진에 있고, 강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에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조례의 내용만 보면 강북구가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에 집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성북구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성북구는 감사담당관 내 인권팀을 두고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비해, 강북구는 별도의 전담팀이 없고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매년 1회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 활동성은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비교하여 낮을 듯하다. 광주광역시도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두도록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상의 학생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 지를 논의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를 보면, 성북구는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지만 강북구는 활동 상황이 구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소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추진활동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볼 때,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민관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교육청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지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인권 관련 NGO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인권신장을 우선 순위로 두고, 관련 부서를 독립적으로 두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조례의 제정과정을 볼 때 자치단체장, 교육청 교육감(혹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시의원(혹은 구의원)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는 교육, 문화, 복지, 교통·통신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에 청소년·인권 관련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할 때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북구청 <http://www.gangbuk.go.kr>

광주광역시청 <http://www.gwangju.go.kr>

김영지 (2012).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란 무엇인가: 원칙과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 인권교육토론회 자료집: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김재황(2013).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매일일보 (2013.7.10.).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광주를 위한 발기인 대회. 매일일보 웹사이트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1657>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뉴스시스 (2013.9.19.). 광주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자. 뉴스시스 웹사이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9_0012371534&cID=10201&pID=10200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성북구청 <http://www.seongbuk.go.kr>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아시아경제 (2013.11.7.). 강북구, 탄탄한 복지인프라 잇달아 구축. 아시아경제 웹사이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0615090494765>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이용교 (2012). **한국 청소년복지론**. 파주: 정민사.

이용교 (2013).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와 과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승수 (2012). 조례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의 가능성.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 인권교육토론회 자료집: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하정호 (2013).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의 필요성과 비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2012-07-19 조례 제91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성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성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행정 전반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 5 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성북구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권증진 정책

제 6 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② 구청장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4.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 증진 방안
 5. 인권지표 개발 및 시행
 6.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6조의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공청회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9 조(인권지표의 개발·시행)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성북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 ② 구청장은 성북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제11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성북구 소속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가. 성북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성북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그 밖에 구청장,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8. 성북구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9. 인권의 보장·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0. 인권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인권센터 시민위원) ① 구청장은 인권 정책의 수립·시행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 시민위원은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주민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3.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5. 인권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6. 인권 교육 등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7.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8.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원체계 강화)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백서 발간) 구청장은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성북구 인권백서”를 2년 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권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장·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2.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추진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제26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4. 주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5.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6.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과 평가
9.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10.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및 재적 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대신 관심과 참여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명
3. 성북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인권 시책 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4. 성북구 주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2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구청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제23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확정 전
3.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권고)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등) ①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구청장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인권센터의 업무 대행 등) 제11조에 따른 인권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인권팀이 인권센터의 업무를 대행하고, 인권팀장을 인권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 4 조(위원회 설치 시기) 제17조에 따른 위원회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6.22 조례 제 873호

(일부개정) 2013.09.27 조례 제93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의 아동 중, 특히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3.9.27>
2. “어린이 친화도시”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도시 발전 지역을 의미한다.

제 3 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사업)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시설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7.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8. 어린이 건강증진

제 6 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7 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 8 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
3. 주민대표
4.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린이 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2. 6. 22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초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종합적으로 보장되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다.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 라.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 그 외 어린이·청소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학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제1호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란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 5 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의 모든 행정에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장의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의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종합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어린이·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호자는 가정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격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제 2 장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시책 및 추진 전략
4. 연차별 추진 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시의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또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의회, 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

제 9 조(조성의 원칙)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어린이·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조성의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균형 잡힌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누구나 건강한 도시”
2. 어린이·청소년의 생명과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예방·보호 및 치유하는 “모두가 안전한 도시”
3. 어린이·청소년이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하는 “배움을 누리는 도시”
4. 어린이·청소년이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와 합법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놀이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더불어 활동하는 도시”
5. 어린이·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 참여하는 도시”
6.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확장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지속 가능한 도시”

제11조(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①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관할 시설 및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폭력 없는 문화 조성) ① 시설·학교의 장 및 직원,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관할 시설 및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 및 일체의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 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상담하고 구제·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청소년친화적 자치법규) ①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일관되게 보호·증진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가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청소년영향평가) ① 제20조에 따른 협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삶의 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어린이·청소년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다른 협의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어린이·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과 교육감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 이동 편의
2.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6조(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①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활동 및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만이 자유롭고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책 반영) ① 시장과 교육감은 투자 심사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18조(어린이·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세계적인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 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2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제21조(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①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어린이·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교육청·시민사회·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고 공동 실천하는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시민교육, 홍보 등
2.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지역은 물론 지구 차원의 어린이·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자치단체·시민사회·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로서 거버넌스 구축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파트너쉽 형성 및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어린이·청소년영향평가에 관한 요구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22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공동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와 교육청의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기업체 임직원, 지역주민 등 어린이·청소년 및 도시공간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협의회는 3인의 공동협의회장을 두며, 회장은 실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분야별 대표성이 중복되지 아니하게 하고, 회장 중 1인의 상임회장을 두어 회무를 관장토록 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에 의한다.

제23조(회장단 및 위원의 임기) 회장단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6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상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28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두며, 그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무 및 예산 회계에 대한 사항

2. 총회,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각종 조직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따른 실무적·재정적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시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청소년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9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제32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 및 사업감사 각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제37조(어린이·청소년의회) ① 어린이·청소년이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을 경험하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평가
2.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증진 및 사회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3. 시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5.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38조(구성) 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정수는 시의회에 준하여 정하되, 정수의 1배수에 한하여 대기의원을 선출한다.

③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9조(선거 및 당선) 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이·청소년은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산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선거는 시의원 선거구를 준용하여 어린이·청소년이 소속된 시설 및 학교, 또는 거주지별로 실시하되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는 대기 의원이 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소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 등록, 유권자 등록, 정견발표, 선거운동, 투표는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시행된다.

⑤ 선거인단은 지역구별로 유권자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구성된다.

⑥ 선거관리의 업무는 의회 사무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의회 구성 전에는 한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별도로 모집하여 실행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 그 명단을 즉시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당선자에게 당선증서를 발송한다.

제4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0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④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 ⑤ 의회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시청·교육청 또는 관련기관에 문서로 청원한다.
- ⑥ 의회는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1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정기회의 불참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42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 ③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⑤ 의원은 1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단 특정 위원회에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의장단이 조정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 ⑥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수당과 여비)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되, 자발적 참여의 취지에 맞지 않은 혜택은 부여하지 아니 한다.

제4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세부 사항은 국회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45조(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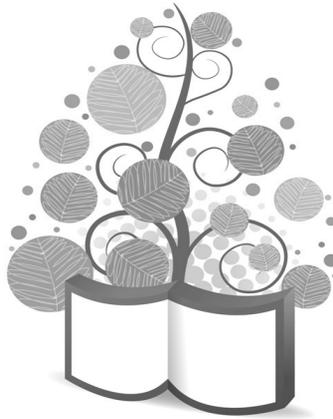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 2 부 Ⅱ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 과제

발 표 6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



김 철 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

1. 들어가는 말

유엔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고,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 요소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유엔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인 ‘파리 원칙’과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¹⁾’ 등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으로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991년 파리원칙 제3항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참여해야 하며,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엔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은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기능, 조사·구제 기능, 국내외 협력기능 등과 함께 4대 주요 기능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최초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²⁾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포함),

1) 1993년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과목을 채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모든 국가가 이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제33절). 각국 정부는 정부간 기구, 국가 인권기구, 비정부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인권 의식과 상호관용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82절)

2) 제26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엔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3항). 그리고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전담기관’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교육 종합전담기관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설립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은 커다란 성장을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성장하면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동향을 공무원분야, 초중등분야, 대학교분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국내동향과 연계된 유엔 등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동향도 함께 살펴 보면서 향후 인권교육의 발전과제를 간략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2. 인권교육의 국제 동향

1) 인권교육의 개념화 동향³⁾

UN이나 UNESCO의 인권교육 논의 초기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UN의 세계인권선언 제26조⁴⁾와 같이 교육의 입장에서 인권을 강조하였다. 이 조항은 인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인권을 강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인권교육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 ‘UNESCO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⁵⁾’(1974),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1978)⁶⁾, ‘학교에서 인권의 교수 학습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1985)⁷⁾, ‘오스트

-
-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4항). 이외에도 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6항).
- 3) 이종태·조난심·나병현·구정화·송현정·이은규 (2005),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pp.39-43을 참고하여 정리
 - 4)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종족 집단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친선을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
 - 5) “인권교육은 국제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관용과 존경 그리고 연대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 6)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
 - 7)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관용, 기회의 평등 그리고 갈등에 대하여 비폭력적으로 해결해

리아 비엔나의 세계인권회의(1993)⁸⁾등과 같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인권교육을 세계평화나 세계의 유대를 위한 하나의 역할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을 뿐 여전히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담겨 있지 않았다. 아직도 인권교육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와 같은 공동체적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 동서 냉전, 문화권의 차이로 인한 인권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분쟁 속에서의 지구 문화촌의 평화적 유지 등이 UN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인권교육이 수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인권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 관한 세계 행동계획(1993)’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인권 그 자체이며, 사회적 정의, 평화 및 발전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한 권리의 구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보호와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 교육과정은 국민과 시민사회 삶의 질의 향상을 고무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 침해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와 발전과 관용과 상호존경에 기초하여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수단이다. 이를 위한 행동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기존에 비하여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권교육의 수단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한 것은 1994년에 발표된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8) 이 선언에서는 ‘공동체 간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하위 목적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지역,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등의 공식 문건에서의 제시된 인권교육의 의미는 포괄적이며 개별 국가 나름의 해석적 여지를 남겨둔 채로 제시되어 그 개념 정의의 명확성이 낮았다. 이에 반하여 인권교육 실천가들의 논의는 매우 구체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서 아주 미세한 개념적 이해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여 인권교육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⁹⁾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권교육 개념은 유엔 인권교육 10년 후속조치로 2004년에 결의된 유엔의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 이 문건에서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②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③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④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 할 것, ⑤ 평화의 구축 및 유지 ⑥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 증진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9) 우리나라의 경우 인성교육, 도덕교육, 민주시민교육, 법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개별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도입된 현실에서 인접교육과 관계, 즉 유사성과 차별성 등 인권교육의 정체성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종태 외(2005)를 참고하시기 바람.

처음으로 교육 3요소를 도입하여 인권교육을 지식차원, 가치·신념·태도 차원, 행위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① 지식차원: 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제를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② 가치, 신념, 태도 차원 :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런 태도와 행위를 강화한다. ③ 행위차원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인권교육 개념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와 구성은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런 논의 연장에서 201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역, 2011).

또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은 리스트(Lister)라는 인권교육학자가 주장한 인권교육 요소를 수용하여 인권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개념적 측면),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운동적 측면),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과정적 측면) 등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
- ② 인권을 통한 교육 :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
- ③ 인권을 위한 교육 :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

이와 같이 인권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인권 증진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화 지향적 운동이며, 인권교육 역시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인권

존중적 환경과 방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논의와 인권교육 실천가들의 개념적 논의를 종합 분석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다.

2) 유엔 제1,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및 이행 권고

(1)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09): 초중등 인권교육 강조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초중등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고등포함)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각 국가별 이행전략으로 ① 인권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② 정책시행 ③ 학습환경개선 ④ 권리에 기반한 교수-학습과정과 도구 개발(기존 교재 점검과 수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재 제공 등) ⑤ 교직원 인권교육·훈련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학교 제도내 인권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법에 인권교육 포함’하거나 ‘인권교육에 대한 특별법’ 제정,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인권교육 도입은 그 학교가 인권 학습과 실천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내에서 교사는 학교내 인권교육 도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학교공동체 내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교육훈련의 기회는 교사들에게만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교장과 교감, 학교관리자, 장학사, 학교행정인력, 지방과 국가기관의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적절한 훈련 방법론, 즉 성인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훈련 방법(특히 학습자 중심의 접근, 가치와 행위에 대한 자각을 이끌 수 있는 동기, 자존감, 정서

적 발달을 다룸)과 인권교육 훈련을 위한 적절한 훈련 방법(참여적, 상호작용적, 협동적, 경험적, 실천에 기초한 방법,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학습한 기술을 실제상황 특히 교실상황에 적용 등) 등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제1차,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의 활동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을 포함하여 인권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장려한다.
- ②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다른 견해, 국적, 인종 혹은 사회적 기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을 반대하도록 육성한다.
- ③ 지속적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문제(빈곤, 물리적 갈등과 차별을 포함)를 분석하도록 격려한다. 그 분석은 인권 표준에 부합하는 해결로 이끈다.
- ④ 공동체와 개인들이 그들의 인권 요구를 적시하고 실현하도록 힘을 기른다.
- ⑤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맞는 인권 원칙을 세우고,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정도를 고려한다.
- ⑥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수준의 인권문서들과 인권 보호 기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기른다.
- ⑦ 인권에 관한 지식, 비판적 분석과 행동기술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수방법을 사용한다.
- ⑧ 참여, 인권향유, 인격의 전면적 발달을 고무하도록, 결핍과 공포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⑨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을 맺는다. 학습자가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그들이 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의 현실로 전환하여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2)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 고등교육 및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등

유엔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 이어, 지난 2010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제15차 인권이사회에서 결의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최종 채택하였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자문을 받아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국가인권기구, 학술연구기관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각 국가에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했던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달리,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법집행관·군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집단에 대한 인권훈련 증진 행동의 방향점과 기준, 국가이행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각 국가의 이행결과 보고서를 2015년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담고 있다.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강제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구체적인 국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인권교육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만, 유엔의 행동계획은 각 국가에게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각 국가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평가나 조정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PR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유엔은 2014년도에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제1,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연계성, 새로운 교육중점대상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

인권교육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유엔이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9월 인권교육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유엔교육훈

련선언 초안을 인권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¹⁰⁾에 요청했으며, 5명의 인권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정부간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하였다. 2011. 3. 17. 2011년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2011. 2. 28.~3. 25)에서 인권교육훈련선언 최종 채택(A/HRC/16/L.1)하였고 그해 유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 것이다.

인권교육훈련선언은 기본권으로서 인권교육 접근권,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수준의 조치사항,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선언은 전문과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권교육의 정의, 원칙과 함께 처음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할 권리(right to human right education)를 기본권으로서 강조하고 있다(제1조). 특히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교육(지식), 인권을 통한 교육(교수학습방법-기술), 인권을 위한 교육(자기존중·타인존중 태도) 이라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이 전 생애 평생교육으로서 인권교육 과 사회 각 영역 인권교육 실시(제3조)를 담고 있다.

인권교육을 보장하는 기본적 책임을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 등 강조(제7조~9조)하고 있다. 또한 NGO 등 민간영역의 인권교육 역할 강조 및 NGO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보장(제10조),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책무(제11조), 국제 및 지역인권기구의 인권교육 역할 부여(제13조) 및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 부여(제14조)하고 있다.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제3조에서 인권교육을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인권교육 및 훈련은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적용된다면 학문의 자유를 고려하여 유치원, 초·중·고등 등의 모든 교육과정과 공교육 또는 사교육, 공식·비공식 혹은 비정규 과정이든 모든 형태의 교육과 훈련, 학습에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훈련자와 교사, 국가공무원의 훈련과 평생교육,

10) 유엔 인권이사회에 결의에 의해 인권소위원회에서 인권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로 변경된 인권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주제별 사안(thematic issues)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자문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해당 주제의 이행을 목표로 함. 인권이사회내의 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함. 인권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 인권교육훈련선언이외에도 식량권, 실종자, 장애인, 여성, 한센인 등 소수집단의 인권, 국제질서 등 7개 주제별 조사·연구를 위임함.

대중교육, 공공정보와 인식활동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의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규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①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보장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것
- ②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다원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성원으로 서 개인의 발달을 진작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발전시킬 것
- ③ 효과적인 인권 실현의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발전시킬 것
- ④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의 접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 ⑤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고정관념, 집단적 혐오증을 부추기는 유해한 태도, 편견과 싸워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킴에 기여할 것

3. 인권교육의 국내동향

1) 공무원 등 인권교육 제도화 동향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은 ① 교육훈련기관의 각 과정에 정규 인권과목개설, ② 교육훈련기관에 정규 인권과정개설, ③인권교육 관련지침 제·개정, 인권교육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제도화의 단계는 과목개설, 과정개설, 교육지침 제·개정, 인권교육 의무화 하는 개별법령 제·개정 순으로 발전하였다.

인권교육의 제도화 동향 중 가장 뚜렷한 현상은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인권교육 의무조항을 포함하거나,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이다.

(1) 행정규칙 등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동향

공무원영역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실시가 포함되면서 중앙 행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인권특강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행정공무원 인권교육은 2006년 시작되어 2007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2주 이상)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서 삭제되었다가 2011년부터 다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의거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특강 수준으로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도 2006년도부터 인권교육훈령제정 이전까지는 육·해·공군 장병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장병기본권’이라는 과목을 국방부 통제과목¹¹⁾으로 개설하였다.

경찰, 군대 등에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인권침해 차별행위 예방차원에서 위원회 진정사건이 가장 많은 교정·경찰 등 법 집행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군대, 경찰, 검찰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교육 훈련 등 7개 행정규칙¹²⁾을 통해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군대,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 집행을 통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인권침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행정규칙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행정규칙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

행정규칙(소관)	교육대상	주요내용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양성 및 보수교육을 받는 모든 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소수자의 올바른 이해(성군기 위반 예방교육) ·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포함

11) 통제과목이란 국방부가 각 군에 대하여 교육시행을 지정한 교육과목을 말한다..

12) 국방부 ‘군인권교육훈령’ 이외에도 부대관리훈령, 군수사절차상인권보호에관한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등이 있다.

행정규칙(소관)	교육대상	주요내용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국방부)	상담과 수사업무(검찰관, 검찰수사관,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 등) 종사자	○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훈령(국방부)	전군	○ 교육시간 · 일일교육 : 수시 · 주간교육: 30분 · 월간교육 : 30분 · 반기교육: 30분 ○ 교육내용 · 인권교육, 인권연수과정 · 지휘관은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이수 · 인권교관: 공통과정(연1회), 심화과정(연1회) · 군 의료업무, 수사업무, 교정업무, 상담업무 과정 운영(1박2일)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	인권감수성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전경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2시간 ○ 교육내용 : 정신교육(인권교육 포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경찰관	○ 인권교육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	경찰관	○ 인권교육

* 출처: 김철홍(2013).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 법률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동향

국내의 인권 동향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흐름이다. 요컨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이후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하여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청소년·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개별 법령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법이 ‘정신보건법’이다.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09.3.2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010.1.18. 시행). 법률에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 2 법률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

법률 (소관)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내용	시행일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설 의 설치·운영자 ,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08.3.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 	'12.6.8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청소년의 권리	'12.8.2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12.8.5
사회복지 사업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연 8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내용(보수교육)	'12.8.5

* 출처: 김철홍(2013).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3) 조례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동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을 하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흐름이 있다. 광주시(2009.11), 경상남도(2010.3), 전라북도(2010.7)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제정하면서 촉발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권교육의 지역화’로서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지자체 인권교육 제도화는 공무원교육훈련지침내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 반영(2006) ->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 ‘인권과목’ 개설(2008~2012) -> 인권과정 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 2008-2012) -> 인권조례 제정(광주, 전북 등)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10-2012)단계를 거치고 있다.

2012년 2월 기준에 의하면 제정된 인권조례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 24개 등 32개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24개 지자체에서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은 광주, 서울성북구 등이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 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대상에게 년1회, 또는 2회 교육을, 몇 시간으로 하면서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에서 정한 교육대상, 즉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등의 종사자의 인원은 몇 명인지, 이들의 업무특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 주요대상 및 실시회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권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 주요대상 및 실시회수 현황(2012. 2. 기준)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광 역	기 초	
회 수	1회 이상 (24개)	전북, 충남, 울산, 대전(4개)	고성, 고양, 광명, 김포, 목포, 문경, 부여, 완도, 울산북구, 울산동구, 원주, 진주(2시간이상),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대구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 서울관악구(20개)
	2회 이상(2개)	광주	서울성북구
	미정(3개)	부산	부산해운대구, 부산중구(2개)
대 상	소속공무원 및 직원 (30개)	광주,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대전(8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해운대구, 부산북구, 부산중구, 부여, 서울성북구, 완도, 울산동구,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대구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 서울관악구(22개)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전북, 부산, 서울(3개)	진주
	지도 감독(출자, 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17개)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5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울관악구(16개)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9개)	광주, 전북, 부산, 서울(4개)	부산해운대구, 서울성북구, 울산북구, 울산동구, 진주(5개)
	인권관련기관 구성원	전북	부산북구

* 출처: 김철홍(2013).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자체는 공무원 등 지자체 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 4>와 같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25개 지자체(광역7개, 기초18개)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권장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민간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권장을 해야 할지, 권장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업장과 민간단체의 다른 특성을 고려한 권장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4 인권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 활동 사항

구 분	자 치 단 체	
	광 역	기 초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시행의 권장(25개)	광주,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대전(7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여, 서울성북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대구 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지도감독 법인 단체), 서울관악구(18개)
교재개발 (21개)	부산, 전남, 서울, 울산(4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서울 성북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울관악구(17개)
강사양성·지원 (21개)	부산, 전남, 서울, 울산(4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서울 성북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울관악구(17개)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21개)	광주, 부산, 전남, 울산(4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서울 성북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울관악구(17개)
기타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19개)	부산, 전남, 울산 (3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 울관악구(16개)
특별 규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홍보 사항 부산교육감과 협의(부산) - 연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의뢰 (부산) - 사업장에서 인권교육시 필요물품 및 강사지원, 교육 필요예산 지원 (부산 해운대구, 부산북구) 	

* 출처: 김철홍(2013).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둘째, 21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17개)가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과 인권적 상황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으로 보인다. 강사 양성 지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과 예산의 중복 투자되는 것을 예방하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21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17개)가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 실시를 관주도가 아니라 지역내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 함께 하겠다는 구상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기타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지자체는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홍보 사항 부산교육감과 협의, 연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의뢰’(부산) 등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부산북구는 ‘사업장에서 인권교육 시 필요물품 및 강사지원, 교육 필요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2)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동향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2002년부터 ‘교사인권의식조사연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분석 연구’ 등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부터 본격화 되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과서의 인권침해·차별행위적 내용을 수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유·초·중·고등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를 하여 교육부와 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도입을 협의하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2005년 유엔이 인권교육10개년 후속조치로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채택하여 1차시기(2005-2007)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도입을 권고하면서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번역하여 교육정책담당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유엔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도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2009년부터 연차 적용을 목표로 현행 제7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인권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개정 시안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인권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교육과정 총론, 도덕과, 실과의 개정 시안에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 ‘인권의 가치’를 포함할 것, 도덕과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의 나의 탄생’이란 표현을 미혼모나 한부모 자녀 등을 감안해 ‘존귀한 나의 탄생’으로 표현하고, 실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예로서 ‘인권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할 것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덕과 및 실과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와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해 교육정책에 인권교육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결과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인권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인권교육이 35개의 범교과적 학습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인권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각 교과 중 도덕과의 경우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인권을 비롯하여 정보윤리, 생명윤리 등이 강조되어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 들어있고 사회과의 경우에도 인권 단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타과목에서도 인권과 연결된 내용이 강화되었다.

도덕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 평화와 인류애’(중등 3학년) 등이 반영되어 생명존중, 인권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편견극복 및 폭력예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과 과목에는 초등 6학년 ‘우리나라 민주정치’내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인권보호와 헌법’(중학교 2학년), ‘인권’(고등학교 1학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어 인권의 기본개념과 인권의 발달과정, 생활주변 인권 문제 등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서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영어과와 국어과에서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의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된 초중교육과정에서도 창의재량활동 교과로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고, 2011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 20%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권 내용이나 요소를 다룰 수 있는 단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도덕과는 초등에서 ‘인권’ 독립 단원 신설과 중학교에서 ‘인권’ 독립 단원이 유지되었다. 사회과는 중학교에서 ‘인권보장과 법’ 독립단원 유지 등 2007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교과가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으로의 변경됨에 따라 고등학교 사회(10학년)에 개설된 인권단원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고등 사

회 선택 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에 인권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권교육10개년 후속조치로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 즉 초·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되었다. 초·중등 학생기는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아직 학교가 입시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인권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은 학교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대한 대응과 개정‘교과서 안 인권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및 교사 대상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운영하여 인권침해적 사례 등 문제적 내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정사례 및 다양한 콘텐츠 등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들의 인권교육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사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개설을 추진하였다. 매년 인권강좌 개설현황을 조사 및 요청과 교육연수기획담당자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교육부의 ‘교원양성 연수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각 과정에서 인권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등에 인권강좌가 개설되는 등 교사대상 인권강좌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및 교사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초·중등학교 및 교원연수기관에 인권교육이 확산되었다.

3) 대학교 인권교육 동향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인권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역할이 본적이고 본질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은 우리사회 경찰, 검찰, 학교,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예비법조인, 예비교사, 예비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고 있

다. 특히 법, 경찰, 교육, 사회복지 등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전문가들은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우리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통해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직전(pre services) 단계에서부터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002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법조인 양성기관인 법과대학내 국제인권법 등 인권과목을 도입하기 위해 대학과목 개설현황을 조사하면서 인권과목 개설을 요청하였다. 초기에는 법대 중심으로 초기 법대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등 인권과목 개설(2002)되다가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인권과목이 개설 확대되었다. 또한 11개 대학의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운영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서 공익 인권 특성화 주제로 로스쿨 설치(2007~2008, 영남대, 전남대 등)되었고 공익 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인권센터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대, 영남대, 한양대 등에서 인권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의 인권관련¹³⁾ 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인권과목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 2003년 43개 대학 63개 과목, 2004년 49대학 71개 대학, 2007년 58개 대학 113개 과목, 2010년 76개 대학 272개 과목, 2011년 76개 대학 129개 과목, 2012년 132개 대학 525개과목이 개설되었다. 2005년도, 2008년도 국·공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는 15개 대학 22개 과목, 17개 대학 50개 과목이었다.

대학당 평균 과목 개설 현황을 보면 2003년 1.47, 2004년 1.45, 2005년 1.46에서 2007년 1.95부터 2008년 2.94, 2010년 3.58, 2011년 1.70, 2012년 3.98 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1~4개과목이 개설되었다.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에서 인권과목 개설이 많았다. 2003년(1.47)과 비교하면 2013년 3.98로서 10년에 2배 이상 확대하였다.

13) 인권교과목은 교과목 전체가 인권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을 말하며, 인권관련교과목은 1주차라도 인권관련내용(권리, 차별, 관련, 조약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을 말한다. 예컨대 인권관련 교과목은 인권과목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차별현황, 관련 국제협약 등을 다룬 교과목으로 간주하였다. 인권관련교과목은 법·정치관련, 사회복지관련(장애, 아동, 여성, 노인, 사회복지법제 등), 국제·평화·NGO관련, 다문화관련, 여성(여성학, 현대사회와 여성 등)관련, 일반사회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5 연도별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현황

년도	조사대상	조사결과 개설현황				대학당 평균 과목개설수
		개 설 대학수	개설과목			
			계	교양	전공	
2003	국·공·사립	43	63	32	31	1.47
2004	국·공·사립	49	71	21	50	1.45
2005	국·공립	15	22	7	15	1.46
2007	국·공·사립	58	113	50	63	1.95
2008	국·공립	17	50	5	45	2.94
2010	국·공립	18	93	20	73	5.17
	사립	58	179	-	-	3.09
	계	76	272			3.58
2011	국·공립	18	34	-	-	1.89
	사립	58	95	-	-	1.64
	계	76	129	-	-	1.70
2012	국·공립	25	158	-	-	6.32
	사립	107	367	-	-	3.43
	계	132	525	-	-	3.98

인권과목은 여전히 법학 관련 과목(인권과 법, 인권법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과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과 정보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는 교과목 등이 새롭게 개설되는 추세에 있다.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은 대학(학부과정) 68%, 대학원(석·박사 과정) 31%, 평생교육원 1%의 비율로 개설되어, 학부과정에 더 많이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 성격별로 분류해본 바에 의하면, 교양필수 3%, 교양선택 17%, 전공필수 8%, 전공선택 71%로 선택교과가 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수’보다 ‘선택’비율이 높은 이유는 교양이나 필수 모두를 선택화 하는 대학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인권관련과목 중 교과목 전체가 인권내용을 주제로 하는 인권 교과목 현황을 보면 대학(학부과정) 57%, 대학원(석·박사 과정) 41%, 평생교육원 2%로서 대학원

개설비율에 있어 ‘인권 교과목’ 41% 비율이 ‘인권 관련 교과목’ 31%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되어있는 다수의 인권 교과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교과목도 인권관련교과목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교양필수 4%, 교양선택24%, 전공필수8%, 전공선택62%으로 ‘선택’이 86%로 압도적이었다. 2012년도 조사의 인권관련과목의 과목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대학의 인권관련 과목명 현황

영역	교과목 명
법·정치	인권의 이해, 인권법, 법과 인권, 국제인권법, 기본권론, 헌법, 노동법, 범죄와 인권, 이민법과 인권, 국제환경 인권법, 공익인권법, 피해자학, 범죄피해예방과 피해자보호, 현대의 시민생활과 법, 경찰과 인권
사회복지	아동청소년권리론, 청소년인권과 복지, 인권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빈곤아동의 새로운 미래, 여성복지론,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문제)론, 장애와 차별탐구,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
국제·평화·NGO	NOG, 인권과 국제정치, 인권과 평화, 국제개발협력의 사례와 전략, 전쟁과 평화, 환경
다문화 관련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사회의 소수자 이해
여성 관련	여성학, 여성과 법률, 법여성학, 현대사회와 여성
일반사회	현대사회와 (소수자) 인권, 북한사회론, 북한인권과 법, 북한인권연구, 인권사회학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타·일반	인권과 교육, 교육기본권론, 사서와 인권

4.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1) 인권교육의 성과

(1) 공무원 분야 인권교육 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기초연구”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달성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⁴⁾.

그동안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보면 첫째,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초기만 해도 국가·지자체 등에서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았고,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황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군대 및 경찰공무원 분야에서 인권교육 필요성이 더욱 제고되었고 이는 인권교육 제도화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이다.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보다 군대, 경찰, 법무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권관련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 개설 수 등 교육인원, 교육회수가 증대하였다.

셋째, 인권조례제정, 인권교육훈련 규정 제정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 경향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대, 경찰, 검찰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교육 훈련 등 7개 행정규칙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노숙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관련 개별 법령에서 인권교육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32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이나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 인권연수과정이나 인권과목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2)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성과

초·중등학교 분야에서도 그동안 인권교육 성과를 보면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거부시 하여 인권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권교육이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도입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결과 2005년도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에 의하면 인권교육 받은 경험이 10%이내였지만, 2011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교사 41.1%, 학생 69.1%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여 인권교육 받은 경험이 대폭 증가하였다. 즉 학교 인권교육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인권교

14) 나달숙(2011)에서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인권교육 필요성 및 관심 증대,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인권교육의 제도화 경향으로 보고 있다.

육에 필요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들이 개발 보급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기초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연수기관에서 인권교육 제도화와 인권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사¹⁵⁾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은 높지만, 아직도 인권교육 받은 경험이 낮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71.8%, 중학생 78.0%가 ‘자신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인권교육 받은 경험은 초등학생 46.0%, 중학생의 53.0%에 불과하다¹⁶⁾. 인권교육 실시시간 현황을 보면 주로 교과 수업시간 81.5%, 창의적 체험활동 24.1%, 조회나 종례시간 13.1% 순으로 인권교육의 대부분이 교과시간에 진행되나,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에 편중되어 있고 인권관련 단위 수업 시간에도 ‘진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15.5%나 되었다. 이런 현상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초등 9.3%, 중등 22.7%, 고등 22.2%)이며, 교원들은 학교인권교육 시행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입시로 인한 교육시간 부족’(44.7%)을 꼽았다.

둘째,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도역량 부족이다.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또는 사범대에서 인권 또는 인권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권교육 시행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으로 ‘교원의 관심과 역량 부족’(30.3%)을 언급하고 있다. ‘인권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교원은 89.9%이나, 교원임용 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은 41.1%에 불과하다.

셋째, 충실하지 못한 인권교육으로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문화이다. 교원들은 소속 학교의 인권친화성에 대해 80.4%가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인데, 초등교원 73.2%, 중학교 교원 83.5%, 고등학교 교원 83.4%, 전문계고교 교원 92.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가는’(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34.7%), ‘부모님과 상의’(24.7%),

15)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16)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수치는 2011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46.0%, 중학생 53.0%이나, 2011년 학교인권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69.1%가 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1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자료를 근거로 함

‘선생님과 상의’(18.3%) 순으로 응답. 이런 현황을 볼 때 학교 인권교육이 자신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존중이라는 인권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아직도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며 인접교육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쟁이 정치화되면서 초·중등 교원의 87.5%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된 바(정해숙·박성정·구정화·최윤정, 2011), 학교영역의 인권교육이 양적 확대는 가져왔으나 실질적 인권의식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성교육이 잘 되면 별도의 인권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52.5%에 달해 인권교육과 다른 인접교육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3) 대학교 인권교육 성과

대학교 인권교육의 성과에서도 공무원이나 초중등학교와 같이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확대와 이에 따른 양적 성장이라고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과목 개설 현황조사에 보듯이 2002년(위원회 설립 초기)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 인권과목이 실질적으로 2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학교가 인권 교과목 확대에 괄목할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확대는 대학정책적 측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등장을 통한 공익인권에 대한 관심, 사회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관심, 인권 이슈의 등장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위원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MOU 체결대학들(고려대, 이화여대, 영남대)이 다수의 교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¹⁷⁾되어 MOU 체결이 대학내 인권 관련 교과목 확대에 직접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온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조사’도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인권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17)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의 인권(관련)교과목 개설 현황을 보면 경상대 7(8), 고려대 15(24), 영남대 9(11), 이화여대 8(14), 인하대 2(3), 전남대 23(27), 전북대 15(19), 충남대 6(9), 충북대 6(13), 한양대(13(15) 등이다. ()는 인권관련과목을 말한다.

또한 대학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교과목의 등장이다. 인권이 법학의 전형적 영역이었다고 판단되어왔던 것에 반해, 사회학, 교육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 여성학, 다문화 등 다방면의 학문영역에서 접근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분야에서의 인권 관련 법률 제정, 인권 사안이나 쟁점 등이 등장하면서 각 대학별 특화된 교과목 개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된다.

2) 인권교육 발전과제

(1) 공통된 인권교육 발전과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제¹⁸⁾를 안고 있다. 첫째, 인권교육의 양적확대와 함께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는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1회성 인권특강이 많고 그것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인권교육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인권교육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인권교육이 형식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권교육 가이드’ 등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추진전략을 인권교육영역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권교육이 제도화된 영역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개론수준에서 각론화 하고 감수성단계를 넘어 행동화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규 영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일시적인 사회적·정책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관심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 매체를 통한 인권교육관련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환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에 비해 인권교육의 확산과 대중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부재하였다.

18)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를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 △인권교육방법상의 한계, △인권교육에 대한 실정법 근거 및 인권교육 평가체계 부재 등 인권교육의 제도적 한계, △공무원제도의 속성에 기인한 한계 등을 들고 있다(양천수, 2011).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 대상을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교육대상을 '인권옹호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이 인권 피해자적 관점에서 그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인권보호·향상의 대상으로 전제하면서 교화식교육이 되면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존중감을 침해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모든 인권교육 대상은 한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권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여 타자, 즉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인권존중의 책임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학문적 및 운동론적 차원의 담론 등 사회적 담론을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권교육의 방향성 및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의 목적, 가치, 내용, 방법론,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합의 틀의 형성을 통하여 인권교육 개념과 방향성을 둘러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차원의 담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인권에 종사하는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UCC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차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수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두는 인권교육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전문강사 양성·관리 등 인권교육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일회적 강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용에서 퇴직까지의 인권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입각하여 각 단계별 교육프로그램과 참여형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육 참가자와 소통하는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이 진행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대상별, 인권주제별 등에 따라 적용할 다양한 인권교육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교육이 제도화 되고 있지만 인권교육이 형식화되지 않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기관장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인권교육이 출렁거린다면 안정적인 인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으면 공무원 인권교육은 해당 기관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¹⁹⁾.

다섯째,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군대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등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공무원이나 모든 분야 인권교육을 아우르는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관련 상호교류와 정책조정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및 중앙 행정부처, 인권단체, 인권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인권조례에서 19개 지자체(광역 2, 기초 17개)가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등도 구성하여 전사회적 인권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인권교육 모니터링²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질적 담보가 어렵다. 인권교육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

19) 유엔이 2011. 12.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국가에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20)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의 인권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하고 다양한 인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 인권교육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초기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등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요하다. 이 기관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를 포함한 각종 교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정책행동계획(인권교육 NAP)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인권교육의 내용 및 비중이 많지 않고, 여러 인권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인권교육 내용이 상대적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인권교육 10년 계획(1994)수립’,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시행 등에서 별도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²¹⁾.

(2)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발전과제

초중등학교에서 나타난 인권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교육을 강화되기 위해서는 2012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에서 권고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인권 가치를 포함하는 교육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21) 필리핀은 필리핀의 인권교육을 국제사회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별도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추진하였음. 이외에도 200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튀니지, 말리, 세네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덴마크,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필리핀 등 18개국이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후략)...“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후략)...”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스템에 인권교육 실적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 인권 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의식이 생활 속에 실천되고 구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발달단계별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교과서 개발단계에서도 학생이 학교 생활속에서 인권상황을 연계시켜보는 실천 중심적 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덕과와 사회과를 제외하고는 인권관련 내용 요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교과목에 교과 특성을 고려한 인권관련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실과(기술·가정과)의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문제 체육과의 경우 건강권, 문화권, 성적자기결정권, 전문계교의 상업 및 경제 교과에서 기업경영, 노동, 환경, 소비 등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특히,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를 맞는 청소년기에 인권적 상황을 직면하게 됨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과목을 포함하여 선택 교과를 5개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교양 교과를 9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권」 선택과목으로 개설²²⁾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시 그리고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현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 향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원양성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교과 개설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

22)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선택교과는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의 4개 과목이며, 고등학교 교양 교과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의 8개 과목

인권과목 개설 현황조사결과에서도 사범대, 교육대 등에서 인권과목이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교원임용시험 평가항목·평가기준 등에 인권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서 실행하는 자격연수(유·초·중등 1급 정교원 자격연수, 원감·교감·교장 자격연수 등), 직무연수, 전문교육 연수 등에 인권 및 인권교육 내용을 전체 교육시간 중 적정한 인권교육 시간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감·교감·교장에 대한 자격연수 등에서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07년 12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의 책임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성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대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첫째, 교과목별, 교수자별 인권교육에 대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이 확대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법학분야의 인권 관련 교과목 비중이 높으며, 사회복지 및 여성학 분야는 담당 교수별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다. 사회복지 관련 교과에는 장애인복지론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권적 접근이 확산되는데 반해 노인복지론이나 아동복지론은 단순히 사회복지대상자로서의 이해가 보편적일 뿐 권리적 접근은 일반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성, 다문화 관련 교과에서는 대상자별 이해 등이 다뤄지고 있으나, 인권적 접근까지는 확장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법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원양성분야 등 특정분야에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확대 및 강화하는 개별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정·교직 및 사회복지분야 등과 인권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과나 대학에 인권교육 확산을 하기 위해 인권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격시험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운영을 확산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1개 MOU 체결대학이 인권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교

인권교육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교육, 사회복지, 국제관계 등에 강점을 가진 대학교를 중심으로 MOU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교재, 교수학습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제안 및 대학교 자체 발굴 인권주체에 대한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는 말

인권교육은 하나의 교과목(특강)으로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인권을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오직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직장분위기와 강사 중심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학생이라는 기존의 위계적 교수모형을 벗어나 강사와 학습자가 동등한 상호작용적 접근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가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의 업무현장지향성을 가지고 학습자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촉진자로서의 자기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답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하에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참여적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참가 학습자의 특수성에 초점²³⁾을 둔 실천적 접근원리 적용이 필요하다. 실천적 접근은 아는 것을 실제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자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실제 생활환경에서 학습자는 ‘무엇이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인가?’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칙내에서 자신의 업

23) UN 인권최고대표부에서는 직급과 기능에 따라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즉 상급자들에게는 인권친화적인 법집행의 전략과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하급자 교육에서는 실무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특수한 임무, 즉 범죄수사나 공공질서 유지, 혹은 대민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에 따라 교육의 초점을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두가지 요구 중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 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셋째, 행동과 태도의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인권감수성 자극 접근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등 국가·지자체 종사자 등 각 학습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인권 침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인권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기준이나 법규가 분명하지 않은 실무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의 문제는 학습자의 인권적 태도나 감수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 강순원 (2000). **평화, 인권, 교육**. 파주: 한울.
- 강순원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길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고상준 (2003). **경찰인권교육방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 · 설규주 · 송현정 (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 유엔제1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번역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역 (2010). 제2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 번역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역 (2011).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문 번역자료.
- 김철홍 (2006). **모더레이터와 강의기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철홍 (2011).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
- 김철홍 (2012). **군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 김철홍 (2013).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샵 자료집: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샵**, 120-142.
- 나달숙 (2011).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과제 지향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85-121.
- 문용린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개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양천수 (2011).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기초연구. **제13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방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이종태 · 조난심 · 나병현 · 구정화 · 송현정 · 이은규 (2005).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원오 · 김성기 · 장기성 (2006).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해숙 · 박성정 · 구정화 · 최윤정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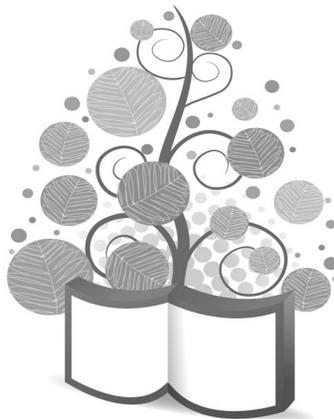
Ⅱ 제 2 부 Ⅱ 아동 · 청소년 권리 신장 과제

지정토론

토론 4.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토론 5.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토론 6.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적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 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과제」에 대한 토 론 문

김 형 옥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제도) 구축은 가능한가? 이전에 ‘한국적 상황’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한국적 상황’이란 각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된 종적전달체계, 그래서 좀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전달체계 간의 상호연계와 협력의 불충분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지방자치행정이 아동·청소년의 삶, 생애주기에서의 아동·청소년기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업무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만을 이야기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므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는지, 구축이 가능하다면 시스템 운영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구축도 통합으로 갈 것인지, 기존 정책 전달체계에서 개별화를 존중할 것인지, 어느 때 권리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주체가 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은 권리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종사자들은 모니터링의 결과를 환영할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도 생각하게 한다.

더 나아가 예전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구조와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권리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이러한 쟁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것이다. 이것에 대한 현황과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황옥경교수님의 발제라면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토론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별화에서 점진적인 통합화, 시스템 운영과정이 반드시 인권 친화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아동·청소년의 삶을 인권의 관점, 즉 아동·청소년도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권리 행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그들 삶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권리가 침해됨이 없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이러한 권리모니터링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기대가 컸던 적도 있었다. 비록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률의 제정은 없었다하더라도, 또한 이를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이 개편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과 권리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늘 모니터링은 법률에 기반한 상시적 기능 수행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의 하나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국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제문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이전과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국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관련 행정부처가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권리모니터링과 연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협약주무부처)에서 말하는 권리모니터링은 아동권리과가 업무를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민간위탁하면서 협약이행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결국 실질적 모니터링의 한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의 여부와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당사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권리행사의 주체로, 스스로의 삶을 가꾸면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도 더 많았으면 한다. 이러한 기회제공이 효율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보다 효과적인 발전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모니터링도 작금의 상황(자살, 학대, 빈곤 등)에서 본다면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각 추진주체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희망센터의 정부부처 외부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행정부처 조직 내에서 권한을 갖고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 모니터링의 결과를 해당 과에서 취사선택하고, 필요에 따른 업무분장은 행정편의주의이며, 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교육, 노동, 소년사법, 청소년 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추진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도 제도보안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각 부처가 자신들 고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고유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정책평가 시스템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체는 아동·청소년권리 홍보 및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처의 모니터링과는 구분되는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정부

부처의 모니터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기능의 통합보다는 구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3년 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중요한 규범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에서의 권리모니터링에도 관심을 갖고 장려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 단체가 아닐까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모니터링 활동,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지원이 법적근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토 론 문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몇 달 전 전북지역에서 “청소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안”을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관련하여 이 교수님의 글을 살폈다. 국내의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들 대부분을 동의하고 공감한다.

특히 서울의 ‘성북구 인권 기본조례’를 만들고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점,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어린이를 고려하여 어린이 보행 편의, 어린이 안전성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한 차이로는 성북구는 전체 주민의 인권증진에 있고, 강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에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성북구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북구의 위원회 구조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회의는 형식적 결과를 낼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현재 진행형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볼 만하다.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은 OECD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고 반대로 자살율은 최고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 역량은 저하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주요 4개국(미국, 일본, 중국) 중에 공부와 수면시간 등에 의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

한 문제의 원인을 입시환경 등 다양하게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 및 이웃관계는 중요하며 지역 성원들 간에 친밀한 상호인간관계에 따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살아간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소속감과 애착심 등의 심리적 유대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경기 및 광역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을 떠나도록 유인하는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는 요원한 과제이다. 주체로서 거주하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기 보다는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되며 자신의 삶과 괴리된 섬과 같은 공간이다(정건희, 2013).

이 내용을 기초로 부가하여 향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몇 가지 부연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다. 정책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환경에 청소년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성세대에게 청소년참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청소년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은 체계화해야 하며 지역의 모든 (녹색)환경의 공간적 지원과 함께 10대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10대 이후에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다. 10대가 끝나면 지역을 떠나는 게 자연스럽다. 지자체장들의 선거 때마다 공약 또한 20대의 지역 떠나기 정책을 남발해 왔다. 지역에서 온전히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가운데 지역의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을 마친 후 지역에서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전해 주는가? 서울이나 광역권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지 일상적 일자리에 매몰되지 않고 창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지역민들과의 소통하며 협동하여 삶을 살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진 창의적인 창업까지도 염두해 볼 일이다.

셋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거버넌스 등 지역공동체(마을)를 위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가의 아동청소년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있으나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다. 지속가능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주도면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친화적인 법 및 행정체계 구축이다. 앞에 성동구나 강북구 등의 조례 및 현재 광주에서 진행중인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조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차원의 ①청소년친화마을 관련 조례 등을 통한 법적 제도 마련과 ②청소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③서비스 제공 관련부서와 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서비스를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연결을 통한 청소년공간의 재구성이다. 각 관련기관단체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다. 교육, 활동, 복지, 상담을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 부처의 구분으로 같은 대상인 어린이·청소년을 만나는 전문 영역이 존재하지만 사업은 분절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다. 청소년대상의 전체 사업의 담당자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의 연결과 교육과 환경 제공을 통하여 지역의 친화마을에 청소년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간이 재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다.

【 참고 문헌 】

정건희 (2013).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제안. 전라북도,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토론회 자료집: 전북청소년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1-23.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인권교육 발전과제」에 대한 토 론 문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인권교육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의견

연구자가 제시한 것처럼 UN이나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담론과 다양한 행동 지침 등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인권 자체를 배우는 것이 인권”임을 알려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인권의 목록과 그에 담긴 의미 등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인권을 강조하는 것을 낭비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수준의 민주주의가 되면 인권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것처럼 인권은 ‘일용할 양식’으로서 어느 사회에서 어떤 상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요근래의 일입니다. 인권교육에서 강조하는 인권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서는 권력관계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받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실천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연구자의 발제 내용처럼 이러한 일이 근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매우 급격한 성장이고, 탁월한 발전입니다. 그런 점에

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2. 인권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

현재의 발전 정도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발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과 같은 교사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천은 일반 대학의 인권교육 실천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교과서에 들어 있는 인권 내용을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매우 좁은 의미의 인권교육으로서 기본권에 치우쳐 교수하는 측면도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학교 인권교육의 성과에서 [초, 중, 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언급하면서 교사의 41%가 학생의 69.1%가 인권교육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제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인권교육이 확장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답변은 학교 인권교육의 실행과 결과에서 모두 문제가 되는 응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에 지속적인 권고 등을 통해 교사 양성기관에서 인권교육 부분이 다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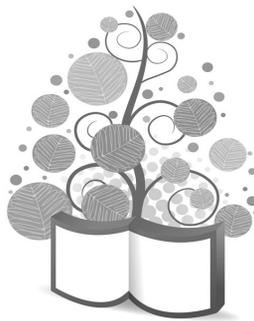
둘째, 대학 부분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그리고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경찰행정학과 등의 경우 인권 관련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과들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이들 대학이나 학과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집계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이들 대학의 교육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이들의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좀 더 확장하면 다양한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서도 단순히 파악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보다는 매년 인권교육 친화적인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을 선정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외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 활동을 통

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인권교육의 현황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통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의 경우 인권 과목을 어느 정도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 점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의 외연이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 록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자료



- 자료 1. 유럽 아동권리 옴부즈기구 네트워크의 독립적 아동 인권기구에 대한 기준
- 자료 2. 독립적, 법적 아동권리 모니터링·증진·보호 기구
- 자료 3. 유럽평의회 아동권리전략 (2012-2015)
- 자료 4.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참여에 관한 유럽평의회 권고문

부록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자료

자료 1.

유럽 아동권리 옴부즈기구 네트워크의 독립적 아동인권기구에 대한 기준¹⁾

▣ 소개 및 배경

2000년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제 4회 연례 회의에서 ENOC는 - 유럽 아동권리 옴부즈기구 네트워크 - 독립 아동인권기구들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기준의 초안은 ENOC 회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작업그룹(working group)에 의해 만들어진 후 의견을 위해 회람되었고 2001년 파리에서 열린 ENOC의 제 5회 연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ENOC는 아동의 인권을 모니터링, 증진, 보호하는 독립된 법적 기구의 개발은 국가인권 기구의 개발이라는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993년 세계 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비엔나 선언과 액션 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 기구의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 특히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한 자문 제공 역량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과 인권침해로부터의 구제, 인권 정보의 전파, 인권에 대한 교육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1993년 세계 인권회의는 “...국가 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권장했다.

ENOC 회원자격 기준

1999년 마드리에서 열린 제3회 연례회의에서 ENOC는 회원자격을 정하기로 한 가결정에 동의했다. 그 후 ENOC의 정관이 채택된 2006년, 다음 조항들은 정회원과 부회원의 자격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4조: 회원자격

ENOC는 정회원, 부회원 이렇게 두 종류의 회원을 둔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럽

1) ENOC(2001, 10). ENOC's Standards for Independent Children's Rights Institutions : pp. 1-5.

평의회 회원국에 속한 독립아동권리기구는 ENOC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동 기구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동 기구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기능은 법에 의해 주어진다.

이 기능과 관련해 동 기구는 스스로 아젠다를 설정할 능력에 법으로부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며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과 ENOC 기준(부록 1 참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핵심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동 기구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만 종사할 식별가능한 사람 혹은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옴부즈퍼슨, 위원(commissioner), 위원회 회원의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권한과 임기 갱신에 관한 조건도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기구는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거나 혹은 독립된 국가/지역 인권기구의 일부일 수 있다. 아동권리기구는 어떤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5조: 회원 가입 신청

회원 가입신청은 ENOC 사무국으로 한다. 신청은 정회원 가입신청에만 한정된다. 사무국이 신청한 기구가 제4조에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신청 기구가 적극적으로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보인다면, 신청기구는 부회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세계인권회의는 “아동권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전반적 활동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June 1993, UN General Assembly A/CONF. 157/23, paras. 21, 36 and 45 et seq). 아동권리현장에 대한 거의 전 세계적인 승인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현장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범지구적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권리현장의 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는 독립된 아동권리기구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ENOC는 모든 국가에서의 독립된 법적 아동권리기구의 설립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 ENOC는 「독립된 법적 아동권리기구」는 여전히 개발 중에 있는 개념이라는 점과 각 국가는 자국의 기존 기구들을 고려하고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국 정부 및 법적 체계에 맞는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ENOC는 독립된 아동인권기구가 독립된 조직(아동 옴부즈맨 Children's Ombudsman, 아동권리위원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Defenseur des Enfants, 등)으로서나, 혹은 인권위원회나 포괄적인 옴부즈맨의 한 부분으로서 설립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가 기구로 혹은 지방 기구로서도 설립될 수 있다. ENOC는 어떤 경우든 아동의 특별한 지위와 필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파리 원칙 The Paris Principles

1993년, UN 시스템 내에서의 일련의 워크숍과 세미나 후, UN총회는 일단의“국가 기구

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으로 알려져 있음.)을 승인했다.

파리 원칙은 국가 인권 기구에 인권을 증진, 보호할 역량을 부여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최대한의 폭넓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국가인권증진보호기구 국제조정위원회(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자격인증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주요 지역별로 한 기구로 구성되어 있음)를 설립했다. 자격인증위원회는 파리원칙 준수여부에 근거한 후보자 인증 설문지를 개발했다. 회원자격 신청을 검토할 때 자격인증위원회는 국가 기구의 권한(mandate), 구성의 복수형태(pluralism in composition), 관할범위(jurisdiction), 운영의 안정성, 독립성을 고려한다. ENOC도 때가 되면 유사한 과정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파리원칙을 그 근거로 포함하고 활용한다. 아동권리의 모니터링, 증진, 보호를 위해 설립된 모든 독립기구들은 파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구의 설계와 설립에 있어 각 국가는 아동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성인들만을 고려해 설계된 기구들이 아동을 효과적으로 섬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럽 아동권리 옴부즈기구 네트워크의 독립적 아동권리기구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은 지향적인 것이다; ENOC의 모든 회원들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NOC의 회원은 의회와 정부가 이 기준에 비추어 기존 기구들의 지위를 검토해야 하며 새 기구의 설계는 이 기준과 아동권리헌장(CRC)을 충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ENOC는 아동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증진, 보호하기 위해 인권기구는 반드시 파리원칙, 아동권리헌장, 유럽아동권리헌장(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충족해야 한다고 믿는다. 파리원칙의 원문은 아래에 재판되어 있다. 다음은 파리원칙의 주요 시사점들(implications)과 이 시사점들을 적절하다고 판단된 곳에서 구체적인 아동의 인권과 연계한 비공식적 요약문이다:

□ 역량과 책임 Competence and responsibilities

아동의 인권을 모니터링, 증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는 반드시:

- 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헌장에 기반해, 아동의 인권 모니터링, 증진, 보호와 관련해 최대한 폭넓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아동의 인권 증진 및 보호와 관련된 다음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자체적으로나 기타 당국의 요구에 의해 의견(opinions), 권고(recommendations), 제안(proposals), 보고(reports)를 제공하거나 이를 출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 인권보호를 지키거나 확장할 의도의 법적, 행정적 규정과 사법 조직에 관련된 규정. 독립 기구는 발효 중이거나 제안된 법률을 고려하고 필요시 새로운 법령의 채택이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독립기구가 착수하기로 결정한 아동 인권 침해
 - * 일반적 인권 보고서나 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보고서 준비
 - * 인권침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정부/의회 의 입장과 반응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정부/의회에 인권침해의 사실을 환기시킨다.
- 자국의 법률이 아동권리헌장과 자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동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인권제도(기관)(instruments)와 조화되도록 추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증진해야 한다;
- 위 국제인권제도(기관)의 자국 내 승인과 가입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헌장과 다른 관련 제도들 아래에서의 모니터링과 보고 절차에 독립적으로 기여한다;
- 유엔과 유엔 및 다른 기관, 아동권리를 증진, 보호할 역량이 있는 다른 국가들의 지역 및 국가 기구와 협력한다;
- 인권 교육과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집행을 원조한다;
- 인권에 관한 자료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 교육, 대중매체의 활용을 통해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저항하는 노력에 대한 자료를 출판한다.

독립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직원을 두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옴부즈피플(ombudspeople), 위원(commissioners), 위원회 회원의 임명 절차는 공식적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임기 및 갱신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NGO, 전문 기관, 대학, 의회, 정부 부서 등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독립기구의 조직과 임명 방식은 반드시 적합해야 한다.

□ 운영 방식 Methods of operation

독립기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체적으로 찾은 것이거나 정부에 의해 제출된 문제들을 자체 능력으로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구의 소관 안에 있는 상황들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필

요한 사람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접적으로나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자유롭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시 전 회원들이 소집되어 회의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작업그룹을 조직하고 그 기능을 돕기 위해 지역 혹은 지방 분과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해, 인권의 증진, 보호를 책임지는 다른 조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 공소 심리 및 고찰 Hearing and considering complaints

일부 기구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공소를 심리, 고찰할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그러한 기능을 받쳐줄 추가적 원칙들이 제안된다. 다른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기구:

- 중재를 통해, 혹은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혹은 필요시 비밀보장의 원칙 하에서, 중재를 통한 우호적 합의를 구할 수 있다;
- 공소인에게 그의 권리와 가능한 배상에 대해 알려주고 이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공소를 직접 심리하거나 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다른 당국에 공소를 전달할 수 있다;
- 공소가 제기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의 변화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아동인권기구 설계 Designing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children

ENOC는 아동인권기구의 설계와 개발은 파리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특별한 지위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따르는 특별한 어려움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아동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법률은 반드시 명백하게 아동권리현장의 집행을 증진해야 한다 - 이렇게 할 때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파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동인권기구가 자국 정부가 승인했거나 가입한 모든 관련 인권제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는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구체적 기능, 권한, 의무를 명시하는, 아동권리현장에 연계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권리현장의 제1조에서와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아동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의무; 아동, 아동 조직,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

직과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사회가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추구할 의무;

- 아동권리기구는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모든 형태의 개별적 의사소통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족, 학교, 기타 기관에 처해 있는 아동의 상황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조직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고려할 권한;
- 모든 형태의 대안 보호(alternative care) 및 아동 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있는 아동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아동인권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인권기구는 아동이 자문, 옹호활동(advocacy), 공소 절차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아동인권기구는 아동과 성인이 아동권리헌장의 원칙과 규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인권기구는 아동인권의 증진에만 전적으로 관여하는 식별 가능한 사람 혹은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그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아동 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 아동 권리위원(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혹은 아동권리위원회(Children's Rights Commission). 이러한 사람은 아동인권기구의 지위를 높이고 대중적, 정치적 명망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대외적 신인도가 높아 아동의 지위와 가시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인권기구는 학교, 아동 수용기관, 청소년 조직, 아동들이 활용하는 대중매체 등을 포함한 적절한 채널을 활용해 아동인권기구의 존재와 권한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아동인권기구는 아동의 인권을 증진, 보호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은 적합한 직원들을 두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임명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세우야 한다. 예를 들면, 임명에 대해 공적 광고를 하거나 아동, 아동 NGO, 정부 대표 등을 포함한 임명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아동과 아동의 대표들로부터 제기된 공소에 대한 반응

Responding to complaints from children and their representatives

아동인권기구가 그 권한에 아동의 공소(불평)에 대한 고찰 및 응대를 포함했다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특별한 어려움을 고려해야만 한다. 성인의 공소를 고려해 설계된 공소 절차는 아동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아동인권기구는:

- 매우 어린 아동, 장애 아동,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 기관에 수용된 아동들을 특별히 배려하면서 관할 구역에 있는 아동과 아동 대표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와

언어로 아동인권기구의 권한을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아동이 무료전화, 이메일, 지역 사무소 등을 통해 아동인권기구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아동에게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계 당국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아동과 다른 관련인에게 아동인권기구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전에 비밀보장 정관이 있음을 명백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공소 절차, 자문 및 옹호 시스템의 설계와 검토에 아동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자료 2.

독립적, 법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 증진 · 보호 기구²⁾

다음은 아동권리를 증진, 보호하고 그 실행을 모니터링 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법적 독립 기구들의 목록이다. 물론 아동권리보호활동을 벌이지만 여기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포함되지 않은 기구들이 많이 있다. 특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둔 가족과의 협력 하에 구제활동remedial action을 벌이는 튀니지의 아동보호대표단the Child Protection Delegates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 설립된 옴부즈맨 사무소들이 그 예이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아동옴부즈기구the Finnish Children's Ombudsman Office 혹은 이스라엘아동청소년옴부즈기구the Israeli Ombudsman for Children and Youth와 같이 NGO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형태의 기구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 호주

▮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1042 시드니 GPO Box 5218

전 화 : +61 2 9284 9600, 팩 스 : +61 2 9284 9611, 이메일 : hreoc@hreoc.gov.au

▮ 설립년도 : 1986

- **헌법적 기반** : 위원회는 인권 및 평등기회법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Act에 의해 1986년 호주의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보호할 폭넓은 권한을 가진 연방기구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헌장을 포함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여러 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권위원이 아동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를 갖고 있다.
- **권한과 활동** : 위원회의 기능에는 차별이나 아동권리에 위배되는 관행들에 대한 조사, 아동권리 준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아동권리가 관여되어 있는 법정 소송 개입, 연구, 권리 인식 제고, 아동권리헌장에 대한 전반적 준수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아동과 법적 절차, 시골과 외곽지역 학교 교육, 노숙 아동에 대한 국가 수준의 조사를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또한 나이에 따른 차별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아동 참여 모델을 촉진하고 있다.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즈, 타즈마니아에는 아동을 위한 위원들도 있다. 이들은 아동권리에 관한 보다 제한적인 임무를 갖고 있으며 주로 관련된 정부 부서의 아동 보호와 아동복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2) Unicef(2001). Independent institutions protecting children's rights. pp. 15-25

■ 오스트리아

아홉 곳의 Lander는 각각의 아동청소년옴부즈기구Ombudsman for Children and Youth를 두고 있다. 각각의 주소는 유럽아동옴부즈기구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Ombudsmen for Children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www.ombudsmen.org

■ 연방아동옴부즈기구 The Federal Children's Ombudsman

Kinder & Jugend, Anwaltschaft des Bundes,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Jugend und Familie, Franz-Josef-Kai 51, 1015 Wien, 오스트리아
전 화 : +43 1 53475223, 팩 스 : +43 1 5350322, 이메일: henriette.naber@bmu.gv.at

■ 설립년도 : 1989-1995

- **직원규모** : 각각의 사무소(9군데)에는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의 직원이 있으며 총 40명임.
- **헌법적 기반** : 모든 사무소는 1989년 청소년복지법the Youth Welfare Act 1989에 의해 설립되었다. 각 Lander는 고유한 법률과 조직, 자원, 책임, 기능을 개발해 왔다. 아홉 개의 사무소는 '옴부즈기구 컨퍼런스'를 구성해 연방국가 이슈들에 대응한다. 연방 수준의 아동옴부즈기구는 1991년 독립기구가 아닌 환경청소년가족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Youth and Family의 관료로 도입되었다.
- **권한과 활동** : 각 사무소는 개별 사례들을 접수하며 1998년에만 1만 건의 사례를 다루었다. 이 사례들 중 4백5건은 아동이 직접 사무소를 먼저 접촉한 사례들이다. 최근 활동에는 투표연령 낮추기 캠페인, 계간지 Kids and Teens 1만4천부 발행, 아동성학대 전시회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권리헌장의 원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도 실시했다.

■ 벨기에 (플라망어권)

■ 아동권리위원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Hertogstraat 67, 1000 브뤼셀, 벨기에
전 화 : +32 2 552 9800, 팩 스 : +32 2 552 9801,
이메일 : kindeerrechten@vlaamsparlement.be
웹사이트 : www.kindeerrechtencommissariaat.be

■ 설립년도 : 1997, 완전한 운영은 1999년 1월부터

■ 직원규모 : 6명

- **헌법적 기반** : 아동권리위원은 플랑드르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decree에 의해 설립되었다. 아동권리위원은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권한과 활동** : 아동권리위원은 아동권리헌장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생활환경을 분석, 평가, 보고한다. 아동권리위원은 아동권리, 필요, 이익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아동참여를 증진하며, 개별 불평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다. 최근 활동

으로는 아동학대에방 캠페인 후원이 있다. 아동권리현장의 증진은 학교, 기관, 정책 입안자들의 방문을 통해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두 참여 그룹들이 창설되었으며 이들의 관심 이슈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제공했다. 이혼 중재, 대중매체 불평 media complaints, 운동 경기에서의 연령 제한, 학교 참여 등에 관해 정부에 권고를 제공했다.

|(프랑스언어권)

General Delegate for the Rights of Children
Delegue general aux droits de l'enfant de la Communaute francaise de Belgique
Rue de L'Association 11, 1000 Bruxelles, 벨기에
전 화 : +322 223. 36.99, 팩 스 : +322 223. 36. 46, 이메일 : dgde@cfwb.be
웹사이트 : <http://www.internem.be/dgde>

■ 설립년도 : 1991

■ 직원규모 : 6명

- **헌법적 기반** : 1991년 의회가 공포한 법령은 벨기에 프랑스어권 행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할 임무를 띤 General Delegate(일반대표)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권한과 활동** : General Delegate는 불평을 접수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며, 행정부에 법률개혁을 제안하고,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준수를 모니터링할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활동에는 이혼절차에서 아동문제를 더 고려할 수 있도록 개혁안 제안, 아동에게 법정에서의 항소권 부여, 미성년자의 투옥 종식 등이 포함된다.

■ 볼리비아

■ Office of the Ombudsman(옴부즈기구)

Defensor del Pueblo, Calle heriberto Gutierrez No. 2374, P.O.Box: 791, La Paz, 볼리비아
전 화 : +591 443838, 팩 스 : +591 811 3538, 이메일 : delpueblo@defensor-bo.net

■ 설립년도 : 1998

- **헌법적 기반** : 볼리비아 헌법에 의해 설립.
- **권한과 활동** : 옴부즈기구의 사명은 헌법과 볼리비아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은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뉜다: 공공서비스와 정부 행정, 인권, 인권증진과 분석. 옴부즈기구와 유니세프의 기관협약으로 두 기관은 아동, 여성, 원주민의 권리 증진 사업에 협력하며 서로 지원한다.

▣ 캐나다

▣ 브리티시 콜럼비아

The Office of the Ombudsman
931 Fort St, Victoria BC, V8V 3K3, 캐나다
전 화 : +1 32 2 533 1211, 팩 스 : +1 32 2 534 1382

▣ 설립년도 : 1987

- **헌법적 기반** : 1987년 기존의 옴부즈맨은 아동청소년담당부옴부즈맨이란 직위를 설립했다. 하지만 1990년 아동 옹호를 전담하는 부옴부즈맨의 역할은 종식되었다. 지금은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 모두 아동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5명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팀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1995년에는 정부가 사회서비스공급과 관련해 아동을 옹호할 권한을 가진 아동·청소년·가족 옹호기구Child, Youth, and Family Advocate를 설립했다.
- **권한과 활동** : 아동청소년팀은 장애아동 서비스, 청소년 소득 보조, 학교와 학교이사회, 규제기관, 가족보호, 청소년 관계 사법 등의 이슈를 전담한다. 아동청소년팀은 옴부즈맨법the Ombudsman Act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제기된 불평이 유효한지substantiated 여부가 결정되고 그 이유가 서면으로 불평제기자에게 제출된다. 하지만 팀원은 조사 과정에서 당국과 중재를 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부옴부즈맨과 아동청소년팀은 아동권리를 아동, 정부당국, NGO와 함께 추구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옴부즈맨 사무소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가족옹호기구the Child and Family Advocate와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아동옹호기구Children's Advocates:**
아동옹호기구는 지역 법률을 통해 다섯 지역province에도 설립되었다 - 앨버타, 사스카추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각각의 세부적 권한은 다르지만 모두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옹호한다.

▣ 콜롬비아

▣ Defensoria para la Ninez, la Mujer y el Anciano (아동, 여성, 노인 보호를 위한 부속사무소)

Office of the People's Defender, Calle 55 N 10-32, Tercer Piso, Santafe de Bogota
콜롬비아, 전 화 : +57 69 15 077 (직통) 그리고 + 57 31 47 300 ext. 2323

▣ 설립년도 : 1991

- **헌법적 기반** : The Office of the People's Defender는 the People's Defender에 의해 임명되는 아동·여성·노인 보호 부속사무소Attached Office for the Defence of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를 포함한다. 정치헌법제44조Article 44 of the Political Constitution

에 따라 이 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이다.

- **권한과 활동** : 유니세프는 수년간 아동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전략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 the Office of the People's Defender와의 기관간 협약(Inter-Institutional Covenant)을 개발해 왔다. 그 결과 Bulletin Children and their Rights (La Ninez y sus Derechos) 6권이 발행되었다. 사무소는 아동권리현장 후속조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유니세프와 협력했다.

▣ 코스타리카

▮ Defensor de los Habitantes de la Republica

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ICE, 산호세, 코스타리카

전 화 : +506 296 2515, 팩 스 : +506 296 2512, 이메일 : defensor@sol.rasca.co.cr

▮ **설립년도** : 아동옹부즈맨은 1987년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3년 다양한 전문 옹부즈맨들이 새로운 국가독립옹부즈기구에 통합되었으며 여기에 아동 부서가 있다.

- **헌법적 기반** : 옹부즈맨 기능은 의회the Legislative Assembly의 부속기관인 공화국주민보호국the Office for the Defence of the Inhabitants of the Republic(Defensoria de los Habitantes de la Republica)에 의해 수행된다. 사무국의 제정법에서 사용된 “주민 “inhabitants에 대한 정의 때문에 사무국은 그 책임 중 하나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포함시킬 수 있다. 사무국에는 부서장이 관할하는 아동청소년권리전담부서가 있다. 하지만 활동에 관한 책임은 정무직인 사무국장Defender이 진다. 사무국장 직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 리스트에 먼저 등록해야 하며 여기서 세 명의 후보가 간추려진다.
- **권한과 활동** : 사무국의 의무에는 불평 조사, 공공기관에 영향을 주기 위한 권고를 통해 아동권리보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계 당국과의 중재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대부분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쏠린다. 사무국은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주관하고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아동, 교사, 변호사와 함께 아동의 창작품, 시, 노래 등을 활용해 헌법과 아동권리에 대한 자료를 개발했다.

▣ 덴마크

▮ National Council for Children국가아동협의회

Borneradet, Holmens Kanal 22, 1060 Copenhagen, 덴마크

전 화 : +45 33 92 4500, 팩 스 : +45 33 92 4699, 이메일 : brd@sm.dk

웹사이트 : www.boerneraadet.dk

▮ **설립년도** : 1994

▮ **직원규모** : 협의회 회원 8명 - 사회부장관Minister of Social Affairs 임명 3명, NGO 임명 5명

- **헌법적 기반** : 국가아동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Children는 1994년 사회부 내에 3년 간의 시험 기간을 위해 설립되었다. 평가 후 1996년에 협의회는 사회부 행정명령Order에 의해 영구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새로운 권한에 따라 국가아동협의회는 아동권리현장의 규정에 비추어 덴마크 아동이 살고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다.
- **권한 및 활동** : 협의회의 사업에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정책에 관여하는 것, 아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 아동권리현장 이행 여부 모니터링,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된다. 아동에게 전화 핫라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지역 모임도 주관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공론을 일으켜 지역사회가 빈약한 양육기술을 가진 부모를 둔 아동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학교에서의 왕따시 키기bullying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종식시킨 성공적 개혁에 기여하며, 무폭력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론을 증진해 왔다.

▣ 프랑스

▮ Ombudsman for Children 아동옴부즈맨

Defenseur des enfants, 35 Rue St Dominique, 75007 파리, 프랑스

전 화 : +33 01 42 755294, 팩 스 : +33 01 42 5296

▮ **설립년도** : 2000

▮ **직원규모** : 처음엔 8명이었으나 1년 내 20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헌법적 기반** : 아동옴부즈맨은 2000년 3월 6일 법률 제 2000-196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가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옴부즈맨의 임명 기간은 6년이며 재임은 불가하다.
- **권한 및 활동** : 옴부즈맨은 아동으로부터 불평을 접수하고 조사를 착수하며 보다 나은 아동권리의 존중을 위해 특정 행동을 권고할 수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에 매년 활동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 프랑스 아동옴부즈맨을 포함한 주요 인권관련 독립기구 네 개가 통합되어 2011년 ‘Defender of Rights(인권보호자)’가 발족됨.

▣ 과테말라

▮ Defensoria de los Derechos de la Niñez de la Procuratoria de los Derechos Humanos

13 Calle, 11-42 Zona 1, Ciudad de Guatemala, 과테말라

전 화 : +502 238 0344 / 232 1683, 팩 스 : +502 238 0344

▮ **설립년도** : 1990

▮ **직원규모** : 8명

- **헌법적 기반** : The Defensoria는 의회특별법에 따라 인권변호사무소the Office of the

Procurator for Human Rights 내에 설립된 특수부서이다. 인권변호사무소는 의회에 매년 보고하는 국가기구이지만 의회나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지는 않다.

- **권한 및 활동** : The Defensoria는 1980년대 말 인권, 특히 아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관심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과테말라 헌법과 아동권리헌장에 정의된 아동의 권리를 증진, 보호하는 것이다. The Defensoria는 개별 사례를 접수하고 보고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며,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국가의 법률이 아동권리헌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부모와 일반 대중에게 비공식적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침해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아동권리보호위원회Municipal Bo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를 창설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현재 과테말라 소도시 10% 정도에 설립되어 있다.

▣ 헝가리

▮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회인권위원회사무소

Országgyűlési Biztosok Hivatala, Tukory u.3, Budapest, H-1054, 헝가리

전 화 : +36 1 269 3500, 팩 스 : +36 1 269 3529, 이메일 : Polt@obh.hu

웹사이트 : www.obh.hu

▮ **설립년도** : 1995

▮ **직원규모** : 64명의 전문직과 38명의 관리직

- **헌법적 기반** : 의회인권위원회사무소 내에 아동위원이 있진 않지만 부위원이 소수의 전문직과 함께 아동 이슈를 담당한다. 위원과 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권한 및 활동** : 법률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동권리헌장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임무이다. 사무소는 아동과 직접적인 상담을 하고 전화 핫라인을 운영하며 아동과 지역사회 모임을 갖는다. 2000년도의 주된 활동에는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시설아동과 장애아동의 필요를 살피며, 학교폐쇄 이슈를 조사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 아이슬란드

▮ The Ombudsman for Icelandic Children아이슬란드아동옴부즈맨

Umbodsmannur Barna, Laugavegi 13, 101 Reykjavik, 아이슬란드

전 화 : +354 552 8999, 팩 스 : +354 552 8966, 이메일 : ub@barn.is

웹사이트 : www.barn.is

▮ **설립년도** : 1995

▮ **직원규모** : 3명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은 1994년 아동옴부즈맨법(법 제 83호)을 통해 설립되었다. 옴부즈맨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매년 총리에게 보고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되

어 운영된다.

- **권한 및 활동** : 아동권리이행증진의 권한은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법률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사례들을 다루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수행된다. 최근 활동에는 아이슬란드아동인구에 대한 숫자와 사실에 관한 책 출판, 학교아동급식추진, 성피해자의 권리 증진, 학교왕따에 대한 컨퍼런스 주관 등이 포함된다.

■ 아일랜드

■ Children's Ombudsman 아동옴부즈맨(2011년 설립 예정)

- **헌법적 기반** : 아동옴부즈맨은 의회의 법안에 의해 설립될 것이며 아동이나 아동대리인의 불평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직접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제공할 구조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아동옴부즈맨의 주된 사명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 이탈리아

■ Public Tutor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공후견인

Tutore Pubblico dei Minori per la Regione Friuli Venezia Giulia

Via G. Carducci 6, Trieste, 이탈리아

전 화 : +39 040 377 2265, +39 040 377 2119

■ **설립년도** : 이탈리아 최초의 지역 아동청소년 옴부즈맨, 혹은 공공후견인Public Tutor은 2001년 초 Friuli Venezia Giulia라는 자치지역에서 임명되었다.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 설립을 위한 기반은 법률 제 49/93호 가족유지및아동보호법 Rules to Sustain Families and Protect Children에 의해 놓여졌다. 이 법의 개정법인 법률 16/96호가 Friuli Venezia Giulia의 아동옴부즈맨사무소의 설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아동‘공공후견인’은 지역행정이사회the Regional Executive Board에 의해 선출되고 이사회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임명기간은 5년이며 한 번 갱신될 수 있으나 옴부즈맨을 임명한 지역이사회의 수명에 한한다.
- **권한 및 활동** : 공공후견인Public Tutor은 아동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훈련하며 지역당국과 NGO와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활동을 증진한다. 공공후견인은 지역 당국, 시민, 대중매체와 협력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활동을 증진할 권한이 있다. 공공후견인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지역의 법안과 행정 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서비스와 청소년 사법시스템에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한다. 또한 관계 지역당국에 건강, 위생, 주택,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환경조건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위험에 대해 공지하기도 한다.

▣ 유고슬라비아 Former Yugoslav

마케도니아 공화국 Republic of Macedonia

▣ 마케도니아 아동옴부즈퍼슨 Macedonian Ombudsperson for Children

Dimitrie Cupovski 2, 91000 Skopje, 마케도니아

전 화 : +389 91 129 327, 팩 스 : +389 91 129 359

▣ 설립년도 : 1999

▣ 직원규모 : 보조원 한 명과 국장secretary

- **헌법적 기반** : 마케도니아 헌법과 공중변호사법Law on the Public Attorney은 이 사무국을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공공당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취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 중립된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고 있다. 아동보호부The Department of Child Protection 역시 공중변호사법the Law on the Public Attorney에 의거 시민이 아동권리침해에 관한 불평을 제기하면 동일한 조치와 동일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 **권한 및 활동** : 사무국은 성인과 아동의 권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연간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보고할 권한이 있다. 현행 공중변호사법은 아동이 직접 사무국에 불평을 제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이 직접 불평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 법률의 수정안을 준비했다. 최근 활동에는 2000년 가을에 정부에 제출한 법률의 아동권리현장 준수 여부에 관한 포괄적 검토 보고서, 아동권리에 대한 학교 프로젝트, 길거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법the Law on Child Protection 개정에 관한 권고서 개발 등이 포함된다.

▣ 뉴질랜드

▣ Office of the Commission for Children 아동위원사무국

39 Pipitea St. PO Box 12537 Thorndon, Wellington, New Zealand

전 화 : +64 4 711410, 팩 스 : +64 4 711418, 이메일 : rmcclay@occ.org.nz

▣ 설립년도 : 1989

- **헌법적 기반** : 아동위원은 1989년 아동, 청소년, 가족법1989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의 정책과 실행을 점검하고 검토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들의 권리가 널리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1989년 아동, 청소년, 가족법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선별위원회the Social Services Select Committee는 아동위원이 의회의 관료an Officer of the Parliament가 되도록 제안하며 새로운 의회아동위원법안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Children Bill을 고려해 왔다. 아동위원사무국에 관한 감사는 2000년에 수행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아동권리현장의 영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아동위원사무국의 권한과 능력을 확장할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관한 보고가 정부사회정책및보건위원회the Cabinet Social Policy and Health Committe로 이루어질 것이다.
- **권한 및 활동** : 아동위원은 모든 서비스와 모든 조직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아동학대와 유기, 청소년 범죄, 아동·청소년·가족부the 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의 활동에 관한 사안을 조사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법정의 판결이나 법정에 선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없다. 아동위원은 아동권리현장을 안내서로 활용하며 그 규정에 대한 인식을 도모한다. 연구를 수행하고 출판물과 보고서를 생산해 낼 뿐 아니라 계간지quarterly newsletter인 Children을 발행해 아동에 관련된 사안들에 관한 토론을 촉구한다. 아동위원은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불평서비스를 설치했다.

▣ 니카라과

▮ La Procuraduria Especial de la Ninez y la Adolescencia

Avenida Monumental de la Estacion de Bomberos 1 cuadra abajo, Apartado 369,
Managua, Nicaragua

전 화 : +505 266 3257 / 266 3258 / 268 0145, 팩 스 : +505 268 2789

이메일 : pddh@bw.com.ni.

▮ 설립년도 : 1999

▮ 직원규모 : 아동청소년인권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는 변호사2명, 커뮤니케이션 관료 1명, 비서 2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 법률사무소에 제출된 사례들을 관할한다.

- **헌법적 기반** : 인권위원회는 1996년 1월 법률 제212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아동청소년인권소위원회는 아동권리현장과 아동청소년법the Cod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의 이행에 중점을 둔다. 위원과 소위원은 국회에 의해 지명된다.
- **권한 및 활동** : 소위원회의 관할은 행정부에 의한 권리침해에 한정된다. 현재 아동등록사무소child registry offices 추진, 아동노동 근절, 성적 학대와 가정폭력 감소에 힘쓰고 있다. 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의 일부로서 그 구조를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고 2000년 6월에 설립된 국가아동청소년 관심및통합보호평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the Attention and Integr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에서 적극적인 협력자로 섬기고 있다. 사업에는 새 형법Criminal Code, 학교교통법, 위자료법과 같은 새 법률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소위원회는 가족부, 교육부, 보건부 간의 코디네이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을 모니터링하는 사무소의 개발을 도모해 왔다.

▣ 북아일랜드, UK

▮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북아일랜드인권위원회

Temple Court, 39 North St, Belfast, BT1 1NA, United Kingdom

전 화 : +44 28 9024 3987, 팩 스 : +44 28 9024 7844, 이메일 : nihrc@belfast.org.uk

웹사이트 : <http://www.nihrc.org>

■ **설립년도** : 1999

■ **직원규모** : 12명

- **헌법적 기반** : 위원회는 수난일(평화)협약the Good Friday (Peace) Agreement과 1998년 북아일랜드법 제69항the Northern Ireland Act of 1998, Section 69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을 아동권리헌장을 비롯 영국정부가 서약한 모든 인권기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을 통해 웨스트민스터의회Parliament at Westminster에 책임을 지며 영국의회행정위원회the UK Parliamentary Commission for Administration의 감독을 받는다.
- **권한 및 활동** : 위원회는 개별 불평을 접수할 뿐 아니라 폭넓은 정책적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북아일랜드 청소년사법센터Juvenile Justice Centers를 조사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권리장전a Bill of Rights for Northern Ireland에 관한 자문 절차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 실무 그룹을 설립했으며 이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소책자를 출판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 신체학대에 대한 자료 준비에 법률개혁사무소the Office of Law Reform와 협력하고 있다.

■ 노르웨이

■ **Children's Ombudsman Barneombudet 아동옴부즈맨 Barneombudet**

Hammenborg Torg 3, PO Box 8036 DEP, N 0030 Oslo, Norway

전 화 : +47 22 242630, 팩 스 : +47 22 249524, 이메일 : trond.waage@bo.dep.no

■ **설립년도** : 1981.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아동옴부즈맨

■ **직원규모** : 9명

- **헌법적 기반** : 아동옴부즈맨은 사회부의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의 공식 절차 아래 1981년 노르웨이 의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8년 이 법률은 이 직위를 아동권리헌장에 연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 **권한 및 활동** : 옴부즈맨은 민간과 공공 당국과 관련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아동이 사는 환경을 개선할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에서 명백히 제외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제외하고는 아동옴부즈맨은 거의 모든 사안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아동참여를 촉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2차 학교교육의 개혁을 제안했고 소수민 및 피난민 아동을 위한 사업도 실시했다.

■ 필리핀

■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인권위원회**

KOMNAS, State Accounting Building, Commonwealth Avenue, UP Complex, Diliman, 1104, Quezon City, Philippines

전 화 : +63 2 928 57 92, 팩 스 : +63 2 929 01 02

■ **설립년도** : 1987

- **헌법적 기반** :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3조 17항은 인권을 보호증진할 독립사무소로서 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 **권한과 활동** : 그 권한으로는 모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과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인권가치관, 원칙, 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경찰과 군인을 위한 옹호 과정을 개설하며, 전국 공립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훈련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권위원회 내에 있는 아동권리센터 Children's Rights Center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권리현장 준수를 도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아동권리센터의 사업에는 법률 어진 아동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아동권리에 대한 애니메이션 개발, 어린 입법자로서의 아동의 권리에 중점을 둔 인권포럼 등이 포함된다.

■ **포르투갈**

■ **Portuguese Ombudsman for Justice 포르투갈정의옴부즈맨**

Provedoria de Justica, Rua do Povo de Bandeira 9, 1200 Lisboa, Portugal

전 화 : +351 392 66 00, 팩 스 : +351 396 12 43, 이메일 : provedor@mail.telepac.pt

■ **설립년도** : 옴부즈맨은 1975년에 설립되었다. 아동메시지클레임상담전화the Children's Messages and Claims Hotline는 1992년에 설치되었다.

■ **직원규모** : 106명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은 1975년 법령 제213/75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의회에 의해 4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한 번의 재임명이 가능하다. 옴부즈맨 사무소에는 아동과 아동을 위해 성인이 제기한 특정 클레임에 대응하는 아동메시지클레임상담전화 Children's Messages and Claims Hotline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담당부서가 있다.
- **권한과 활동** :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메시지는 보통 아동 스스로에 의해 사법부, 노동부, 통합사회부Minisries of Justice and Labour and Solidarity로 전달된다. 우선 사업으로는 노숙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아동에 할애할 수 있는 양육 시간 부족, 적절한 정보 이용, 장애 아동, 시설 아동,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 **루마니아**

■ **Advocate of the People 시민옹호자**

Institutia Avocatul Poporului, 3-5 Boulevard Iancu de Hunedoara, 1st District 71204

Bucharest, Romania

전 화 : +401 231 5001, 팩 스 : +401 230 5000

■ **설립년도** : 1997

■ **직원규모** : 총원 72명이며 이중 40명은 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동, 여성, 가족보호부 the Department for Problems Regarding the Child, Woman and Family Protection에는 한 명의 수장과 여덟 명의 직원이 있다.

- **헌법적 기반** : The Advocate of the People은 1991년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기구이다. 그 조직과 기능은 1997년 의회가 채택된 법률 제 35/1997호에 의해 규제 된다. The Advocate은 모든 공적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 권고는 의회의 통제를 받거나 법정에서의 항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The Advocate은 4년의 임기를 갖게 되고 한 번 더 재임명이 가능하다. The Advocate은 그 활동과,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변화에 대한 권고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아동을 포함한 개별 시민은 the Advocate에 불평을 접수할 수 있다. The Department는 1998년 the Advocate 사무소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 **권한과 활동** : The Department는 당국에 의해 아동, 여성, 가족의 권리가 침해될 당했다는 불평이 the Advocate으로 접수되면 이를 조사한다. The Department는 2000년 4월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The Protection of the Child's Rights라는 Department 최초의 특별보고서를 출판했다.

■ 러시아 연방

1997년 가을 아동권리위원들을 설립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러시아연방의 공동과일럿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그 해에 아동권리옴부즈맨 혹은 위원의 임명을 위해 다섯 도시지역이 선정되었다.

■ City of Ekaterinberg

Commissioner for Children's Rights Office 아동권리위원사무소
24/a, Office 441, Lenin Av., Ekaterinburg, 620038, Russian Federation
전 화 : +7 3432 51 96 03, 팩 스 : +7 3432 51 96 03, 이메일 : stronina@sov.mplik.ru

■ **설립년도** : 1998

■ **직원규모** : 1명

- **헌법적 기반** : 아동권리위원사무소를 설립한 법률은 1998년 2월 10일 City Duma, N34/3 결의안이었다. 아동권리위원은 시청 법무부에 기반하고 있다.
- **권한과 활동** : 사무소는 개별 상담, 전화 상담, 지역사회 모임, 학교 모임,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과의 가깝고 직접적인 연계를 유지하려 한다. 사무소는 데이터 수집, 법/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법률 초안에 대한 평 등을 통해, 그리고 아동권리헌장 이행 사항 모니터링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별 사례들을 접수하고 아동에 관계된 법정 사례에도 참여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전문가 및 기타 그룹에 훈련을 제공한다.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대와 관련되어 있다.

■ Kaluga Oblast

Ombudsman for the Children of Kaluga 칼루가아동옴부즈맨
Staryi Torg Square 2, Kaluga 248600, Russian Federation
전 화 : +70 842 56 27 57, 팩 스 : +70 842 56 35 11

■ 설립년도 : 1998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은 지역주지사가 채택한 특별잠정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역주지사의 감독을 받고 그 사무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옴부즈맨은 지역의 아동 인권 현황에 대해 주지사에게 매년 보고한다.
- **권한과 활동** : 활동의 주 영역은 교도소에 수감된 14-18세 아동의 상황, 체르노빌 사태에 영향을 받은 아동의 권리, 고아들을 위한 적절한 숙소 부족 등이다. 옴부즈맨은 또한 0세-2세 아동을 위한 무료 우유 배급과 고아원과 학교의 식품 질에 대한 통제 개선에도 힘써 왔다. 개별 사례들을 접수하며 아동과의 모임이 일주일 단위로 이뤄진다. 1999년에 옴부즈맨은 700건의 사례를 직접 지원했으며 200통의 편지를 받았다.

■ Novgorod Oblast

Children's Ombudsmand for Novgorod 노브고로드 아동옴부즈맨
Novgorod 173000, Nikolskaya 4, Russian Federation
전 화 : +7 8162 2 347 95, 팩 스 : +7 8162 2 347 95, 이메일 : hope@novgorod.net

■ 설립년도 : 1998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은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잠정법an interim act에 의해 지역 내에서의 옴부즈맨 활동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 **권한과 활동** : 옴부즈맨은 가정폭력에 관해 사회보호소에 있는 2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했으며 아동권리헌장인식도에 대한 서베이를 학교와 고아원에서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된 사업은 생활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사무소에는 아동 상담전화도 마련되어 있다.

■ St Petersburg

Ombudsmand of St Petersburg 싹페부르크옴부즈맨
Saint Petersburg-191011, Ul. Dumskaya Dom 1-3, Russian Federation
전 화 : +7 812 113 4944, 팩 스 : +7 812 319 92 93

■ 설립년도 : 1998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은 싹페부르크 주지사 사무소의 아동권리특별부서의 수장이다.
- **권한과 활동** : 사업은 법정 제출용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 아동을 위한 범무가 주다. 옴부즈맨은 아동과 여성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 그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정보 제공을 위한 아동권리NGO들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옴부즈맨의 연간보고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급된다.

■ Volgograd Oblast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s Rights of the Volgograd 볼고그라드아동권리위원회사무소

Regional Administration, Lenin Ave. 9, room 11, Volgograd, 400098, Russian Federation
전 화 : +7 8442 33 5923, 팩 스 : +7 8442 93 6212, 이메일 : obladm@sprint-v.com.ru

■ **설립년도** : 1998

■ **직원규모** : 1명

- **헌법적 기반** : 아동권리위원회는 Volgograd 지방정부Volgograd Regional Administration 의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은 지방정부 수장의 보좌관assistant이다. 위원회를 승인할 공식 법이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곧 완성될 것이다. Volgograd지방행정부 안에는 아동권리평의회Council for Children's Rights도 설립되어 있으며 학교들과 NGO들에도 유사한 평의회들이 계획되어 있다.
- **권한과 활동** : 위원회 사명은 아동권리 제반과 개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도시 여러 곳에 있는 대형간판에 의해 홍보되고 있는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TV에서 아동권리이슈를 다루는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 신문을 통해 아동권리현장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기타 사업으로는 아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아동권리현장 이행 모니터링,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영향 주기 등이 있다. 아동권리에 대해 읽기 쉬운 소책자를 출판했으며 소책자는 아동기관들에 보급되어 있다. 아동위원이 식별한 주요 문제에는 고아원과 가정폭력을 떠난 아동을 위한 주택 부족 등이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 Human Rights Commission 남아프리카인권위원회**

Private Bag 2700, Houghton, 2041, Johannesburg, South Africa
전 화 : +27 011 484 8300, 팩 스 : +27 011 484 7146,
이메일 : sahrinfo@jhb.sahrc.org.za

■ **설립년도** : 1995

■ **직원규모** : 아동권리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과 직원 86명

- **헌법적 기반** : 위원회는 헌법과 1994년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of 1994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헌법과 인권법에만 종속된다.
- **권한과 활동** : 위원회는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국가아동계획the National Plan for Children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촉진, 권리침해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활동으로는 아동권리의 국제적 적용례에 대한 연구출장이 있다. 유니세프, Radda Barnen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는 아동이 위원회 활동 일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아동핵심그룹프로그램a programme of focal groups of children을 설립했다.

▣ 스페인

▣ 마드리드

Ombudsman for Children in Madrid 마드리드 아동옴부즈맨
Defensor del Menor en la Comunidad de Madrid,
C/Serrano 110, 28006 Madrid, Spain
전 화 : +34 91 563 44 11, 팩 스 : +34 91 561 81 73,
이메일 : defensor@dmenor-mad.es
웹사이트 : <http://www.dmenor-mad.es>

▣ 설립년도 : 1996

▣ 직원규모 : 18명

- **헌법적 기반** : 아동옴부즈맨은 마드리드커뮤니티법the Community of Madrid Law의 아동옴부즈맨법5/1996호Law 5/1996 Ombudsman for Children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7년 아동옴부즈맨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집행규정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Ombudsman for Children in Madrid, Office Regulation 1997이 도입되었다. 그 권한에는 아동보호기구들의 활동 감독, 불평 접수, 정보 및 상담 제공, 아동권리 인식제고 등이 포함된다.
- **권한과 활동** : 아동옴부즈맨은 1998년 거의 1만7천 건의 불평을 접수해 800건을 조사했다. 성범죄체벌법the Penal Code on crime against sexual freedom 개정에 기여했으며 시평의회City Councils의 아동 참여를 도모했다. 또한 모든 지역에 옴부즈맨을 설치하자는 스페인 의회의 제안에도 기여했으며 학교 내 반폭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법적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민 아동이 건강카드health card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 까탈로니아

Ombudsman of Catalonia 까탈로니아 옴부즈맨

Sindic de Greuges de Catalunya, C/Josep Anselm Clave 31, 08002 Barcelona, Spain
전 화 : +34 93 301 8075, 팩 스 : +34 93 301 3187, 이메일 : sindic@sindicgreugescat.org

▣ 설립년도 : 총괄옴부즈맨the General Ombudsman은 1984년에 설립되었다. 1989년 법이 수정되어 아동 부옴부즈맨Deputy for Children의 직위가 생겼다.

▣ 직원규모 : 33명

- **헌법적 기반** : 옴부즈맨은 의회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까탈로니아 자율지역the Autonomous Region of Catalonia의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 아동 부옴부즈맨Deputy Ombudsmand for children은 1997년에 선출되었다. 옴부즈맨은 행정부에 법률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권과 자유와 관련된 된 문제와 진전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 **권한과 활동** : 옴부즈맨은 불평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최근에는 소송 절차중인 아동의 의료검진에 대한 성공적인 개혁안을 제출했으며, Maghreb 출신 아동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부 간 협약서를 도입했고, 병든 아동의 교육권을 증진했다. 아동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에 대한 1만2천권의 핸드북을 생산했으며 아동권리헌장규정들에 대한 월간 TV 시리즈에도 참여했다.

▣ 스웨덴

▣ The Children's Ombudsman

Barnombudsmannen, Box 22 106, S-104 22 Stockholm, Sweden

전 화 : +46 8 692 2950, 팩 스 : +46 8 654 6277, 이메일 : b.o@bo.se

웹사이트 : www.bo.se

▣ 설립년도 : 1993

▣ 직원규모 : 13명

- **헌법적 기반** : 아동옴부즈맨설립법the Act to establish the Office of the Children's Ombudsman에 설립된 스웨덴 아동옴부즈맨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이익에 관계된 사안을 관찰하고 아동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개별 사례를 조사할 임무는 없다. 매년 정부에 보고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된다.
- **권한과 활동** : 사업은 아동권리헌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이 세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사업에는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관한 후속 연구,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데이터 코디네이션과 통계자료 편집 등이 포함된다. 옴부즈맨은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보급할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소도시들municipalities이 아동권리헌장을 의사결정과 활동에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핸드북을 개발했으며 스웨덴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스웨덴 의회가 제안한 법안은 아동권리헌장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의 핵심 역할을 옴부즈맨에게 부여했다.

▣ 웨일즈

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웨일즈 아동위원

PO Box 21, Swansea, SA1 3YB, UK

전 화 : +44 1792 482453, 이메일 : peter@childcom.co.uk

▣ 설립년도: 2001

▣ 직원규모: 운영이 시작되면 사우스웨일즈South Wales에 20명, 노스웨일즈North Wales에 5명이 배치될 것이다.

- **헌법적 기반** : 위원은 2001년 웨일즈아동위원법the 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Act 2001에 의해 설립되었다. 위원의 임무는 웨일즈에 “보통으로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18세 이상이면서 지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권한과 활동** : 아동위원은 아동 보건, 보호, 교육의 다양한 양상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2001년 6월 현재)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

자료 3.

유럽평의회 아동권리전략 (2012-2015)³⁾

▣ Executive Summary

유럽평의회 transversal 프로그램인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 건설”은 제3차 유럽평의회국가정상회담the Third Summit of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Council of Europe(바르샤바 2005)의 칙령mandate에 대한 답으로 2006년 착수되었다.

아동권리전략2012-15the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2-15는 이 분야에서 지난 두 정책주기(최근 정책주기는 스톡홀름 전략the Stockholm Strategy으로 언급된다) 동안 일어난 진전, 정부들이 표출한 니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의 유럽평의회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각국 정부, 의회, 주요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포괄적인 논의의 결과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과 논의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유엔아동권리헌장의 이행을 위한 촉매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 건설” 프로그램의 2012-15년 최우선 목표는 현존하는 아동권리기준children’s rights standards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유엔과 유럽평의회 기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가이드policy guidance와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전체적holistic, 통합적integrated 접근을 증진하며, 이 분야의 오래되고 새로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프로그램이 중점을 둘 네 가지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친화적 서비스와 시스템 증진;
2.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제거;
3.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권리 보장;
4. 아동 참여 증진.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모든 유럽평의회 기구들bodies과 기관들institutions의 노력contribution을 동원하고 조정할 것이며 유럽평의회역의 모니터링 기구와 인권 메커니즘, 그리고 유럽평의회역의 모든 정책 영역과 활동에서 아동권리를 주류화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다른 국제기구, 전문적 네트워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조정하고 공고히 할 것이다.

3) Council of Europe(2012). Council of Europe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2012-2015). pp. 3-23.

▣ 2006-2011: 과정 착수와 진전 평가

□ 배경

제3차 유럽평의회국가정상회담(2005)The Third Summit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Council of Europe(2005)은 유럽평의회가 유럽평의회 모든 정책에서 아동권리를 주류화하고 모든 아동관련 활동을 조정coordinate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는 2006년 4월 모나코에서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 건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주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를 얻은 두 정책주기(최근 주기는 스톡홀름 전략으로 언급된다)를 완료했으며 앞으로의 난제도 확인했다.

□ 성과

두 정책주기(2006-2009, 2009-2011) 중 첫 번째 정책주기에서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 건설” 프로그램은:

- 새로운 사업방식working methods을 개발했으며 특히 아동권리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기본 방침platform을 설정하고⁴⁾ 또한 유럽평의회 직원에 대한 아동권리 및 아동참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럽평의회가 그 권한을 이행할 역량을 강화했다;
- 유럽에 있는 주요 유럽평의회 주체들과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아동권리를 주류화했으며 유엔 아젠다를 보조할 수 있는 전체적 아동권리기반 접근법을 개발했다;
- 새로운 기준⁵⁾과 정책 가이드라인(국가 아동폭력 예방 전략, 아동 친화적 사법시스템, 보건 및 사회서비스 포함)의 작성, 채택, 홍보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지원했다;
- 주로 두 캠페인(아동체벌제거캠페인과 아동성폭력근절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에 관한 회원국들의 주요 법적,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4) Including governmental focal points, the Committee of Ministers' Thematic Co-ordinator, an Inter-Secretariat Task Force, representatives from Council of Europe bodie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5) Including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ETS No. 201),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 (Revised) (CETS No. 202), Recommendation Rec(2005)5 on the rights of children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s, Recommendation Rec(2006)12 on empowering children in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vironment, Recommendation Rec(2006)19 on policy to support positive parenting, Recommendation CM/Rec(2008)4 on strengthening the integration of children of migrants and of immigrant background, Recommendation CM/Rec(2009)4 on the education of Roma and Travellers in Europe, Recommendation CM/Rec(2009)10 on integrat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violence, the two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and on child-friendly health care, as well as Recommendation CM/Rec(2011)12 on children's rights and social services friendly to children and families.

- 아동친화적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참여에 대한 정책리뷰를 개발하며 아동과의 자문 consultations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정보 이용과 참여를 증대시켰다;
- 핵심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단순한 정보교환에서 공동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수행으로 확대했다.

▣ 남아있는 난제들

다음 네 분야에 여전히 난제들이 남아있다:

□ 예방:

국가적 수준에서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제고하는 등의 예방정책을 목표로 한 활동은 충분하지 않다. 의사결정자들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관리 및 이행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보호:

유럽에서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여전히 학대abuse, 착취exploitation, 유기neglect, 소외exclusion, 차별discrimination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폭력(체벌과 같은)은 여전히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관용되며 널리 퍼져있다. 많은 나라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가 및 지역당국은 인권에 보다 더 철저하며 지속가능하고 명백한 비전에 근거를 둔 활동들을 착수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제공: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항상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정 범주에 드는 아동은 교육, 의료, 사법, 사회보호, 양육보호 서비스 등의 이용에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개발은 아동, 아동의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일하는 전문가가 장비가 부족하거나 훈련이 부족해 다루기 힘든 난제들을 만들어 냈다. 지역 및 국가local, regional and national 정부가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난제들과 새로운 난제들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는 통합적인 지역 및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

□ 참여:

아동의 참여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은 정보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공격

생활과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를 찾는 이도 거의 없고 적절히 고려되지도 않는다.

▣ 2012-2015전략: 비전을 현실로

□ 과정The process

2011년 3월 19일,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는 유럽평의회미래아동권리전략 the future Council of Europe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위해 제안된 최초 목표들과 이 전략의 구현을 위해 제안된 절차를 주목⁶⁾하고 사무국을 초청해 각국의 아동권리 담당자focal point와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래전략⁷⁾의 내용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게 했다. 현 전략은 다음 기관들과의 폭넓은 자문의 결과이다:

- 유럽평의회전사무국아동권리특별대책본부the Council of Europe Inter-Secretariat Task Forc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1년 6월-7월);
- 정부 임명 아동권리 담당자the government-appointed Focal Points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1년 7월-9월);
- 사회, 보건, 가족 위원회Social, Health and Family Affairs Committee를 통한 유럽평의회 의회모임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2011년 10월);
- 핵심 협력 국제기구, 전문가 네트워크, 시민사회 및 민간영역(2011년 9월-10월)
- 2011년 11월 20일-21일 모나코에서 개최된 “아동친화적 유럽건설: 비전을 현실로” 회의 참가자.

이 전략에는 국가 당국, 국가인권기관(아동옴부즈기구 포함), NGO, 독립적 연구자, 국제기구 등이 수행한 폭넓은 연구와 아동 자문으로부터 획득한 아동의 견해가 수용되어 있다.⁸⁾

이 전략은 2012년 2월 15일 장관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 새 전략의 핵심

2012년-15년 기간 중 유럽평의회는 아동권리기준children's rights standards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국이 이 기준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준과 실행의 간극을 좁히는 것 - 법적 원칙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 - 이

6) In its decision set out under item 10.6a. of CM/Del/Dec(2011)1112 dated 3 May 2011.

7) Programme " Building a Europe for and with children" , Progress report and new priorities CM(2011)35.

8) Council of Europe report on " Children's and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threats ad challenges to the rights of the child in Europe" , August 2011. This report may be obtained from the programme's Secretariat.

중요하다.9)

이는 다음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전체적 접근을 추구: 회원국이 유엔아동권리헌장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차별; 아동의 이익에 헌신; 생활, 생존, 개발의 권리; 아동의 견해 존중과 아동권리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및 불가분성indivisibility.
- 정보, 인식제고, 역량개발: 모든 이해관계자들 - 당국, 전문가, 아동 및 청소년 포함 - 이 아동권리기준, 모니터링 보고서, 캠페인, 훈련교재, 기타 관련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훈련을 제공한다.
- 주류화 및 모니터링: 모든 유럽평의회 활동, 특히 유럽평의회 모니터링 기구들의 활동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관점을 유지, 개발하고, 정보와 우수한 관행, 현 이슈와 부상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위한 공간을 유지, 개발한다.

아래에 제시된 네 가지 전략 목표는 이 프로그램의 이전 주기의 성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 파트너들의 니드에 대한 답이다. 이 목표들은 다른 유럽평의회 transversal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동권리 양상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유럽평의회 transversal 프로그램에는 정보사회를 다루는 프로그램, 집시10)와 여행자를 다루는 프로그램, 평등과 다양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성과 장애아동 포함),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전략 목표 1 - 아동 친화적 서비스 · 시스템 증진

□ 아동과 청소년의 말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이 접하는 공공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들은 온전한 개인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며 전문가들과의 접촉이 상호신뢰와 존중에 근거하기를 원한다.

또한 아동은 종종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고 보고한다. 아동은 자신들에 관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며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말을 아예 들어주지 않거나 신중히 듣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학대 피해자는 종종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렵고 전문가가 종종 자기들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9) The relevant standards may be consulted on the following website: www.coe.int/children.

10) The term "Roma" used at the Council of Europe refers to Roma, Sinti, Kale and related groups in Europe, including Travellers and Eastern groups (Dom and Lom), and covers the wide diversity of groups concerned, including persons who identify themselves as "Gypsies".

아동과 청소년은 의료, 사회, 사법, 가족, 교육 시스템 및 서비스와 18세 이하 아동을 겨냥한 스포츠, 문화, 청소년 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동등한 액세스와 적절한 대우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유럽평의회는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요구에 순응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와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아동권리보호를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평의회는 아동권리를 다루는 지역, 지방, 국가 수준에서의 절차 및 기관들의 우수한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할 것이다.

□ 아동 친화적 사법 시스템

아동 친화적 사법 시스템에 관한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과 맥을 같이 해,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이 아동의 이해 능력과 지위에 관계없이 민법, 형법, 행정법에 대한 아동의 액세스와 이들에 의한 아동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법, 정책, 관행을 검토하는데 있어 회원국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국은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전문가들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아동 친화적 의료

아동 친화적 의료에 관한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과 맥을 같이 해, 이 프로그램은 국가 정책이 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기획, 전달, 모니터링에서 아동권리를 주요 원칙 guiding principle으로 받아들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제공하며, 특수한 니드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이익과 견해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¹¹⁾

□ 아동 친화적 사회 서비스

이 프로그램은 가족과 아동에게 친화적인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고the Recommendation on social services friendly to families and children에서 정의된 대로 아동의 연령, 성숙도와 이해도, 개별 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며 아동의 견해, 특히 가족관계에 관한 견해를 합당하게 고려하는 아동 친화적 사회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다.

□ 가족법과 가족정책

이 프로그램은 가족법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준에 대한 서명signature, 인가ratification, 이행implementation, 모니터링monitoring을 촉진할 것이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족

11) Final Declaration adopted at the 9th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of Health, Lisbon, 30 September 2011.

에 대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보호를 촉진할 것이다. 회원국이 긍정적 양육(positive parenting), 즉, 양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권장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 교육

이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민주주의 문화, 형평성, 새 대중매체 환경, 문화간 대화, 아동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식 등에 중점을 두고 무폭력 환경을 확고히 하는 관점을 견지하는 교육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 시민의식(citizenship)과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 스포츠, 문화,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청소년 활동

이 프로그램은 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도덕적 기반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됨됨이(integrity) 및 안전을 도모하며 특히, 아동을 정치적, 상업적, 금융적 이득을 위해 착취하려는 시도와 약물남용과 성적 조롱 그리고 성적 학대를 중심으로 한 학대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한다.

■ 전략 목표 2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제거한다

□ 아동과 청소년의 말

아동과 청소년에게 폭력은 제일 먼저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주된 걱정거리이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가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려워 하며 가족, 학교, 대안보호(시설),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대중매체 내에서의 괴롭힘(bullying), 여성폭력(gender violence)과 청소년 폭력, 체벌,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받은 사실을 드러내면 종종 일부 보고 과정, 조사 및 사법 절차가 아동의 권리, 니드, 견해를 존중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아동은 여전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 가정에서, 학교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아동보호시설(residential institutions)과 구치소에서, 지역사회에서, 대중매체에서.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모든 아동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조정하는 지역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연구(2006)the UN Secretary

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2006)의 권고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유럽 포럼으로서 유럽평의회는 유엔사무총장이동폭력특사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 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와 유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 특별보고자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평의회는 두 가지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

-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통합된 국가전략의 채택 및 이행을 지원한다;¹²⁾
- 인식을 제고하고 특정 형태의 폭력을 대처할 활동을 취하며 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 성적 폭력

이 프로그램은 the Parliamentary Assembly, 지역당국협의회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he ONE in FIVE Campaign 등의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폭력을 멈추고, 성적 착취,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CETS No. 201), 사이버 범죄 헌장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ETS No. 197),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저항을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CETS No. 210), 기타 유럽평의회 헌장들 등 성기절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폭력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의 이행을 추구한다. 아동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평의회는 2014년까지 아동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에 저항하는 유럽의 날a European Day on the Fight against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을 제정할 것이다.

□ 아동 매매

회원국이 강제 노동을 위한 아동 매매를 포함한 아동 매매를 특히 아동을 위한 보호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줄여야 할 인간매매저항활동헌장th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CETS No. 19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인간매매저항활동전문가그룹을 초빙해 아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며 아동 식별 절차,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 주거인가증 부여시나 아동의 반환을 고려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2) In line with th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CM/Rec(2009)10 on integrat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violence.

□ 체벌, 성에 따른 폭력, 가정 폭력

아동폭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촉진하며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포함해 모든 환경에서의 폭력적인 교육과 체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회원국 내에서의 긍정적 양육 정책의 개발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¹³⁾ 여자 아이를 성 기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도 이를 목격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 폭력을 예방, 제거하기 위해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저항을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CETS No. 210)의 서명signature, 인가ratification, 이행을 촉진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쏟을 것이다. 또한 강제결혼과 조기결혼에 저항할 필요도 적극 살펴볼 것이다. 회원국의 십대 성 기반 폭력을 막은 우수한 관행들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를 지원할 것이다.

□ 학교 폭력과 초등학교 입학 전 폭력

회원국이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을 평가, 예방, 근절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책,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는 건강한 심리사회적, 물리적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무폭력 가치관과 행동을 도모함으로써 괴롭힘, 차별, 치욕적인 벌, 놀림과 같은 관행이 근절되게 하기 위해 학교 전체 접근법과 ‘인권교육과 민주주의 시민의식교육에 대한 유럽평의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한 우수한 관행이 촉진되고 공유될 것이다.

▣ 전략 목표 3 -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권리 보장

□ 아동과 청소년의 말

일반적으로 아동은 “취약한 그룹”의 구성원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싫어한다. 아동은 자신이 처한 그룹의 경험과 상황에 관계없이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길 선호한다.

대안(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과 상담해 보면 아동이 그러한 보호에 들어갈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보호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아동이 처한 개인적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못했으며, 가족관계도 무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치소에 감금된 아동은 성인 범죄자와 공간을 함께 사용해야하는 것,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적응하기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사법 절차가 느린 것, 범죄를 다루는 다른 접근법이 부족한 것 등에 대해 염려한다.

보호소를 찾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과정, 특히, 구류detention를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들도 편안한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라고 얘기한다.

13) Recommendation Rec(2006) 19 on policy to support positive parenting.

아동도 그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법적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아동들은 권리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할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로 한다. 특히 시민의식과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럽평의회는 유니세프, 유럽연합, 시민사회와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협력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아래에 언급된 아동 그룹 외 다른 아동, 즉 소수민, 빈곤에 처한 아동, 사회적 소외 속에 자란 아동,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적 혹은 사회적 소속, 빈곤, 장애, 출생, 성적 성향이나 성(gender identity)과 같은 기타 지위로 인해 차별을 받은 아동 피해자와 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다른 아동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이 목표를 실행하는 가운데 유럽평의회는 아동이 종종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에 노출된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 대안보호를 받는 아동

회원국이 유엔아동대안보호가이드라인the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과 시설¹⁴⁾에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과 가족 친화적 사회서비스¹⁵⁾에 대한 유럽평의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따른 전문지식을 도모하고 제공할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탈시설화,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고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친화적 방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알려 주어 아동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장애아동

유엔장애인권리헌장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평의회액션플랜the Council of Europe Action Plan의 이행을 통해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2006-2015).¹⁶⁾

□ 구류 중인 아동

처벌을 기다리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유럽 규칙the 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sanctions or measures에 대한 권고사항 CM/Rec(2008)11, 아동친화적 사법시스템에 대한 유럽평의회장관위원회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고문,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나 차별 방지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4) Recommendation Rec(2005)5 on the rights of children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s.

15) Recommendation CM/Rec(2011)12 on children's rights and social services friendly to children and families.

16) Recommendation Rec(2006)5 on the Council of Europe Action Plan to promote the rights and ful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urope 2006~2015.

(CPT)의 관련기준의 이행을 증진하고 평가한다. 유럽평의회는 특히 구류의 대안 개발, 법적 도움과 변호에의 액세스, 구류 중인 아동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부모가 감옥에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이민 아동과 “이동하는” 아동

회원국이 이민 아동과 “이동하는” 아동, 즉, 보호를 구하는 아동asylum-seeking, 피난민refugee,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unaccompanied, 분리된 아동separated, 내부적으로 이탈된 아동internally displaced과 국가가 없는 아동stateless 등을 포함한 아동의 보호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아동친화적 사법시스템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이민 미성년자를 위한 생애 프로젝트에는 권고사항 CM/Rec(2007)9를 이행하며 이민자의 자녀 혹은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CM/Rec(2008)4를 적용하고, 아동의 국적에 대해서는 CM/Rec(2009)13을 적용한다.

□ 집시 아동¹⁷⁾

교육 분야의 집시 중재인을 훈련하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에서 집시 아동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관행에 저항해 집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유럽평의회는 집시 여자아이의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전략 목표 4 - 아동참여 증진

□ 아동과 청소년의 말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들의 참여권이 거의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시민 생활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결정, 특히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 위탁되는 것placement, 교육schooling, 의료 등의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막는 주요 장애물로 다음을 꼽았다: 의견 개진 권에 대한 연령 제한, 낮은 수준의 정보, 아동에 대한 성인의 편견과 청취력 부족, 위압적 공식 환경과 바쁜 일정.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상황은 더 나쁘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나 대안보호 환경; 주간보호소day-care; 학교; 지역사회; 보건; 사법 및 사회 서비스; 스포츠, 문화, 청소년 사업 및 기타 18세 이하 아동을 겨냥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국내, 유럽, 국제 수준에서의 정책입안 등 어느 곳에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7) See footnote 7.

모든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개진한 의견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효과적이 아동 참여의 주된 장애는 성인들의 태도일 수 있다. 유럽평의회와 회원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고 아동의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아동 참여는 전략 전체에 관계되는 접근법이다. 유럽평의회는 평의회 모든 기준 설정, 모니터링, 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아동 참여를 사업방식이자 사업이행 태도로서 주류화할 것이다. 이 목표는 특히 청소년, 교육, 대중매체, 정보 사회에 관련된 유럽평의회 분야들에 주류화될 것이다.

□ 의견을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권리

의견을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권리의 이행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참여를 중점으로 해 유럽평의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를 증진하고 평가한다.

□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인권 교육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식, 비공식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환경에 있는 아동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아동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민주주의 시민 의식교육과 인권교육 현장the Charter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¹⁸⁾ 이행을 지원한다.

□ 아동권리와 정보에 대한 교육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를 아동, 부모, 교사, 아동전문가에게 온라인과 출판물로, 그리고 유럽평의회 공식어가 아닌 언어로도 생산, 보급한다.

□ 대중매체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아동이 대중매체 환경에서 참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아동이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 데이터를 인터넷과 다른 미디어 상에서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새 도구들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권을 보장해 준다. 인터넷 공급자와 소셜네트워크 및 미디어사가 아동권리에 부합하여 스스로 규제하도록 권장하며 정부의 규제도 강화하고 미래2012-2015 유럽평의회인터넷거버넌스전략the future Council of Europe Strategy on Internet Governance 2012-2015을 고려해 온라인 자기보호와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역량을 강화한다. 미디어 상에서의 아동에 대한 “초성대상화”hypersexualisation 현상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18) Recommendation CM/Rec(2010)7 on the Council of Europe Charter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 파트너

2006년부터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건설”프로그램은 세계, 유럽, 국가, 지역적 수준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요한 협력관계를 설립했다. 이 협력관계는 유럽평의회 기준과 사업을 정책 입안자들, 프로그램의 핵심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궁극적 수혜자들, 즉 아동에게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모든 수준에서의 기관, 즉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세우고, 조율하며, 공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유럽연합과의 협력

유럽연합은 EU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U는 전략 목표를 성취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유럽을 건설하는데 주 협력자이다. 유럽평의회는 EU가 유럽인권및자유보호헌장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TS No. 005), 아동권리에 관한 다른 핵심적 유럽평의회 헌장들에 가입함으로써 유럽평의회 전략을 지지해 줄 것이라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와 위원회의 아동권리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EU아동권리아젠다¹⁹⁾the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의 활동과 유럽평의회 전략에서 정한 우선순위 영역들 - 아동친화적 사법시스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 보호, 아동폭력 근절 - 간의 잠재적 시너지 때문에 EU와 유럽평의회 간의 협력은 EU 내에서나 외에서나 모두 특히 중요하다. EU기본권 증진기관the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FRA)²⁰⁾에 의한 데이터 수집과 지표개발은 아동권리기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l'Europe de l'Enfance와 ChildONEurope과 같은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bodies와 협력관계를 개발하고 공고히 할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2011년 4월 5일자 유럽위원회통신문과 2011년 5월 19일 EPSSCO 평의회의 결론의 틀 안에서 EU 수준에서 실행되는 활동 조율을 지속할 것이다.²¹⁾

□ 유엔아동권리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와의 협력

유럽평의회는 모든 활동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General Comments과 결론적 고

19)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COM (2011) 60 final, available a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1:0060:FIN:EN:PDF>.

20) Report by the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available at: http://fra.europa.eu/fraWebsite/attachments/FRA-report-rights-child-conference2010_EN.pdf.

21) “An EU Framework for National Roma Integration Strategies up to 2020” .

concluding observations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유럽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지 모니터링 할 때에도 유럽평의회는 회원국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아동권리위원회의 국별 보고서를 참고할 것이다. 끝으로 유럽평의회는 47개 회원국 모두가 새로운 아동권리침해커뮤니케이션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for Children's Rights Violations의 서약과 승인을 촉구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과 아동 대리인들의 의사소통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유엔아동기금the UN Children's Fund(UNICEF)과의 협력

유럽평의회는 유니세프, 특히 유니세프 중동부 유럽(CEE) 지역사무소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평의회는 평의회 기준과 가이드라인 개발 시 유니세프의 전문성과 프로그래밍 경험을 구할 것이며 형평성 증진, 특히 취약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기준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평의회는 CEE/CIS 지역에 있는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의 현지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2007년 유럽평의회와 유니세프의 협력강화에 관한 공동 선언the 2007 Joint Declaration on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uncil of Europe and UNICEF에서 예견된 잠재적 공동 활동들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유럽평의회는 비정부기구분야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비정부기구의 자문 역할과 비정부기구의 유럽평의회와 도구와 자문절차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영향평가도구impact assessment tools를 개발할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대중매체, 민간분야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평의회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실행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유럽평의회는 후원기관(자)과 NGO간에 사업수행 파트너로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 사업방식과 제도적 환경

기존의 기준들은 아동권리의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가들에서의 포괄적 데이터와 철저한 분석의 결핍은 법과 정책의 실행에 놓인 장애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 이행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와 맞춤형 지원 제공을 위해 단점과 우수한 관행을 식별할 수 있는 유럽평의회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사업 방식은 다음 목표를 위한 것이다:

- 유럽평의회 모든 활동, 특히 기존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아동권리를 주류화 한다;
- 활동의 횡단성transversality와 코디네이션을 확보한다;
- 아동권리에 대한 전체적 접근을 도모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 및 대중매체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 그들의 언어로 아동 및 그 가족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개발한다;
- 유럽에서의 아동권리기준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유럽평의회 역할 강화를 강화한다.

□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역량 강화

유럽평의회는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건설”프로그램과 이 전략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의 지역 포럼의 역할을 지속하고 핵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전략 목표들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여 전략목표 실행에 있어 파트너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이다.

핵심 파트너:

- 유럽평의회전사무국아동권리특별대책본부the Council of Europe Inter-Secretariat Task Forc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각 사무국 활동에서 발생하는 결과와 난제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각의 대응과 제안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인다;
- 장관아동권리코디네이터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Thematic Co-ordinator on children's rights (TCENF)는 관련 보고자 그룹(rapporteur groups)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의 프로그램 주인의식ownership과 리더십 확보에 힘쓴다.
- 유럽평의회아동권리중점담당자네트워크the Council of Europe Network of Focal Points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국가 수준에서의 다양한 주체자와 정책 조율을 증진하고 이러한 코디네이션 메커니즘과 유럽평의회 전략 및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점담당자 네트워크의 역할은 재정의되고 강화될 것이다.
- 유럽평의회의회모임the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지역당국자회의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인권위원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기타 조정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모니터링 기구, 관련 기관 및 기구들의 대표들

국제기구, 시민사회, 옴부즈기구,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국제전문가, 전문가네트워크, 청소년기구, 부모협회, 아동 대표들

사업은 아동권리부 사무국the Secretariat of the Children's Rights Division에 의해 촉진된다(정의와 인간존엄국 국장, DG I).

기준의 이행에 중점을 두려는 결정을 살리려면 유럽평의회는 회원국에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다양한 조정위원회, 기존 모니터링 기구들과 회원국의 사업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를 아동권리위원회(children's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하여 해결하는 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다.

□ 유럽평의회 모니터링 기구들의 역할 강화

아동권리에 함의를 갖고 있는 유럽평의회 조약들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적 도구들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우선순위는 아동권리를 유럽평의회 모니터링 기구들과 인권메커니즘 속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류화해 기존 유럽평의회 기준들을 이행하는 데 있다. 유럽인권법정(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과 기타 유럽평의회 메커니즘과 전통적 위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²²⁾ 모니터링 활동은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의회모임(the Parliamentary Assembly), 그리고 인권위원회에 의해서도 추구되고 있다. 이 모든 기구들은 그 사업에서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동권리위원회(children's rights commission)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프로그램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에 의한 가시성 증가로부터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니터링 기구들과 인권메커니즘에 아동권리의 주류화가 더 커지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럽평의회와 아동권리기준에 대한 회원국의 주인의식 함양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기준 해석과 이행에 있어 보다 일관적이고 동일한 해석 및 이행이 가능;
- .모니터링 보고서와 '아동권리 영역에서의 미래 유럽평의회활동개발을 목적으로 한 유엔협약기구모니터링'²³⁾에서의 메커니즘'을 포함한 아동 친화적 피드백 및 옹호 메커니즘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 유럽인권법정(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결과 기타 모니터링 기구의 권고 및 결론으로부터 도출한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 회원국가들을 위한 맞춤형 협력패키지의 개발
- 모니터링 및 인권메커니즘의 사업²⁴⁾에 대한 아동의 투입과 직접적인 기여, 아동참

22) This could include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PT), the Group of Experts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GRETA), the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the Enlarged Partial Agreement on Sport (EPAS),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the Committee of Experts of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as well as a range of conventional committees, including the Convention Committee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concerning Custody of Children and on Restoration of custody of Children.

23) Including concluding observations and General Comments of the CRC, NGO reports to the CRC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여활동 개발, 아동 친화적 기준, 전문가 훈련 및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국제사회에서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개선

유럽평의회는 독립된 불평 및 조사메커니즘을 포함, 국가 수준에서 아동권리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및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고 회원국 간 국제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권장할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옴부즈기구와 다양한 아동권리NGO를 포함한 국가인권 기구들이 포함된다.

□ 평가

전략 수행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2013년 말에 아동코디네이터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Thematic Co-ordinator on Children는 제기된 목표들과 관련된 활동들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impact, 지속성sustainability, 관련성relevance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전략 수행 진행 보고서가 2015년 중반까지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에 제출될 것이다.

□ 액션 플랜

전략에 따라 수행될 프로젝트와 활동을 담은 액션 플랜은 CM(2011)171 add 문서에 담겨 있다.

□ 예산

전략 수행 기간은 4년으로 예산주기가 두 번 돌아온다(2012-2013, 2014-2015).

전략 예산은 유럽평의회 일반 예산과 회원국의 임시과건 등을 포함한 자발적 기여로 구성될 것이다. 일반적 예산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션 부서the Programme's Co-ordination Unit의 예산과 아동권리에 관한 구체적 프로젝트와 활동을 수행하는 유럽평의회 분과와 서비스 자원이 포함될 것이다.

24) Following a pilot project with one monitoring body, a road map could be developed to mainstream child participation into as many Council of Europe monitoring bodies as possible.

자료 4.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참여에 관한 유럽평의회 권고문²⁵⁾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각료회의 권고문 CM/Rec(2012)2

(2012년 3월 28일 제1138차 부장관회의^{the 1138th meeting of the Ministers' Deputies}에서 각료회의^{the Committee of Ministers}에 의해 채택)

유럽평의회법규^{the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제15.b조의 규정에 의해 각료회의^{the Committee of Ministers}는,

유럽평의회회의의 목적이 특별히 공동의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임을 숙지하고;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아래의 기존 유럽 및 국제 조약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필요를 숙지하며;

- 인권과기본자유보호헌장^{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TS No. 5)};
- 유럽아동권리행사헌장^{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s (ETS No. 160)};
- 개정유럽사회헌장^{the revised European Social Charter (ETS No. 163)};
-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ETS No. 201)};
- 아동입양에 관한 유럽헌장^{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개정)(CETS No. 202)};
- 유엔아동권리헌장^{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 유엔장애인권리헌장^{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5) Council of Europe(2012). Recommendation on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8. pp. 3-10.

다음은 고려하고:

- 아동·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유럽평의회 목표;
- 제3차 유럽평의회 정부정상회의(the Third Summit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Council of Europe(바르샤바, 2005)와 유엔아동권리헌장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
- 유럽평의회 청소년 정책에 대해 각료회의가 회원국에 보내는 결의안 CM/Res(2008)23;
- 1985년에서 2008년 사이 개최된 여덟 차례의 유럽평의회 청소년 장관회의(Council of Europe Conferences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의 결론적 고찰;
- 유럽평의회 프로그램인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유럽 건설”과 아동참여 증진에 대한 전략적 강조;

각료회의(the Committee of Ministers),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유럽평의회지역당국자협의회(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채택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권고, 특히 다음 권고를 상기하여:

- 주거시설에 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권고 Rec(2005)5;
- 시민의식과 청소년의 공적 생활 참여에 관한 권고 Rec(2006)14;
- 긍정적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권고 Rec(2006)19;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국가전략에 관한 권고 CM/Rec(2009);
- 민주주의 시민의식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유럽평의회 헌장에 관한 권고 CM/Rec(2010)7;
- 아동 친화적 사법 시스템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가이드라인(2010);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아동의 참여 증진”에 관한 의회권고 1864 (2009);
- “청소년의 지역 생활 참여”에 관한 개정 유럽헌장에 대한 유럽평의회지역당국자협의회 권고 128(2003);

유엔아동권리헌장, 특히 제 12조를 상기하며:

1. 회원국은 자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에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자기 견해를 표출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적절한 비중이 주어질 것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스스로 혹은 대리인, 혹은 적절한 기구를 통해 국가의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에서 따라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²⁶⁾

유엔아동권리헌장의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제12조는 아동권리헌장의 다른 모든 조항과

26) See also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General Comment No. 12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제2조(무차별에의 권리), 제3조(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제5조(부모에 의한 가이드와 아동의 역량 상승), 제6조(생활, 생존, 개발에의 권리), 제13조(표현의 자유의 권리), 제15조(집회의 자유의 권리), 제17조(정보에의 권리)에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다음은 확신하여:

-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본이 된다;
-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그들을 위한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와 폭력, 학대, 유기, maltreatment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 아동과 청소년이 가진 역량과 그들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공헌은 유럽사회의 인권, 민주주의,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독특한 자원이다,

회원국 정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1. 아동의 견해를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으로 존중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존중받으며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방local, 지역regional, 국가, 유럽 수준에서, 그리고 시민 사회와 더불어 이 권고의 수행에 대한 지식과 우수 관행을 교환하도록 격려한다;
3. 법률, 정책, 관행에서 이 권고의 부록에 담긴 원칙과 조치들을 고려한다;
4. 부록과 함께 이 권고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가급적 폭넓은 대상에게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소통 수단을 이용해 보급되고 번역되도록 한다;

사무총장이 유럽평의회의의 기준설정, 협력, 평가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본 권고를 관련된 유럽평의회 조정위원회, 자문기구, 협정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전달하여 이들도 이 권고를 관련된 사업에 고려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한다;

사무총장이 본 권고를 유럽평의회의의 회원국이 아닌 유럽문화헌장the European Cultural Convention(ETS No. 18) 회원국들에게도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제 1절 - 정의

본 권고의 목적을 위해:

- “아동과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²⁷⁾

27) 18 years is the usual age of majority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While the UNCRC defines people under 18 as children, in daily discourse the term “young people” is often used to describe people older than

- “참여”란 개인과 그룹이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며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 수단, 공간, 기회, 필요하다면, 지원을 가지고 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 2절 - 원칙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권리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학년기 전, 학년기, 교육을 떠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기 의견에 비중을 가진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성적 성향 혹은 기타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이 자란다는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이 점차 커져 감에 따라 성인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점점 더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특히 복합적인 차별을 포함한 차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이에 취약한 아동을 포함해, 기회가 비교적 적은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 양육과 개발에 주된 책임을 지므로 출생 이후부터 아동에게 참여권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확인시켜 줄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의미 있게, 진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나이와 상황에 맞는 자기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참여가 효과적이고 의미 있고 지속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일성의 행사가 아니라 절차이며 시간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드는 일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행사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위협, 보복, 희생양이 되는 것, 사생활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참여의 한계, 참여로 인한 기대 혹은 실제적 결과, 자기 견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려되는 지 등을 포함하는 참여의 범위에 대해 확실히 알려 주어야 한다.

12 or 13 years. Also, people who are 13 to 17 years old commonly identify themselves as “young people” rather than as “children” and often prefer to be addressed as such. For statistical purposes, the UN defines persons between the ages of 15 and 24 as youth. This definit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legal definition of the child provided in the UNCRC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유엔아동권리헌장 제12조에 대한 총평의 맥락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의견을 개진하는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이고, 정중하며, 아동의 생활에 관계가 있어야 하고,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적이어야 하고(무차별), 훈련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하고, 위협에 민감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법적 및 기타 조치들에 이러한 요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3절 - 조치

참여할 권리 보호

아동 혹은 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은:

- 헌법, 법률, 규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가능한 최고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현존하는 법률, 정책, 관행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이 개진되고 존중되는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 시 아동과 청소년의 평가에도 적절한 비중을 준다;
- 아동-친화적 불평제기 수단과 사법, 행정 절차를 이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 행정 절차를 통해,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보상과 구제를 제공한다;
-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 소수민 출신 아동, 장애 아동, 의료 시설, 감호 시설 및 소년원에 사는 아동을 포함해 권리 침해에 특히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수단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의 의견 개진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실제적 제한을 검토하고 제거한다;
-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하는 조율된 접근법을 활용하고 아동 참여가 의사결정 및 정책 결정 구조에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아직 없다면, 아동권리옴부즈맨/아동권리위원회와 같은 적합한 독립인권기구를 파리원칙the Paris Principles에 입각해 설립한다;²⁸⁾
- 공식적, 비공식적 환경 모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할 적절한 재원을 배당하고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참여 증진 및 참여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지식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가는:

- 대중, 아동, 청소년, 부모와 전문가들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교사, 법률가,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caregiver, 소년원과 교도소 관리, 의료 전문가, 공무원, 이민국 공무원, 종교 지도자, 대중매체 구

2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성인, 아동 및 청소년 기구 리더 등의 아동과 청소년 참여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동과 청소년이 이러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교육자와 전문가로 참여해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권리, 특히 그들의 참여 권리,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서가 아닌 형식적으로나 소셜 네트워킹, 기타 매체를 통해 그들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을 포함한 권리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업의 학교 교과과정에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강의를 제안한다;
- 아동과 청소년의 견해와 경험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참여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식별하며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아동, 청소년과 함께 하고 그들에 의한, 그들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다;
- 아동의 참여권 활용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간의 동료 지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참여 공간 창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참여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회원국은:

- 법률과 부모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 존엄성, 권리, 감정, 견해를 존중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 상호 존중과 협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대간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 가르침과 학습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들을 통해, 그리고 학교 학생회를 학교 공동체 거버넌스에 통합시킴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생활의 모든 양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 혹은 청소년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상호교육방식의 활용과 비공식 교육과 비공식 학습의 인정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이 어울림과 공동체 생활, 타문화 학습, 스포츠, 레저,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공식적 참여 방법을 아동과 청소년이 설계하는 예술과 사업 등에 관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해 배우고 행사할 수 있는 우호적 공간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이 이끄는 비정부기구에 투자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협의회, 의회, 혹은 포럼과 같이 지방, 지역, 국가 수준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가족과 아동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서비스 개발, 전달, 평가 참여를 허락하도록 해야 한다;
-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직접적인 참여의 보조적 도구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하며,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이 참여 원칙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 정치적 대표로서 공적 생활과 민주주의 기구에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조직이 유엔아동권리헌장 제 12조 및 관련 조항들의 이행과 관련된 유럽평의회 제도 및 기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기준들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인 쇄 2013년 11월 26일

발 행 2013년 11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재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